



연구보고서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권 울
정 지원
허윤선
정지선
이주영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권 울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연구보고서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일관성을 중심으로

인 쇄 2016년 12월 26일
발 행 2016년 12월 30일
발행인 한정택
발행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전 화 044) 414-1179
팩 스 044) 414-1144
인쇄처 오름(주) T. 02-2273-7011

©201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가 7,000원

ISBN 978-89-322-1628-7 94320
978-89-322-1072-8(세트)



서언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설정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기 위해 개발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기존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하여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엔 창설 70주년을 맞이하여 합의된 SDGs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개도국 공동의 목표를 제시하여 글로벌 연대에 기반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인 과제를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MDGs가 사회·경제적 성장을 강조하였던 것에 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적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간의 일관성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SDG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추진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신뢰 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SDG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대개도국 통상정책과 ODA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신기후체제 합의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개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개도국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정부는 DAC에 가입하면서 ODA 예산을 GNI 대비 0.25% 늘리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한 바 있으나, 재정제약 요인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단기간 원조규모 확대가 어렵다면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보다 적절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감축방식을 수립하여 우리나라의 감축목표를 이행함은 물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 협력전략을 새롭게 모색해나가야 합니다.

본 보고서는 권 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개발협력팀의 정지원·허윤선 박사, 정지선·이주영 전문연구원이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연구 수행과정에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이창재 박사와 김영귀 박사, 동국대 김종일 교수, 기획재정부의 이금석 사무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자료수집과 편집과정에 많은 도움을 준 이경훈 인턴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가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을 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책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국제개발협력 추세와 대내적 여건을 고려한 개발도상국 지원방안을 통해 한국 ODA 정책의 개발효과성과 정책일관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원장 **현 정 택**



국문요약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개발정상회의에서는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가 채택되었다. 2030 의제의 핵심인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통합적 개발목표로,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통합되었다. 특히 원조정책과 무역, 투자, 기술이전 등 개발을 위한 주요 협력분야 간 상호 연계와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 제고를 통해 새로운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이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개도국과의 협력전략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 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신기후체제하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면서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구체적으로 무역 및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설정된 이행목표를 상세 지표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개발 목표와 관련된 정책일관성을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분석 방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주요 국가가 어떻게 GSP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과 성과를 비교하고, 개도국 시장접근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하였다.

기존의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Gradeva & Martinez-Zarzoso 2015). 본 연구는 이러한 기존문헌을 바탕으로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며, 특히 저소득국의 농업 부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 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 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

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제도도입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 하자고 논의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채택과 같은 해에 도출된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고 있다. 이 연구는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핵심 이슈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이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지속가능개발목표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확충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은 민간 부문과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G20은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에서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후변화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것이다. 수원국으로의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의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하였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이 높은 개도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개발협력에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이슈를 향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첫째, SDG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의 수립이다. SDGs 채택 이후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이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면서 SDG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가 부재한 실정이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일부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SDG 정책 및 목표별, 다양한 자원과 주체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이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를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 목표 간 비일관성 사례를 검토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간 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PCSD 분석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 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SDGs 이행을 위한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 이행위원회는 부처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의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선 후,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하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우리나라가 GSP 제도 도입을 통해 개도국과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주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

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GSP 도입을 유예해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할 GSP 제도의 도입은 경제적 부담을 상대적으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이에 따라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여 달성할 것임을 밝혔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되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 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에 중점을 둔 것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즉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가발전 경로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언 3

국문요약 6

제1장 서론 21

 1. 연구목적 22

 2. 연구방법 24

 3. 연구내용 및 구성 28

제2장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31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32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32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35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41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47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47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52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56

 라. OECD의 PCSD 분석틀 59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65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66

 가. WTO 논의 경과 66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67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75
가. 선행연구	75
나. 모형설정	81
다. 분석자료	85
라. 실증분석결과	88
3. 소결	100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07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108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108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115
2. 주요 이슈 분석	117
가. 기후변화 ODA 현황	117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120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123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126
마. 탄소시장 확대	129
3. 소결	132
제5장 결론	135
1. 요약 및 시사점	136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137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139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40

2. 향후 과제	141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141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146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150
참고문헌	152
부록	161
Executive Summary	172



표 차례

표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33
표 2-2.	무역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36
표 2-3.	주요국의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및 평균관세율	40
표 2-4.	기후변화·환경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42
표 2-5.	전통적 의미의 PCD 유형	48
표 2-6.	DAC 회원국별 정책일관성 핵심축 이행여부	50
표 2-7.	무역분야의 PCD 평가항목	53
표 2-8.	개발공헌지수(CDI) 전체·분야별 국가순위 결과(2015년)	54
표 2-9.	SDGs 목표 중 정책일관성 관련 세부목표 및 내용	56
표 2-10.	PCSD 검토 도구: 분석틀 체크리스트	61
표 2-11.	PCSD 검토 도구: 제도를 체크리스트	62
표 2-12.	PCSD 검토 도구: 모니터링 틀 체크리스트	64
표 3-1.	EU의 GSP, GSP plus, EBA 수혜국	69
표 3-2.	주요 공여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74
표 3-3.	사용변수에 대한 설명 및 출처	87
표 3-4.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88
표 3-5.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2~14년)	90
표 3-6.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92
표 3-7.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일차상품 수출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93
표 3-8.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그룹별)	96

표 3-9.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일차상품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그룹별)	97
표 3-10.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AfT와 GSP가 수원국의 일차상품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소득그룹별)	98
표 3-11. 강건성 분석표: 전체 국가 대상	99
표 3-12. 시나리오 1: 저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103
표 3-13. 시나리오 2: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104
표 3-14. 시나리오 3: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104
표 4-1. 우리나라의 국가가 정한 기여(NDC)	116
표 4-2.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ODA 현황(2014년)	119
표 4-3. 공공재원의 유형별 민간재원 동원 규모 데이터 현황	122
표 5-1.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비중 변화추이(1995~2015년)	145
표 5-2.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규모(1995~2015년)	146
표 5-3.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품목 현황(2015년)	147
표 5-4. 최빈국 관세유형별 수입액 현황(2015년)	148



그림 차례

그림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5P	34
그림 2-2.	주요 지역의 분야별 가중평균관세율(2008년 vs 2014년)	37
그림 2-3.	국제무역 대비 개도국, 최빈국 무역비중 변화(2000~14년)	38
그림 2-4.	지역별·소득그룹별 평균관세율 변화(2008년, 2013년)	39
그림 2-5.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변화 (2005, 2010, 2015년)	40
그림 2-6.	NDC에 나타난 분야별 적응 우선순위 현황	44
그림 2-7.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 추이 (2000~13년)	45
그림 2-8.	지역별 재해관리 관련 법률·제도 도입 국가의 수	46
그림 2-9.	정책일관성 핵심축	49
그림 2-10.	개발공헌지수 분야별 평균점수 분포: 상위국-최하위국 (2015년)	55
그림 2-11.	SDGs 목표, 세부목표별 경제·사회·환경 측면 구분	58
그림 2-12.	OECD의 PCSD 분석틀	59
그림 3-1.	EU의 수입현황(2012~14년 평균)	70
그림 3-2.	수원국 수출 증진을 위한 공여국의 지원 경로	79
그림 3-3.	FDI와 무역의 흐름	106
그림 4-1.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	110
그림 4-2.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117
그림 4-3.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	118
그림 4-4.	기후변화 관련 민간재원: 유형별, 분야별 비중	121
그림 4-5.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된 공공재원 고려 범위	122
그림 4-6.	기후 주류화를 위한 다섯 가지 자발적 원칙 참여 기관	125

그림 4-7. 주요 탄소거래제도의 분야 및 국제거래 여부	132
그림 5-1.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SDGs 목표별 17년 예산(안) 비중	142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아디스아바바 선언의 무역과 SDGs 관련 조항	35
글상자 4-1. 파리협정의 목표	109
글상자 4-2. 기후재원 관련 파리협정 및 당사국총회 결정문 조항	111
글상자 4-3. 산림 관련 파리협정 및 지속가능개발목표 조항	113
글상자 4-4. 적응 관련 파리협정 조항	114
글상자 4-5. 손실과 피해 관련 파리협정, 결정문, 지속가능개발목표 조항	115
글상자 4-6. 기술 개발 및 이전 관련 파리협정 조항	127
글상자 4-7. 탄소시장 관련 파리협정 및 당사국총회 결정문 조항	130



부표 차례

부표 1. 정책일관성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162
부표 2. GSP 주요 수혜국 및 공여국 리스트	163
부표 3. OECD 소득그룹별 국가구분	170
부표 4.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기준	171
부표 5.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도국	171

제1장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1. 연구목적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선정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였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되고, 다양한 개발과제가 상호연계되고 통합되면서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 간의 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사회개발과 경제개발, 환경이슈의 균형과 조화가 강조되고,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 제고를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제기하고, 무역, 투자, 기술이전, ODA 등 주요 협력분야가 ODA와 정책적 일관성을 갖도록 개도국 협력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 가입한 후 신흥원조공여국으로 ODA 정책을 선진화하고 원조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지만, 재정규모의 제약 때문에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데 많은 한계와 제약요인을 갖고 있다. DAC 가입 이후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적 일관성 문제는 중견국가에서 선진국으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정책방향이기에 때문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다. 선진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ODA뿐만 아니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market access) 확대, 기후변화 지원 등 다양한 개도국 지원정책의 통합과 상호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개도국 협력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동안 개도국 지원을 위해 유·무

상 원조를 연계하고,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민관협력을 강화해 왔지만, ODA 정책과 개도국 협력정책의 실질적인 연계성은 매우 취약하였다.

특히 개도국과의 FTA가 확대되어 왔으나, 시장접근의 문제는 다양한 개발 과제가 상호 연계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확대와 기술이전을 포함하는 경제협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도국 시장접근을 위한 특혜무역 조치의 단계적 실행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대개도국 통상정책과 ODA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보다 종합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도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변화된 국제개발환경과 새롭게 채택된 글로벌 개발목표를 고려할 때,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과 관련 정책의 새로운 정립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고려하여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개발 프레임워크하에서 개발효과성 강화를 위한 ODA 및 관련 정책 간의 일관성 제고방안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성, 일반특혜관세(GSP)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무역, 투자, 기후변화 등과 주요 개발이슈와 연계된 ODA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한국의 중장기 개도국 협력 방안을 통합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최근 변화된 국제개발환경과 새롭게 채택된 글로벌 개발목표를 고려할 때,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과 설정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검토하고, 무역과 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한다. 국제적으로 포용적 경제성장을 위한 개도국의 무역과 투자 활성화 지원이 강조되고 지역경제권이 FTA를 통해 중층적으로 형성되는 가운데, 개발의제 관점에서 개도국과의 통상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국내적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전략을 마련하는 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요 문헌분석과 함께 우리나라 정책방향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수렴하고 이를 최종 연구결과 도출에 활용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2030 의제에 관한 향후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은행, UN 등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와 인터뷰를 추진하였다. 특히 제2장에서는 SDGs 이행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요 정책의 주요 쟁점과 이슈를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세부 목표와 지표 및 이행수단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OECD(2005)는 정책일관성을 원조정책의 내적 일관성, 원조-비원조 정책 사이의 국내적 일관성, 원조-비원조 정책 사이의 공여국 간 일관성, 공여국-수원국 사이의 일관성 등 4가지 차원에서 구분하고 있는데, 최근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정책일관성은 주로 원조정책과 무역, 환경, 이주, 농업, 거버넌스 등 비원조 정책 사이의 일관성에 주목을 하고 있다. 최근 OECD(2015)는 특히 Post-2015 어젠다 시행을 위해 정책일관성을 다음과 같은 5가지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활용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바, (i) 국제 목표와 국내 환경의 일관성, (ii) 기후변화, SDGs, G20 등 글로벌 어젠다 간의 일관성, (iii) 경제·사회·

환경 정책 간 일관성, (iv) 공공·민간·국내외 재원수단 간 일관성, (v) 정부·국제기구·NGO·민간 등 다양한 주체 간 일관성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국제개발연구소(CGD)에서 DAC 공여국별 원조·비원조 정책의 개도국 발전에 대한 공헌도를 측정하는 개발공헌지수(CDI: Commitment for Development)를 통해 주요 선진공여국들의 정책일관성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DAC 가입 이후 CDI 종합순위상에서 일본과 함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특히 원조, 무역, 환경 등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고 있어 정책일관성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의 ODA의 주요 문제점은 양적으로 ODA/GNI 비율이 낮고, 저소득국 지원 및 다자원조 비중 미흡, 투명성 부족으로 DAC 공여국 중 2015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무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농산물 등에 대한 높은 관세, 서비스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DAC 회원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CDI는 무역 분야를 관세/비관세장벽, 국내생산보조금의 보호효과(75%), 상품수입 행정장벽(12.5%), 서비스수입장벽(12.5%)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발효과성 측면에서 개도국의 무역 및 투자활성화 방향과 FTA 협정 및 특별무역조치의 시장접근 확대조치, ODA의 연계성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주요 선진국의 개도국 특혜관세제도와 ODA의 운영사례와 정책방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통상정책의 전략적 운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포용적 경제성장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무역투자 역량강화 지원방안을 전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환경의 경우 기후변화(60%), 어업(10%), 생물다양성(30%)을 기준으로 측정하는데, 우리나라는 환경관련 주요 국제협정에 서명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화석연료 생산량 등으로 가산점을 받았지만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및 오존파괴 물질 사용량, 원목수입 등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2015년 27개국 중 2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ODA 정책 차원에서 무역원조(AFT: Aid for Trade), 환경 관련 원조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 분야와 환경 분야의 개발공헌도는 낮

은 상황으로 개발효과성과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3장에서는 ODA와 개도국 통상정책의 연계성 및 시장접근조치의 효과 분석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공여국의 원조와 일반특혜관세(GSP) 정책 간의 연계성은 공여국의 국내 산업구조, 사회적 합의 정도, 수원국의 산업구조 및 경제발전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GSP는 공여국이 정하는 원산지 증명, 예외 상품 및 예외조항에 따르는 바, 공여국은 국내 산업구조와 관세수입, 사회적 합의 정도, 수원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GSP의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원조도 공여국 국내 상황, 수원국의 경제발전 정도, 세계경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바, 원조정책과 통상정책 간의 연계성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 선진국은 원조정책과 무역정책이 개도국의 빈곤감축 목표에 합의를 이루어 진행되는 무역 분야의 정책일관성을 수립하고 있는데, EU,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1970년대에 GSP 제도를 도입하고 개도국 상품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완화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완화하고 세계무역질서 참여를 독려했다. 2015년 기준 EU, 일본, 미국, 호주, 캐나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 13개 국가 및 경제공동체가 200여 개 국가를 대상으로 일반특혜관세(GSP)와 일반특혜관세 플러스(GSP+), 최빈국 특혜관세, AGOA(African Growth and Opportunity Act) 등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조치는 시행하고 있지만, 개도국에 대한 GSP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서 주요 선진원조공여국과는 달리 시장접근조치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기존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GSP가 각각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기대보다 미비한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원조와 GSP의 Joint-effect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원조가 개도국 빈곤감축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여러 연구에서 원조가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원조가 '네덜란드병(Dutch disease)'을 유발하여 개도국 경제발전을 저해한다고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GSP의 개도국 수출에 대한 기여도는 장

기적으로 미미하고 일부 소득이 높은 개도국에서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며, 다자무역협정이 보편화됨에 따라 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효과가 다자무역협정을 통해 상쇄된다는 것이다. 반면 최근 연구에서 유럽의 원조와 특혜관세제도인 EBA(Everthings but Arms)가 정책일관성을 가지고 시행될 경우 개도국의 수출 및 경제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고 평가되고 있다 (Gradeva & Martinez-Zarzoso 2015). 우리나라는 원조 규모가 선진 공여국에 비해 작아 원조 효과성에 대한 비판에 직면한 바, GSP 도입을 통해 원조 정책과 무역정책의 연계성을 높이고 무역과 개발에 대한 정책일관성을 도모한다면 원조 효과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GSP의 도입은 자국 산업 보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인 바, 도입 시기 및 관세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한편 4장에서는 신기후체제 합의에 따른 개도국 협력전략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2015년 말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함과 동시에 국제적 위상에 부합하는 기후재원 제공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과거 교토의정서와 달리 선진국-개도국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각국의 노력이 모니터링 및 평가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재원 확대에 있어 중견국으로서 입장을 주장해왔으며, 특히 GCF 사무국을 유치함에 따라 기후재원 조성에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면서 상당부분의 감축 목표를 해외로부터 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이행하는 세부 전략을 수립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정책일관성의 관점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나, ODA 예산 제약에 따른 절대적 규모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다. 독일은 기후변화 ODA 전략에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및 재원접근 역량

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므로써 개도국의 중장기적인 대응을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Joint Crediting Mechanism 도입을 통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및 개도국에 대한 기술이전 및 재정적 지원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은 감축목표 이행시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한 비용효과적인 감축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바, 타 공여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이행과 더불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개도국 협력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내용 및 구성

본 연구는 제2장에서 SDGs 채택배경과 의의를 정리하고, SDGs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에 대해 검토하면서 특히 무역과 개발, 기후변화 관련 쟁점을 파악한다. 또한 SDGs 체제하에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논의 동향과 특징을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원조정책과 공여국의 시장접근 확대정책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주요 선진국에서 ODA 정책과 GSP제도가 함께 시행될 때 개도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특히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수출 분야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EU와 미국의 GSP 효과 분석에 한정된 기존연구를 발전시켜 대상국을 EU 15개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로 확장하였으며, 수원국의 수출은 총수출과 일차상품 수출, 제조업 수출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파리협정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고 신기후체제와 개발협력 관련 쟁점들을 전망한다. CO₂ 배출 상위 10위 안에 드는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할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으며, 감축목표의 일부는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이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개도국 감축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발협력전략과의 연계를 통해 감축목표 이행과 동시에 중견국으로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장에서는 주요 쟁점분석을 통해 기후변화를 고려한 개발협력 전략 수립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개도국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방향을 도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개도국과의 FTA 추진이 확대되는 가운데 특혜관세조치 등 주요 협력의제를 중심으로 ODA와 통상정책의 일관성 확대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통상정책과 ODA 정책 간의 연계방향을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조치와 GSP 도입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검토한다. 또한 글로벌 개발의제로 급부상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신기후체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개도국 협력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선진국은 자국의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도국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동시에 개도국 사업을 통해 배출권 획득을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고려한 개도국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가운데 향후 표출될 쟁점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의 개발의제에 부합하는 한국의 ODA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도국 협력방안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개도국 지원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국내 정책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도국 시장접근 및 기후변화 관련 개발의제와 이행전략을 제시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2장

K

PM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정책일관성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본 장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및 2030 의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SDGs 중 무역과 시장접근,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부목표와 지표에 대해 상세히 살펴본다. 아울러 SDGs 체제하에서 개발협력과 관련 정책 간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최근 논의를 파악하고, 정책일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개발공헌지수 현황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의 이행을 파악하기 위해 OECD에서 도입한 PCSD 분석 프레임워크의 내용을 검토한다.

1.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주요 내용과 특징

가. SDGs의 세부목표 및 이행지표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 정상회의에서는 결과문서로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하 2030 의제)’를 채택하였다. 2030 의제의 핵심인 SDGs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만료시점인 2015년 이후 2016~2030년 동안 국제사회 차원의 새로운 개발목표로서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젠더, 식수, 에너지, 경제, 산업, 불평등, 도시, 지속가능 소비 및 생산, 기후변화, 해양, 생태계, 평화, 이행수단 및 파트너십 등 17개 목표를 포함한다(표 2-1). 17개 목표별로 10여 개의 세부목표(target)를 설정하여 총 169개 세부목표와 230개 이행지표가 제시되어 있다. 교육, 보건 등 사회개발적 측면을 강조한 MDGs에 비해 SDGs는 경제, 사회, 환경 등 지속가능개발의 3가지 측면을 포괄적으로 강조한다. 특히 SDGs는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발이 다음 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근간으로 한다. 2030 의제에서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5가지 핵심분야로 인간(People), 환경(Planet), 경제(Prosperity), 평화(Peace), 파트너십(Partnership)을 강조하며, SDGs 이행을 위해서는 5P 측면의 상호연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¹⁾

표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DG 1.	모든 국가에서 모든 형태의 빈곤 종식
SDG 2.	기아의 종식, 식량안보 확보, 영양상태 개선 및 지속가능농업 증진
SDG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을 증진
SDG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
SDG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여아의 역량 강화
SDG 6.	모두를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 확립
SDG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SDG 8.	지속적·포괄적·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생산적 완전고용과 양질의 일자리 증진
SDG 9.	건실한 인프라 구축,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 진흥 및 혁신
SDG 10.	국가내·국가간 불평등 완화
SDG 11.	포용적인·안전한·회복력 있는·지속가능한 도시와 거주지 조성
SDG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패턴 확립
SDG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을 대처하는 긴급 조치 시행
SDG 1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바다·해양자원 보존과 지속가능한 사용
SDG 15.	육지생태계 보호와 복구 및 지속가능한 수준에서의 사용 증진 및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대처, 토지 황폐화 중단/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단
SDG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사회 증진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사법제도,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책임성 있는·포용적인 제도 구축
SDG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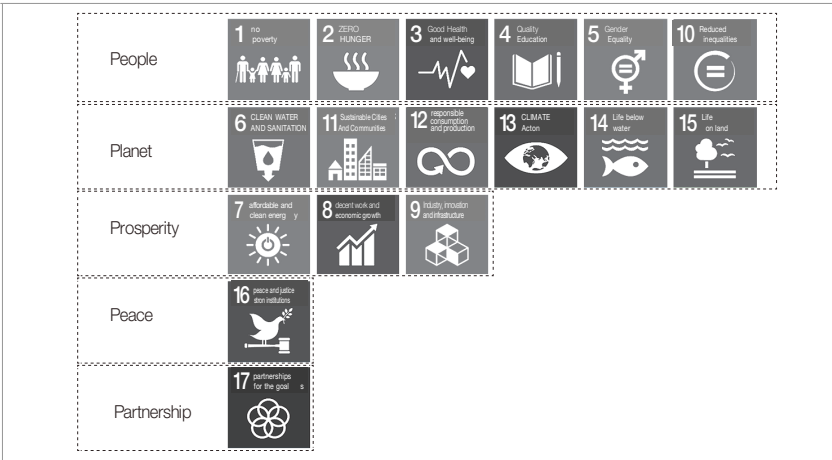
자료: UN(2015a), p. 14: 지속가능발전포털 홈페이지,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검색일: 2016. 8. 15).

1) UN(2015a), p. 3.

[그림 2-1]에서 볼수 있듯이 SDGs 목표 중 빈곤, 기아, 보건, 교육, 젠더, 불평등 등 SDGs 1~5, SDGs 10은 인간과 관계가 있고, 물, 도시, 책임 있는 소비 및 생산, 기후, 해양, 육상생태계 등 SDGs 6, SDGs 11~15는 환경과 관계가 있다. 에너지, 고용 및 경제성장, 산업 및 인프라 등 SDGs 7~9는 경제와 연관 있으며, 평화는 SDGs 16, 파트너십은 SDGs 17에서 주로 언급하고 있다.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에 대한 230개의 이행지표는 3개의 Tier로 구분된다. Tier I은 통계방법론이 마련되어 있고 데이터 접근이 용이한 지표, Tier II는 통계방법론은 있으나 데이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표, Tier III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방법론이 아직 부재한 지표를 의미한다. 현재 전체 지표의 약 40% 정도만이 Tier I에 해당하고, 절반 이상이 Tier II, Tier III에 해당하는 상황이다.²⁾

그림 2-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5P



자료: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검색일: 2016. 8. 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김지현(2016), p. 6;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2016), p. 9.

나. 무역과 개도국 시장접근 관련 목표

2030 의제에서 무역에 대한 내용은 2015년 7월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된 제3차 개발재원회의(Financing for Development)의 결과를 반영한다. 아디스아바바 선언문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글상자 2-1).

글상자 2-1. 아디스아바바 선언의 무역과 SDGs 관련 조항

(조항 79) 적절한 정책, 인프라 및 훈련된 인력을 통해 무역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여성의 역량강화, 식량안보, 불평등 감소, 그리고 SDGs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

(조항 82) 국제사회는 SDGs의 추진방향에 따라 국제무역 규모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항 82) 국제사회는 모든 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을 무역정책에 연계할 것이다.

(조항 88) 국제무역 및 투자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정부차원의 보완적 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포괄적 성장·지속가능개발을 위한 무역의 잠재성 실현에 필요한 국내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적절한 국내정책과 개혁을 도입할 것이다.

자료: UN(2015b), pp. 23-25; UNCTAD(2016a), pp. 1-2.

SDGs는 글로벌 파트너십에 관한 목표 17에서 SDGs 달성을 위한 이행수단으로서 무역을 다루고 있다. MDGs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은 다양한 국제목표를 설정하였지만 재원 및 파트너십 등 이행수단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SDGs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SDG 1에서 SDG 16까지 16개 SDGs 목표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수단으로 개발재원, 기술, 역량개발, 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일관성과 파트너십, 개발관련 데이터 역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DG 17 외에도 기아 및 식량안보, 지속가능 농업에 대한 SDG 2와 국가 내/국가간 불평등 개선에 대한 SDG 10도 무역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

표 2-2. 무역관련 SDGs 세부목표 및 지표

세부목표 분류	세부목표 내용
Goal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0.~ 17.12. 무역	17.10. WTO 체제하 보편적이고, 규범에 근거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시스템 활성화 [지표 17.10.1] 국제 가중평균관세율
	17.11. 2020년까지 최빈국의 국제무역 참여비중 배증 등 개도국 무역확대 [지표 17.11.1] 최빈국/개도국/소도서국 국제무역 대비 비중
	17.12. WTO 결의안에 따라 모든 최빈국의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의 시의적절한 이행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시혜적 원산지 규정 적용의 투명화/간소화 포함) [지표 17.12.1] 개도국 및 최빈국 주요분야별 평균관세
Goal 2. 기아 종식, 식량안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 확대	
2.b	국제농업시장의 무역규제 및 왜곡 개선 및 방지(모든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 등) [지표]농산물에 대한 수출입 관세 변화율
Goal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 개선	
10.a	WTO 합의에 따라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별화된 혜택 원칙 적용 [지표]개도국,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자료: UNCTAD(2016a), p.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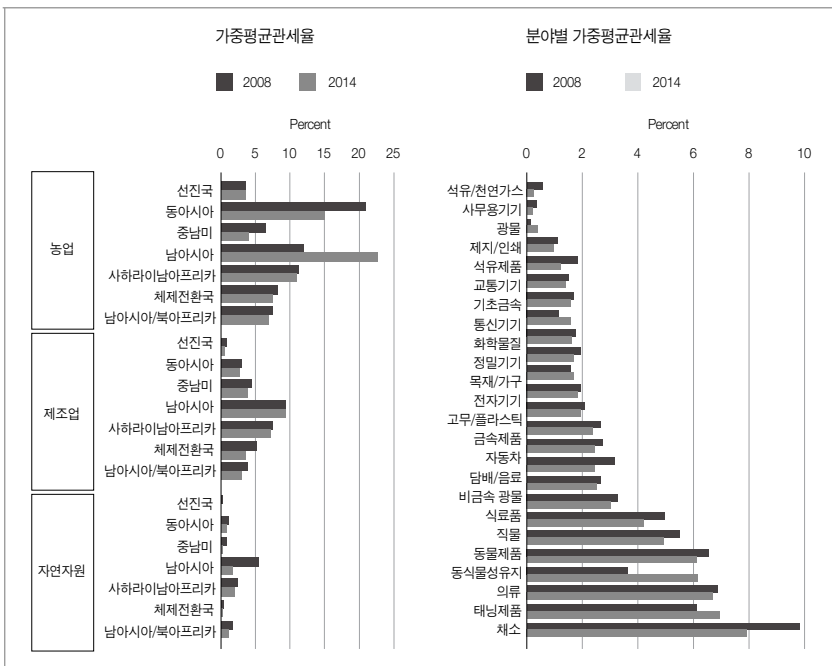
SDG 17에서 무역과 관련한 세부목표에는 17.10, 17.11, 17.12가 있다. 세부목표 17.10은 도하 각료회의의 협상 결과 이행을 포함하여 WTO 체제하 다자무역시스템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UNCTAD(2016a, p. 2)에 따르면 이는 2013년 발리패키지 등 개발관련 WTO 각료회의 합의안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아디스아바바 선언의 79번 조항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다. 따라서 WTO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한 결의를 다시 한번 명시하는 차원으로 국제무역 체제에 지속가능개발을 연계하기 위해 GATT, GATS의 개도국 우대조항 수준 이상의 추가적이고 새로운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다.

세부목표 17.10 이행을 위한 지표로는 17.10.1. 국제 가중평균관세율(worldwide weighted tariff-average)이 있다. [그림 2-2]는 지역별로 농업, 제조업, 천연자원 등 분야별 평균 관세율을 나타낸다. 가중평균관세율과 특혜

관세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농산물의 경우 2014년 기준 동아시아가 약 20%, 남아시아 23%로 아시아 지역의 관세율이 가장 높다. 2014년 공산품 평균 관세율은 7개 중 5개 지역에서 5% 미만 수준이었고, 자연자원은 모든 지역에서 다른 분야 대비 현저히 낮은 관세율을 보인다.

한편 세부목표 17.11은 2020년까지 개도국 무역규모의 대폭 확대, 특히 그동안 국제무역에서 소외되었던 최빈국(LDCs: least developed countries)이 국제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2배 확대를 제시한다. 세부목표 17.11은 아디스아바바 선언 82번 조항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82번 조항은 2011년 제4차 유엔 최빈국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이스탄불행동프로그램(Istanbul Program of Action)에서 명시된 대로 무역역량이 취약한 최빈국의 국제무역 참여규모 확대를 강조한다.

그림 2-2. 주요 지역의 분야별 가중평균관세율(2008년 vs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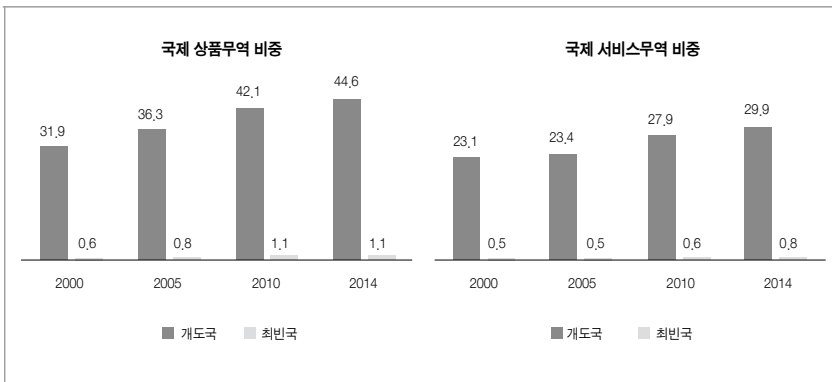
자료: UNCTAD(2015c), 재인용: UNCTAD(2016a), p. 23.

세부목표 17.11 이행 측정을 위한 지표는 17.11.1. 국제무역에서 개도국과 최빈국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현재 국제 상품무역에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14년 기준 약 44.6%를 차지하지만, 최빈국은 1%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국제 서비스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개도국은 29.9%이지만, 최빈국은 0.77%로 상품무역 비중보다 미미하다(그림 2-3).

세부목표 17.12는 WTO 합의안에 따라 모든 최빈국의 무관세·무쿼터 시장 접근을 시의적절하고 지속적으로 이행하도록 강조한다. 특히 최빈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투명하고 간소화된 원산지규정을 특혜 적용하고 시장접근을 활성화시키도록 하였다. 관세율은 최빈국 등 개도국의 시장접근 조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무역 차원에서 여러 선진국은 일반특혜관세(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등의 도구를 활용하여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지원하고 있다.³⁾

그림 2-3. 국제무역 대비 개도국, 최빈국 무역비중 변화(2000~14년)

(단위: %)



자료: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7.11.1>
(검색일: 2016. 8. 17).

3) GSP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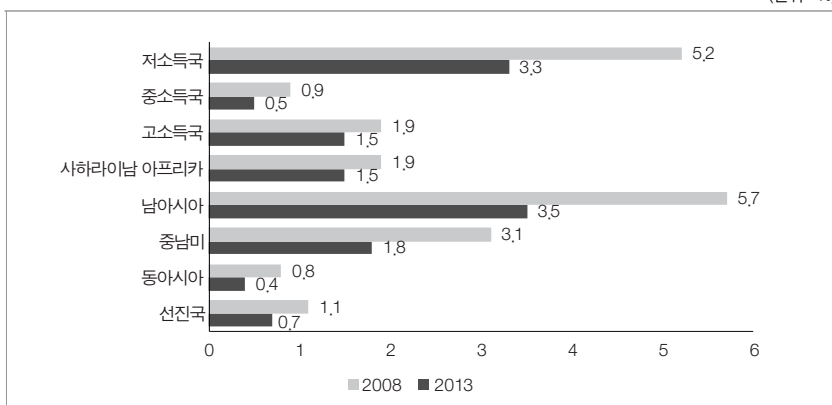
세부목표 17.12의 이행지표는 17.12.1. 개도국과 최빈국, 소도서국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다. [그림 2-4]를 보면 전반적으로 2008년 대비 2013년 평균관세율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한편 SDG 2에서도 세부목표 2.b에서 지속가능한 농업확대를 위해 수출보조금 철폐 등 국제 농산물 무역의 규제와 왜곡을 개선하고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SDG 10에서도 국가내, 국가간 불평등 개선을 위해 개도국, 특히 최빈국에 대해 특별하고 차별화된 혜택을 주도록 하였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개도국 및 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표 2-3]은 주요 선진국 및 개도국에서 최빈국 수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품목 비중과 평균 관세율을 나타낸다. 무관세 품목 비중의 경우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최빈국의 수출품은 무관세인 상황이고, 예외적으로 미국만 약 10% 정도 품목에 무관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중국 등 대표적인 수입시장인 개도국의 경우에도 최빈국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세에 가까운 특혜관세율을 적용한다.

그림 2-4. 지역별·소득그룹별 평균관세율 변화(2008년, 2013년)

(단위: %)



자료: Nicita and Rollo(2013); UNCTAD(2016a, p. 26,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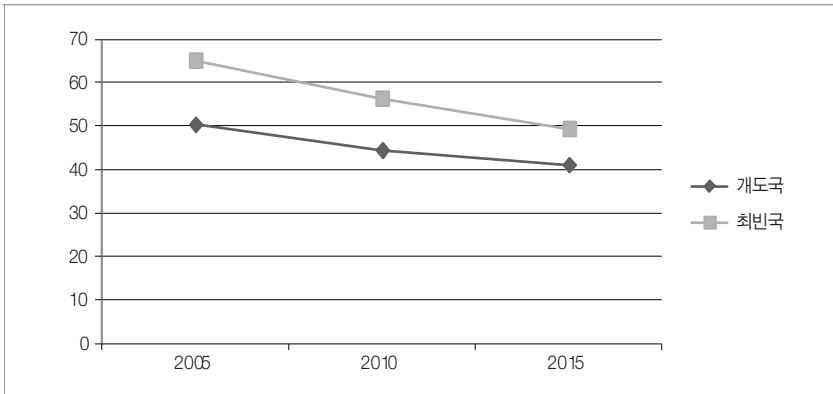
표 2-3. 주요국의 최빈국 수출품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및 평균관세율

국가		전체 품목 중 무관세 품목 비중(%)	평균 적용관세율 (가중치 적용, %)
선진국	호주	100.0	0.0
	스위스	100.0	0.0
	일본	97.9	0.0
	EU	99.0	0.0
	미국	82.6	6.7
개도국	싱가포르	-	0.0
	중국	61.5	0.9
	남아공	-	3.8
	파키스탄	-	3.5
	브라질	-	8.3
	인도	81.9	3.7

자료: WTO(2015), 재인용: UNCTAD(2016a), p. 25.

그림 2-5.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 변화(2005, 2010, 2015년)

(단위: %)



자료: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7.11.1>
(검색일: 2016. 8. 17).

반면 2005년, 2010년, 2015년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품목 비중을 비교하여 보면 점진적인 하향세를 보여, 금융위기 이후 개도국과 최빈국에 대한 혜택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기후변화와 개발 관련 목표

상대적으로 환경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었던 MDGs와 달리 SDGs는 7개 목표 및 61개 세부목표에서 환경과 기후변화 관련 주제를 다룬다.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부터 2012년 Rio+2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 주요 환경협약 협상의 합의사항들을 반영하고 있다. 7번, 13번, 14번, 15번 목표가 각각 에너지, 기후변화, 해양자원, 산림 등 환경관련 사항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6번, 11번, 12번은 식수위생, 도시 및 주거,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내용으로 역시 환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SDG 7은 모두를 위한 저렴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현대적인 에너지 접근성 보장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 접근성은 보건, 교육, 식수개선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필요조건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SDG 13은 기후변화가 빈곤하고 취약한 국가의 개발목표 달성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제시한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SDG 14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 SDG 15는 산림관리, 사막화방지, 토지유실 및 생태계손실 방지 등 육상생태시스템의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활용을 목표로 한다. 해양 및 육상생태계는 개도국 주민의 생계수단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SDG 6은 모두를 위한 식수, 위생시설 접근성 강화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통합수자원관리, 해양생태계 보호 및 복원, 물관리를 위한 국제협력 및 개도국 역량개발 지원 등을 강조한다. SDG 11은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SDG 12는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패턴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표 2-4. 기후변화·환경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Goal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긴급한 조치
13.1. 모든 국가에서 기후관련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 [지표 13.1.1]국가/지역차원 재해위험경감전략 수립 국가수 [지표 13.1.2]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 실종, 피해자수
13.2. 국가정책/전략/계획에 기후변화 대응전략 포함
13.3. 기후변화 적응, 감축, 조기경보를 위한 인적/제도적 역량 강화 및 교육, 인지제도
13.a. UNFCCC 공약내용인 2020년까지 개도국 기후대응을 위한 연 1,000억 달러 조성 이행 (GCF 활성화 등)
Goal 6.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식수/위생 접근성 보장
6.1. 2030년까지 모두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식수에 대해 보편적이고 평등한 접근성 달성
6.3. 수질오염 개선, 위험 화학물질 폐기 근절, 미처리 폐수 비율 반감 및 재활용/재사용률 증가
6.4. 전분야 수자원 활용 효율성 개선, 물부족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취수 및 담수공급 보장, 물 부족 피해자 대폭 감소
6.5. 2030년까지 국경간 협력 등 모든 차원의 통합수자원관리 이행(통합수자원관리 이행도: 0~100)
6.6. 2020년까지 산, 산림, 습지, 하천, 암반 및 호수 등 물관련 생태계 보호 및 복구
6.a. 2030년까지 개도국 물/위생 프로그램을 위한 국제협력 및 역량강화 지원
6.b. 물/위생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참여지원 및 강화
Goal 7.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7.1. 2030년까지 저렴하고, 지속적이며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개선
7.2.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구성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 대폭 확대
7.3. 203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효율성 개선율 2배 증대
7.a. 2030년까지 청정에너지 관련 연구·기술 접근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에너지인프라 및 청정에너지기술 관련 투자 촉진
7.b. 2030년까지 개도국(최빈국, 소도서국, 내륙국) 내 현대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서비스 공급을 위한 인프라 확대, 기술개선
Goal 11. 모두에게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11.5. 2030년까지 재해로 인한 사망·피해자수, GDP에 영향주는 경제적 손실률 감소
11.6. 2030년까지 수질·도시·폐기물관리 등을 고려하여 도시의 1인당 부정적 환경영향 감소
11.b. 2020년까지 자원효율성, 기후경감 및 적응, 재해회복력 관련 통합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도시·거주지 수 증가, 호고프레임워크에 따른 종합재해관리 체계 개발 및 이행
Goal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패턴 보장
12.2. 2030년까지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효율적 활용 달성
12.4. 2020년까지 국제적으로 합의된 체계에 따라 화학물질 및 폐기물의 환경친화적 관리, 대기·물·토양에 대한 배출 대폭 감축

표 2-4. 계속

12.5. 2030년까지 예방, 감축, 재활용, 재사용을 통한 폐기물 발생 대폭 감소
12.8.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과 자연친화적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 및 인지도 제고 강화
*12.c. 시장외국 철폐를 통해 낭비적 소비를 조정하는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을 합리화(조세개혁, 보조금 철폐), 단 개도국별 수요 및 상황을 고려하고 빈곤층 보호 등 개발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Goal 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해양자원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14.1. 2025년까지 해양폐기물 및 영양염류오염 예방 및 대폭 감축
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양생태계 회복력 강화, 복원조치 시행을 통한 해양 및 해양생태계 보호 및 지속가능관리
14.3. 모든 단계에서 과학협력강화 등을 통한 해양산성화 영향 최소화 및 해결
14.4. 2020년까지 효과적인 어획량 규제, 남획, 불법, 비보고·비규제 어업, 파괴적 어업관행 종식, 지속가능 수산자원관리계획 시행
14.5. 2020년까지 국내/국제법에 부합되는, 과학적 정보에 기초한 해안/해양지역 최소 10% 보존
*14.6. 2020년까지 과잉어획능력, 남획을 초래하는 어업보조금 금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초래하는 보조금 근절, 신규도입 자제 (WTO 어업보조금 협상에 개도국/최빈국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특별/차등 대우를 필수분야로 포함해야 함을 인정)
14.7. 2030년까지 수산/양식/관광업 지속가능관리를 통해 해양자원 지속가능이용으로 발생하는 소도서국/최빈국 경제이익 확대
14.a. 소규모 영세어민 위한 해양자원/시장 접근성 확대
14.b. 해양 및 해양자원의 보호 및 지속가능 이용 강화
Goal 15. 육상생태계 보호/복원 위한 지속가능 이용강화, 지속가능 산림관리,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 종다양성 손실 방지
15.1. 2020년까지 국제협정 의무에 따라 육지/내륙 담수생태계 및 서비스, 특히 산림/습지/산/건조지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이용 보장
15.2. 2020년까지 전세계 모든 산림의 지속가능관리 이행 촉진, 산림벌채 중지, 산림황폐화 복원, 신규조림 및 재조림 대폭 확대
15.3. 2030년까지 사막화 방지, 사막화/가뭄/홍수 영향받은 토지 포함 황폐화된 토지 및 토양 복구, 토지황폐화 없는 지구를 위한 노력
15.4.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에 필수적 편익제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포함, 생태계 보호 보장
15.5. 2020년까지 자연서식지 황폐화 감소를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조치 이행,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2020년까지 멸종위기종 보호 및 멸종 예방
15.7. 보호동식물의 밀렵 및 밀매 종식 위한 긴급한 조치 이행
15.8. 2020년까지 육상/수중생태계 외래종 유입 예방과 함께 육지/수중생태계에 대한 영향 감소 위한 조치 이행
15.9. 2020년까지 생태계, 생물다양성 가치를 국가/지역차원 계획/개발, 빈곤감소 전략 및 회계에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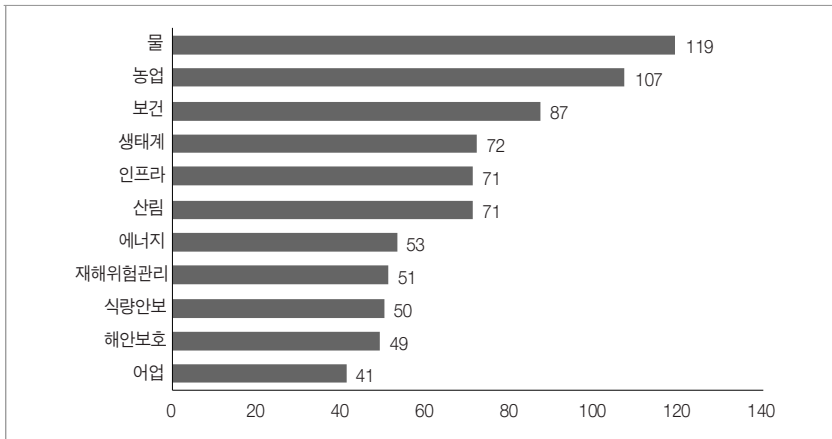
주: 무역 및 시장접근과 연계성 있는 세부목표.

자료: UN(2015a), pp. 20-26.

기후변화에 관한 SDG 13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그간의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논의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말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른 합의사항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파리협정에 따라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제한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자국이 정한 감축 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현재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197개 당사국 중 189개국이 NDC를 제출한 상태이다.⁴⁾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달리 파리협정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의 감축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기후변화 악영향에 적응하는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그림 2-6]은 각국의 NDC에 나타난 적응 우선순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세부목표 13.1은 모든 국가의 기후관련 자연재해 대응역량 강화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따른 자연재해 발생이 특히 대응역량이 취약한 개도국에 인적, 물리적, 경제/사회/환경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미치는 한편

그림 2-6. NDC에 나타난 분야별 적응 우선순위 현황



주: 숫자는 해당 분야를 우선순위에 포함한 국가의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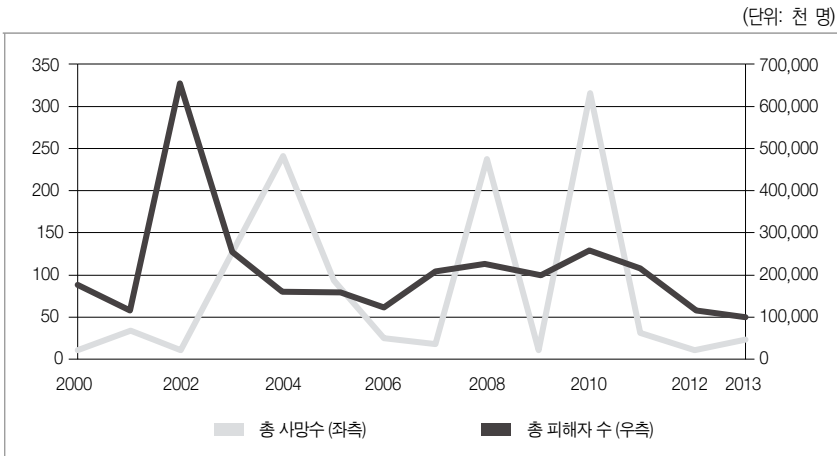
자료: UN(2016), p. 37.

4) EU 국가들은 단일 NDC를 제출함.

지속가능개발을 저해한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며, 재해위험경감에 관한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연계되어 있다. 세부목표 13.1의 이행지표로는 국가 및 지역차원에서 재해위험경감전략을 수립한 국가의 수(13.1.1)와 인구 10만 명당 재해로 인한 사망/실종/피해자 수(13.1.2)이다. 재해로 인한 간접적인 영향 즉 재해로 인해 비즈니스 활동이 힘들어지는 경우나 정신적 트라우마 등도 고려된다.⁵⁾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해수면 및 기온상승, 염수화, 산림 및 토지황폐화, 생태계 파괴, 사막화, 가뭄, 홍수 등은 이미 달성한 개발성과를 위협하고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이러한 위험을 예측하고 방지, 대응하기 위한 재해위험경감전략의 수립은 필수적이다.⁶⁾ 지난 10여 년간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와 강도는 심해지는 추세로 2000~2013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평균 8만 3,000명이 사망하였고, 2억 1,100만

그림 2-7. 전 세계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및 피해자 수 추이(2000~13년)



자료: UN(2016), p. 37.

5) SDG 13. 지표 13.1.1. metadata, <http://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3-01-02.pdf>(검색일: 2016. 8. 1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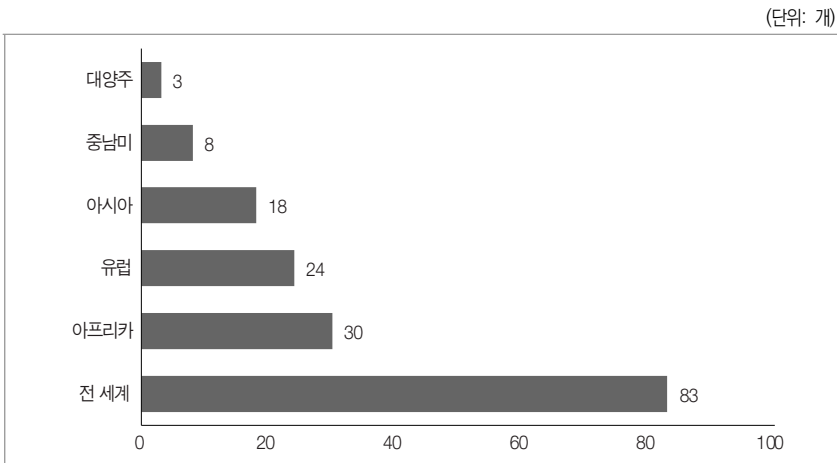
6) SDG 13. 지표 13.1.1. metadata, <http://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3-01-01.pdf>(검색일: 2016. 8. 17) 참고.

명이 피해를 입었다(그림 2-7).⁷⁾

자연재해의 빈발로 많은 국가에서 국가차원의 재해경감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 95개 국가가 재해위험 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조항을 위해 자체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고, 83개 국가는 이미 관련조항이 마련된 상태이다.⁸⁾ 아울러 많은 국가에서 환경영향평가, 생태계 관리 통합계획수립, 환경보호지역 법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재해관리 메커니즘을 도입 중이다. [그림 2-8]은 지역별 재해관리 관련 법률 및 조항을 마련한 국가 수를 나타낸다.

세부목표 13.2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기후변화로부터 회복력(resilience)을 갖추는 차원에서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된 정책 전략, 계획 등의 수립을 강조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지표로 이러한 정책/전략/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용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 국가의 수로 잠정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관련 데이터가

그림 2-8. 지역별 재해관리 관련 법률·제도 도입 국가의 수



자료: [그림 2-7]과 같음.

7) UN(2016), p. 37.

8) UN(2016), p. 37.

부족하고 합의된 방법론이 없는 상태로 Tier III에 해당된다. 세부목표 13.3은 기후적응/경감/영향감소, 조기경보에 대한 교육, 인지도제고 및 인적/제도적 차원의 역량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세부지표로 초중고등/상급 교육과정에서 해당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의 수와 제도 및 개인차원의 역량강화를 논의하고 있는 국가의 수가 논의되고 있지만 역시 Tier III으로 구분된다.

세부목표 13.a는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합의한 대로 개도국 기후대응을 위해 기후재원의 규모를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측정하는 지표는 2020년 이후의 연간 기후재원 규모로 제시되어 있으나, Tier III에 해당된다. 이는 현재 기후재원의 정의가 부재하며, 기후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방법론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세부목표 13.b는 최빈국과 소도서국이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 및 관리하는 역량강화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다. 측정지표는 재정지원/기술/역량강화 지원을 받는 최빈국/소도서국의 수로 잠정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미정이다.⁹⁾

2. 지속가능개발목표와 정책일관성

가. 정책일관성 논의경과

OECD(2005)에 따르면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이 원조 및 개발 정책과 어긋나지 않고, 최소한 저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일관성이 있는 방향으로 상호보완해 나가

9) 김지현(2016), p. 35; UN(2016).

는 것을 의미한다.¹⁰⁾ 정책 비일관성의 대표적인 사례는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를 통해 개도국 농촌인프라 및 역량개발을 지원하는 반면,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이다. 개발을 위한 PCD는 원조정책뿐 아니라 무역, 환경, 농업, 이민, 안보, 이주, 여성 등 다양한 비원조 정책도 개도국 개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 전통적 의미의 PCD는 [표 2-5]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¹¹⁾

OECD는 1990년대 초부터 PCD 관련 논의를 주도해왔으며, 2000년대로 들어서면서는 MDG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강조하였다. 2002년 『공통의 개발어젠다를 위한 OECD 행동(OECD Action for a Shared Development Agenda)』에서 PCD를 강화하기 위한 OECD의 역할을 명시하며 기반을 구축한 이래, 2000년대 중반으로 들어서며 정책일관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논의를 주도해왔다. 2005년 『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바람직한 제도사례』, 2008년 『국제경제 체제에서 개발 활성화: 범정

표 2-5. 전통적 의미의 PCD 유형

유형	내용
내부적 일관성 (Internal coherence)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의 중장기 목표, 지원수단 및 내용 간의 상호일관성
국내 정책 일관성 (Intra-country coherence)	원조정책과 비원조 정책 간의 일관성
원조조화 (Inter-country coherence)	여러 국가간 원조정책, 비원조 정책의 일관성
원조일치 (donor-recipient coherence)	공여국-수원국 개발정책의 상호일관성

자료: Picciotto(2005), p. 312; 손혁상 외(2012), p.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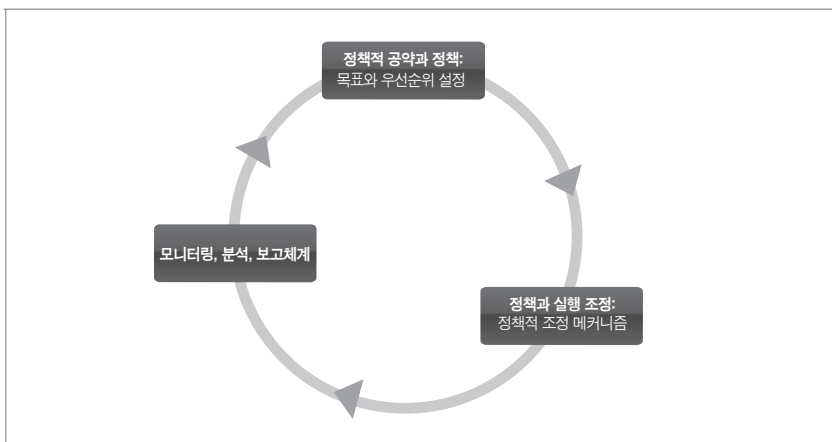
10) OECD(2005), 재인용: 손혁상 외(2012), p. 139.

11) Picciotto(2005), p. 312.

부적 접근』 등은 정책일관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범정부적(whole of government) 차원에서 다양한 부처별 개발 관련 정책의 연계성과 상호보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접근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표 2-5]의 첫 번째 유형인 원조정책 및 프로그램 차원의 일관성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전통적인 업무범위로, DAC은 범정부적 접근, 원조효과성 어젠다 등을 통해 정책일관성 제고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1년에 발간한 『OECD 정책일관성을 위한 제안』¹²⁾에서는 경제성장, 환경 및 자원안보, 경제거버넌스, 사회 등 4대 분야에 따라 무역, 투자, 거시경제정책, 기후변화, 식량안보, 물안보, 에너지안보, 이주, 보건 등의 분야에서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¹³⁾

OECD(2009)는 회원국별로 정치적 공약, 정책조정 메커니즘, 모니터링의 3가지 단계에서 정책일관성 개선노력을 파악하기 위해 ‘정책일관성 주기별 핵심축(building blocks)’을 마련하였다(그림 2-9).

그림 2-9. 정책일관성 핵심축



자료: OECD(2016b), p. 15.

12) OECD(2011).

13) 손혁상 외(2012), p. 141.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여러 국내정책 간 서로 상충 작용이 있는 경우 어떤 정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고, PCD에 대한 고위급 차원의 정치적 공약과 이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여부로 해당국가의 PCD에 대한 의지를 판단한다. 두 번째로는 서로 충돌하는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마지막으로는 정책일관성의 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분석, 보고 메커니즘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3년부터 회원국 간 ODA 정책 및 시스템을 검토하는 동료검토(peer review)에서 대상국가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평가도 포함한다.

표 2-6. DAC 회원국별 정책일관성 핵심축 이행여부

국가	연도	A. 정치공약과 정책	B. 정책조정 메커니즘	C. 모니터링/분석/보고
호주	2013			
오스트리아	2015			
벨기에	215			
캐나다	2012			
체코	2015*			
덴마크	2015*			
EU	2012			
핀란드	2012			
프랑스	2013			
독일	2015			
그리스	2011			
아이슬란드	N/A	N/A	N/A	N/A
아일랜드	2014			
이탈리아	2014			
일본	2014			
한국	2012			
룩셈부르크	2012			
네덜란드	2015*			
뉴질랜드	2015			
	2013			
폴란드	2016			
포르투갈	2016			
슬로바키아	N/A	N/A	N/A	N/A
슬로베니아	N/A	N/A	N/A	N/A
스페인	2016			
스웨덴	2015			
스위스	2009			
영국	2015			
미국	2011			

- PCD 주기의 핵심축 이행
- PCD 주기의 핵심축 이행을 위해 노력 중
- PCD 주기의 핵심축 이행하지 않음

주: 연도는 동료검토 연도이며 * 표시는 EU 정책일관성 보고서상의 설문지 응답 사례.
 자료: OECD(2016b), p. 40.

OECD(2016a)에서는 지난 10년간 동료검토 보고서에 나타난 DAC 회원국 별 정책일관성 주기의 핵심축인 정책적 공약과 정책 수립, 조정메커니즘 수립 여부, 모니터링/분석/보고체계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표 2-6]과 같이 정리하였다. 데이터가 부재한 사례를 제외하면, 캐나다와 한국 외에 모든 회원국이 PCD에 대한 정치적 공약과 정책을 수립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정책조정 메커니즘은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모두 수립하였거나 준비 중이다. 이에 반해 모니터링/분석/보고는 EU와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와 독일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이행이 저조한 상황이다.

OECD 외에 EU도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을 강조한다.¹⁴⁾ EU 차원의 종합 개발전략인 2006년 ‘개발에 대한 유럽 합의안(European Consensus on Development)’, 2011년 ‘변화어젠다(Agenda for Change)’에는 PCD에 대한 정치적 공약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2005년에는 MDGs 이행을 위한 PCD 제고를 위해 무역, 환경, 기후변화, 안보, 농업, 어업, 연구 및 혁신, 정보통신, 교통 및 에너지 등 12가지 정책분야의 일관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어 2009년에는 12개 정책분야를 다시 i) 무역 및 금융, ii) 기후변화, iii) 글로벌 식량안보, iv) 개발을 위한 이주, v) 안보와 개발의 연계성 및 시너지 강화로 재분류를 하고 보다 구체적인 시행차원의 접근을 논의하였다. 2007년부터는 2년마다 회원국별 PCD 메커니즘, 우선순위 등 현황을 검토하는 『EU 정책일관성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¹⁵⁾

14) Picciotto(2005), p. 314에서는 정책일관성은 EU 기본법의 역할을 하는 1992년 마스트리히 조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마스트리히 조약의 Article 190U는 유럽공동체 차원의 개발목표로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경제 편입, 빈곤퇴치, 민주주의, 인권 등을 강조한다.

15) 손혁상 외(2012), p. 141; European Commission(2015), p. 19.

나. 정책일관성과 개발공헌지수

무역정책은 개도국의 경제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에 대한 직간접적인 파급 효과가 특히 크기 때문에 전통적 의미의 정책일관성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분야이다. OECD(2005)에 따르면 무역정책의 비일관성은 관세, 기준,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개도국 특혜대우 등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개도국의 생산품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무역장벽을 유지하거나 제품 가공 정도가 높아지며 관세율도 높아지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 경향, 개도국의 수입품에 대한 까다로운 환경·안전·위생 기준 준수 요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적용을 통한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 개도국에 대한 특혜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등이 비일관성의 예이다.¹⁶⁾ 특히 GSP는 원산지규정과 함께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제고를 위한 무역 분야 PCD 정책 메커니즘의 대표적인 도구이다. 정치적 공약이나 정책 측면에서는 무역분야 PCD를 담보하는 정책과 국내 무역정책 개혁에 대한 의지 및 공약의 여부로 공여국의 PCD 여부를 판단가능하다. 실행메커니즘 측면에서는 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국내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GSP 등 시장접근성 제고 정책의 적용여부와 정도로 파악가능하다.

한편 OECD와 유엔은 공여국별 정책일관성을 측정 및 비교하기 위해 미국 국제개발연구소(CG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가 고안한 개발공헌지수(CDI: Commitment for Development Index)를 활용한다. CDI는 선진국의 분야별 정책이 개도국 국민의 삶의 질, 즉 개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지수로서 원조뿐 아니라, 무역·환경·이주·금융·안보·기술 등 7개 분야의 정책별 개발공헌도를 평가하고 수치화하여, 국별 순위를 공표한다. 대상은 27개 선진국이다. CDI는 개발공헌도가 다른 정책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고,

16) OECD(2005), 재인용: 손혁상 외(2012), p. 150.

신흥공여국이나 아시아 공여국에 불리한 지표를 활용한다는 비판도 존재하지만, 공여국별 정책일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원조규모, 무역정책의 공정성 및 시장개방,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글로벌 안보에 대한 기여, 이민개방정책 등에 대해서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개도국 수입품에 대한 장벽, 비민주정권에 대한 무기매매, 기술공유 장벽,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저해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점수가 삭감된다. 특히 무역정책의 경우 개도국 상품에 대한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자국 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으며 수입 절차가 간소화된 국가일수록 높은 점수를 받는다.¹⁷⁾

표 2-7. 무역분야의 PCD 평가항목

단계	평가내용	예시
정치적 공약 및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분야 PCD를 담보하는 정책 • 국제무역기준 준수에 대한 의지 • 국내무역정책 개혁에 대한 의지 • 구속력 있는 국제협정 승인 및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하 개발 어젠다 (DDA) •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TRIPS) • 기초자원 이니셔티브 (Raw Material Initiative)
조정 메커니즘	무역정책의 개발목표 지지를 보장하는 메커니즘의 유무	
실행 메커니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품에 대한 관세 • 국내 생산품에 대한 보조금 • 무역을 왜곡하는 국내정책 여부 • 개발도상국이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수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 제공 • 시장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특혜관세제도 (GSP) •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모니터링, 분석 및 보고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이 해당국가와 무역으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 • WTO 개발라운드의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영향평가 등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간의 농업무역자유화 증진 • 농업무역기회, 비상호간 무역우위 (non-reciprocal trade preferences) • 농업·어업시장의 관점에서 개도국의 지역경제통합을 증진 • 무역의 개발효과를 위한 핵심정책

자료: OECD(2008), p. 2; 손혁상 외(2012), p. 152.

17) <http://www.cgdev.org/publication/ft/commitment-development-index-2015>(검색일: 2016. 10. 5).

원조정책의 품질을 파악하기 위해 양적 측면에서는 ODA/GNI 비중, 질적 측면에서는 ODA 품질을 측정하는 공적개발원조 질적평가(QuODA: Quality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지수를 활용한다. QuODA는 원조효과성, 수원국 제도구축, 행정부담 경감, 투명성을 나타내는 31개 지표로 구성된다. 전통적으로 ODA/GNI 비중과 원조효과성이 높은 북유럽 국가들의 순위가 높다.

[표 2-8]의 2015년 CDI 결과를 보면 전체 순위로는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한국, 일본 등이 하위권에 속한다. 덴

표 2-8. 개발공헌지수(CDI) 전체·분야별 국가순위 결과(2015년)

순위	국가	원조	금융	기술	환경	무역	안보	이주
1	덴마크	1	3	1	8	2	2	18
2	스웨덴	3	9	17	2	5	18	2
3	노르웨이	5	1	8	20	24	1	1
4	핀란드	8	2	7	5	14	9	20
4	네덜란드	6	19	9	13	1	8	8
6	영국	4	12	22	12	3	3	17
6	프랑스	12	14	5	18	10	5	11
8	뉴질랜드	10	16	20	19	4	4	4
8	포르투갈	14	13	3	4	15	14	19
10	호주	15	10	18	23	7	11	5
10	캐나다	9	4	15	25	17	16	3
10	독일	13	18	11	15	9	21	6
13	오스트리아	17	21	6	14	18	10	7
13	벨기에	19	8	14	10	13	19	12
13	스페인	18	6	16	9	12	22	15
13	아일랜드	2	25	24	17	11	7	21
17	이탈리아	21	5	23	11	20	12	14
18	룩셈부르크	7	23	19	21	8	24	9
18	헝가리	23	17	12	3	16	17	26
18	체코	22	11	13	7	19	23	23
21	미국	20	27	21	26	6	6	16
22	폴란드	24	7	27	6	21	25	24
22	슬로바키아	26	22	26	1	22	13	27
22	스위스	16	26	10	22	25	20	10
25	그리스	25	20	25	16	23	15	22
26	대한민국	27	15	2	24	27	27	13
27	일본	11	24	4	27	26	26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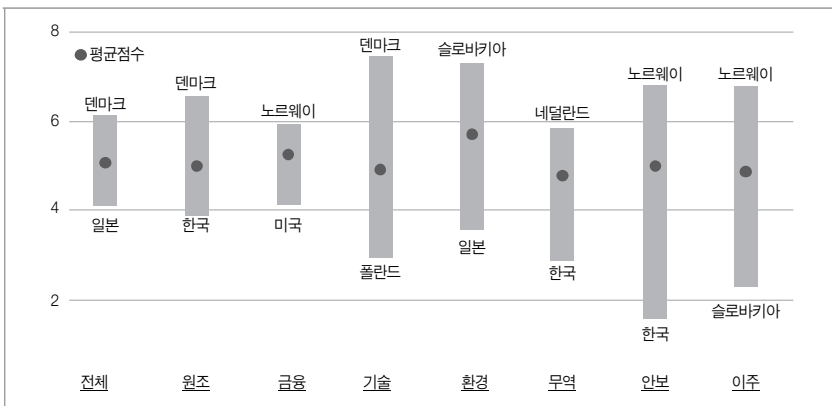
주: □ 높은 순위 1/3 국가, □ 중간순위 1/3 국가, ■ 낮은 순위 1/3 국가

자료: [표 2-7]과 같음.

마크는 원조, 기술에서 1위이고 다른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순위로 종합 1위를 차지하였고, 일본은 기술분야는 4위로 상위권에 속하지만 환경(27위), 무역(26위), 안보(26위), 금융(24위), 이주(25위)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순위를 기록하여 종합 최하위국가로 나타났다. 일본은 앞서 설명한 무역, 환경에 대한 낮은 공헌도 외에도 UN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소규모 분담금, 금융투명성 부족, 국제이주협정에 대한 미가입 등으로 안보, 금융, 이주에서도 순위가 낮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R&D에 대한 투자가 높아 기술혁신에서는 덴마크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지만, 낮은 ODA/GNI 비중(0.13%), 제한적인 저소득국 및 다자 지원, 투명성 부족으로 인해 원조는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무역(27위), 환경(24위)도 하위권을 차지하였다. 국제안보조약에 대한 미가입, 무기수출 데이터 미공개로 안보순위 역시 27위로 낮고 이주, 금융은 각각 13위와 15위를 기록하였다.

[그림 2-10]의 분야별 결과에 따르면 무역분야에서는 상품수입과 서비스수입장벽이 매우 낮은 네덜란드가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높은 쌀 관세율과 참깨, 너트류 등에 대한 관세로 인해 가장 낮은 점수를

그림 2-10. 개발공헌지수 분야별 평균점수 분포: 상위국-최하위국(2015년)



자료: CGD 웹사이트, <http://www.cgdev.org/publication/ft/commitment-development-index-2015>(검색일: 2016. 10. 5).

기록하였다. 일본 역시 우리나라와 함께 가장 높은 쌀 관세율로 26위를 차지하였다. 환경분야에서는 가솔린세가 높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슬로바키아가 가장 높은 점수를, 원목수입이 많고 가솔린세가 낮으며, 온실가스 감축량이 적은 일본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과 원목수입량, 오존파괴 물질 사용량이 높고 생물다양성 협약 관련 보고 및 모니터링이 미흡하여 환경분야에서 24위의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다.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SDGs 채택과 더불어 PCD 논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으로 진화하고 있다. SDGs에서는 이행수단에 대한 17번 목표 중 세부목표 17.3, 17.4, 17.5에서 정책일관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17.4는 PCSD 제고를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한다.

OECD(2016a)는 PCSD를 국내외 정책수립의 전 단계에 지속가능한 개발의 경제·사회·환경·거버넌스 측면을 연계하는 접근이자 정책도구로 정의한다. 2016년 9월 발간된 『새로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프레임워크』

표 2-9. SDGs 목표 중 정책일관성 관련 세부목표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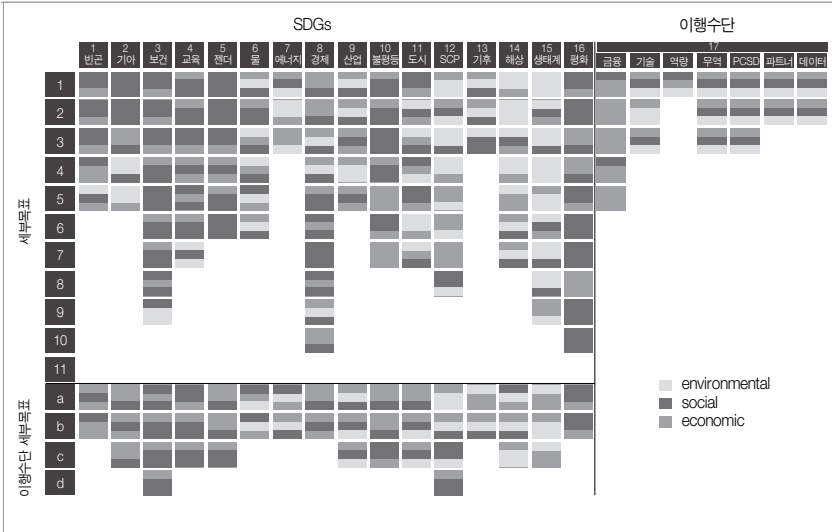
세부목표	지표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정을 통한 국제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3. 거시경제 Dashboard
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17.14. PCSD 제고 메커니즘을 수립한 국가의 수
17.15. 빈곤퇴치/지속가능개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수원국 자율권 존중	17.15. 수원국 주도 성과프레임워크 및 기획들을 활용하는 공여자/공여기관 범위

자료: UN SDG indicator metadata, <http://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7.pdf>(검색일: 2016. 10. 29).

보고서에서 전통적인 PCD 접근으로는 점점 더 복잡다단해지고 있는 경제·사회·환경 차원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1990년 초 원조효과 과성 제고의 필요성이 강해지며 대두된 전통적 PCD는 원조정책과 다른 분야별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주체 역시 공여국에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30여 년간 글로벌 개발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며 중국, 인도 등 신흥공여국이 국제금융, 투자, 무역, 그리고 개발협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졌고, 남남협력이나 삼각협력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아울러 전통적 주체인 정부, 국제기구 뿐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민간기금 등 민간의 역할 역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PCSD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선진공여국뿐 아니라 신흥국, 개도국 그리고 기업, NGO, 민간기금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¹⁸⁾ 아울러 무역, 투자, 농업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구분된 접근은 분야/주제별 상호연관성과 다차원적인 최근 개발협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신 범분야적(cross-sectional)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종합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PCSD는 전통적 PCD와 달리 무역, 환경과 같은 분야별 정책의 직접적인 연관성보다는 SDGs 목표와 세부목표별로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다양한 요소 및 특징의 상호 연관성과 시너지, 상충효과에 대한 파악과 해결을 강조한다. [그림 2-11]은 SDGs의 목표와 세부목표, 그리고 이행수단 세부목표별로 환경, 사회, 경제적 측면을 구분하여 색상을 달리하여 표시하였다. 우선 SDG 17.4 무역목표의 경우 세부목표가 경제, 환경,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환경적 측면은 SDG13(기후), SDG6(물), SDG7(에너지), SDG11(도시), SDG12(지속가능소비생산), SDG14(해양), SDG 15(생태계)와 같이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는 목표 외에도 SDG1(빈곤), SDG2(기아), SDG3(보건), SDG4(교육), SDG8(경제), SDG9(산업) 등 여러 목표에 걸쳐 연계되어 있다.

18) OECD(2016a), pp. 84-85.

그림 2-11. SDGs 목표, 세부목표별 경제·사회·환경 측면 구분



자료: Dohlman(2014), p. 2; adapted from the presentation by Amb. Csaba Kőrösi, PR of Hungary to UN: "From SDGs to Post-2015 Agenda" at the OECD in Paris on October 7th, 2014.

한편 PCSD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U에서는 PCSD와 PCD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기도 한다. 먼저 PCSD는 PCD에 비해 보다 폭넓은 주제와 분야를 다룬다. SDGs의 기본축인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포함하는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간의 상호연관성과 시너지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과거 MDGs 달성을 목표로 하는 PCD보다 대상범위의 보편성(universality)이 뚜렷하다. 아울러 SDGs의 핵심개념인 지속가능성 원칙을 고려할 때, 다양한 정책목표에 대한 지속가능성 개념의 연계를 강조한다. 특히 이번 세대의 정책이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세대 간(inter-generational) 파급효과에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국내정책의 초국경적(trans-boundary) 파급효과를 강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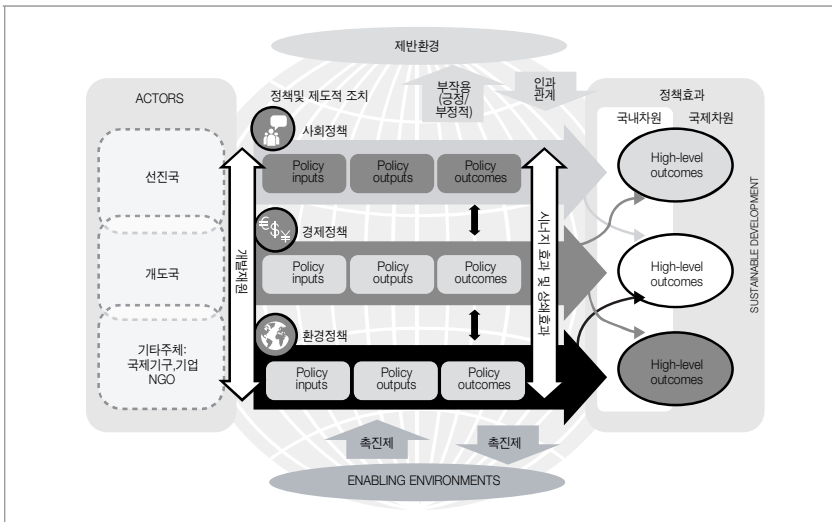
라. OECD의 PCSD 분석틀

OECD는 PCSD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한편, 각 국가별로 PCSD 현황을 진단하기 위한 분석틀을 구축하였다(그림 2-12).

- 경제, 사회, 환경 측면의 정책분야 간 시너지효과 창출
- 국내정책 목표와 국제적으로 협의된 목표 간 상충여부 파악 및 조정
- 국내정책의 부정적 파급효과 개선

PCSD 분석틀은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요소 간의 논리적 연계구조를 보여준다. 즉 정책일관성 전략을 수립하고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소들과 상호 연관관계를 나타낸다. 먼저 가장 좌측에서는 선진국, 개도국, 국제기구, 기업, NGO 등

그림 2-12. OECD의 PCSD 분석틀



자료: OECD(2016a), p. 87; OECD(2015), p. 3.

공공-민간, 국내-국제 차원의 정책일관성을 시행하는 주체이자 개발재원 제공자의 다양성과 역할,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중앙에 위치한 부분에서는 정책 측면에서 경제, 사회, 환경 정책 및 제도 전반에 대해 상호 시너지효과와 상쇄효과 등 연관성 파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정책 측면에서는 국내정책 간의 상호연관성뿐 아니라 국내정책과 국제정책 간의 연관성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국내 차원에서 자국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뿐 아니라 초국경적 파급효과로 인한 타 국가에 대한 영향, 그리고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도 강조한다. 우측에서는 정책의 효과로 인한 국내 및 국제 차원의 파급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상단과 하단에서는 정책의 측면에서 정책적인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외부환경적 요소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한다.

OECD에서는 PCSD 분석틀 핵심 요소인 주제, 정책간 연계성, 촉진/저해요소, 자원, 영향 측면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해 각각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표 2-10]과 같이 제시한다.

OECD는 PCSD를 위한 제도들과 모니터링 틀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한다. 제도들은 범부처 접근 측면에서 범부처 차원,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 다양한 공공분야에서 지속가능개발, SDGs, PCSD에 대한 인지도 및 이해도가 정치적 공약이 있는지 정책적 우선순위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다. 정책조정 측면에선 범부처 협력을 위한 조정메커니즘이 있는지, 국가차원의 SDGs 세부목표가 설정되었는지, SDGs 달성을 위한 정책우선순위가 예산편성에도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표 2-11).

표 2-10. PCSD 검토 도구: 분석틀 체크리스트

주요 요소	고려 사항
1.1.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떤 주체(공여국, 국제기구, 기업, NGO 등)가 참여해야 하는가? 타 국가, 핵심 이해관계자가 SDGs 이행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민간, NGO, 양자/다자공여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의회, 지방정부, 지자체의 역할이 고려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SD 제고를 위한 다양한 주체의 역할 및 참여 협력국의 참여
1.2. 정책 간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사회, 환경 정책 간의 연결 관계(시너지 혹은 상쇄효과)가 고려되었는가? 계획된 정책의 결과물(output)이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에 기여하는가? 특정 SDGs 달성을 위한 조치(예: 식량안보)가 다른 SDGs(예: 물 혹은 건강) 달성에 어떻게 기여 혹은 저해하는가? 정부조직은 기존 분야별 관점(예: 농업, 무역, 투자, 물, 에너지)에서 통합적 의사결정 절차/이슈중심 어젠다 위주로 나아가고 있는가?(예: 식량안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 사회, 환경 정책 간의 상호작용 시너지 및 상쇄효과 통합적 접근
1.3. 촉진요소/저해요소(제반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성과(outcome)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촉진요건이 고려되었는가? 정책 성과(outcome)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요인(부패, 무역장벽, 지식 등)이 파악되었는가? 이러한 요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들이 행해지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촉진요소(Enablers) 저해요소(Disablers)
1.4.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잠재적 자원(공공, 민간, 국내, 국제)이 파악되었는가? 국제/지역/국가적 자원수단 간의 분절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메커니즘이 있는가? 민간자원 확보를 촉진하는 요소와 인센티브가 고려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원 간의 상호보완성 통합적 재정 프레임워크
1.5. 초국가적, 세대간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정 정책이 의도하지 않게 타국가 주민의 삶에 긍정/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어떤 그룹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가? 어떻게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경감시킬 수 있는가? 미래 세대의 삶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잠재적/장기적인 효과가 파악되었는가? 정책 결정에 대한 경제/사회/환경적 비용이 고려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효과

자료: OECD(2016a), p. 55.

표 2-11. PCSD 검토 도구: 제도를 체크리스트

주요 요소	고려 사항
▣ 범정부적 접근	
2.1. 지속가능개발, SDGs, PCSD에 대한 인식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차원에서 지속가능개발/SDGs/PCSD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가? • SDGs 달성을 위해 분명하고 합의에 기반한 원칙 및 운영목표 구축을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가? • SDGs가 정책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SDGs 이행에 있어 PCSD의 역할이 고려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PCSD 대두에 대한 인식
2.2. 정치적 공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행과 국가전략 수립을 위하여 고위급차원의 명확한 정치공약이 있는가? • PCSD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공식적 선언이 있는가? • 해당 선언은 범부처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공유되는가? • SDGs 목표를 분야별 정책에 연계하는 정치적 선언이 공식 채택되었는가? • 정부는 PCSD 우선순위를 파악하고 이행계획을 마련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SD 관련 정치적 선언 • 지속가능개발 주류화
2.3. 우선순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지속가능개발 관련 현재 우선순위는 SDGs 비전과 부합하는가? •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은 국가전략 요소인가? • 유관부처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협력에 중앙정부의 조정이 있는가? • 범부처간, 중앙-지방정부 간 효율적 피드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에 대한 의지 • 중앙정부 역할
2.4.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달성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시, 부처,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의 원활한 참여 촉진메커니즘이 마련되었는가? • PCSD 개선계획 마련 시 타 국가, 국제기구, 기타 이해관계자가 참여, 의견을 주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범사회적 접근
2.5. 전략적 프레임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국가 혹은 섹터 전략을 SDGs에 맞추어 조정 및 국내외 이행 위한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 • PCSD는 이행수단 구성요소로 국가전략에 반영되어 있는가? • 국내외 이행을 위한 역할 및 책임이 구체화 되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

표 2-11. 계속

주요 요소	고려 사항
<p>▣ 정책 조정</p>	
<p>2.6. 협력 메커니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개발의 부처 간 협력 및 정책 조정을 위한 공식 메커니즘이 수립되어 있는가? • 국내외 정책 수립 이전에 공식 메커니즘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지는가? • 공식 메커니즘은 정책 간 갈등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과 같은)정부 조직 내 포함되어 있는가? • 정책 간 우선순위 결정, 정책목표 간 조화 및 연계가 예산편성에 반영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협력 • 중앙정부의 역할
<p>2.7. 국가차원 SDG 세부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차원의 세부목표는 정책 간 연계성 및 지속가능개발의 세 가지 차원을 포함하는가? • 세부목표는 접근가능한 데이터 및 근거에 기반하는가? • 세부목표는 자연자원 보호 및 경제사회적 변화에 기여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목표의 구체성
<p>2.8. 중앙-지방정부 연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는 정책 수립, 이행에 지방정부를 참여시키는가? • 정부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지방정부의 예산 및 역량제고를 지원하는가? • 역량 및 비교우위를 고려하여 정부 간 책임분담이 구분되는가? • 중앙정부-지자체 간 협력제고를 위한 어떤 메커니즘이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직적 연계
<p>2.9. 예산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수립은 SDGs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 및 분야별 목표 연계성, 통합성 제고를 반영하는가? • 정책수립의 범분야적 연계성을 예산구조에 반영하기 위해 어떤 노력이 있는가? SDG는 일반 예산수립과정에 통합되는가? • 분야별 정책과 예산은 지속가능개발 목표 달성에 어떤 방식으로 상호 연관되어 기여하는가? • 정책, 프로그램은 SDGs의 우선순위와 세부목표를 어떻게 반영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우선순위의 조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합하기 위한 메커니즘
<p>2.10. 행정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공무원 간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관리 메커니즘 및 인센티브가 있는가? • 부처/제도/분야 간의 비공식적인 정보공유를 제고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 정부 고위 관료 집단 안에서 어떻게 일관된 협력관계가 촉진될 수 있는가? 	

자료: OECD(2016a), p. 56.

모니터링 프레임워크 측면에서는 PCSD 제고에 대한 이행성과를 모니터링 하고 보고할 수 있는 틀과 지표는 마련되었는지, 관련 데이터는 수집되고 있는지, PCSD 이행여부를 분석할 수 있는 재원이나 역량은 적절한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SDGs 목표와 세부목표 간 서로 시너지효과나 상충작용 등 잠재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PCSD 우선순위 분야가 파악되었는지 여부를 강조한다(표 2-12).

표 2-12. PCSD 검토 도구: 모니터링 틀 체크리스트

3.1.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강화	
주요 요소	고려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니터링과 보고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이 시스템은 공식적이며 신뢰 가능하고 공정한 출처에서 증거를 얻는가? • 지속가능개발 분야별 정책의 영향, PCSD에 대해 국회, 국민에 대한 투명한 보고 메커니즘이 있는가? • 재원, 역량이 PCSD를 분석하기에 적절한가? • 지속가능개발 관련 분야별 정책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있는가? • 이행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이 있거나 환경/우선순위 변경 시 정책이 어떻게 조정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 분석 능력
3.2. 모니터링 메커니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SD 개선을 측정하기 위한 구체적 지표들이 국가차원에서 파악되었는가? • 모니터링 시스템은 전체 정책입안 과정(채택, 이행, 평가 등)을 고려하는가? • 지표들은 PCSD 모든 요소들(기능, 역량, 정책 상호작용 등)을 반영하는가? • 초국경적, 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이터 수집 • 지표
3.3. 정책 상호작용 측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DGs와 목표(target)의 주요한 상호작용이 설계되었는가? 잠재적인 시너지와 상쇄효과가 파악되었는가? PCSD 우선순위가 이러한 상호작용에 기반하여 파악되었는가? • 중앙정부, 지자체 차원의 지표가 정책 및 분야별 상호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가?(예: 농업 확대로 인한 사막화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너지/상쇄 효과 파악

자료: OECD(2016a), p. 56.

제3장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경제적 효과 분석

-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3. 소결

지속가능개발목표 17은 무역을 SDGs 이행 및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행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WTO 다자무역시스템 강화(17.10), 개도국의 무역 확대(17.11), 최빈국의 시장접근 개선(17.12)에 관한 세부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와 관련된 WTO 차원의 논의 경과와 주요국의 개도국 시장접근성 확대 노력을 간략히 정리하고, SDGs 채택 이후 과제를 전망한다. 특히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SDGs 이행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다.

1.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주요국 추진 동향

가. WTO 논의 경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는 원조와 함께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이다. 원조가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데 반해, GSP는 개도국에 시혜적인 특혜관세를 부여하여 공여국 시장에 대한 시장접근성(market access)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수출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출주도형 경제발전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선진국들은 전통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인 원조와 함께 GSP를 함께 운영해왔다.

GSP는 1963년에 최초로 GATT 각료회의에서 개도국 발전을 위한 우호적인 시장접근 제공과 관련하여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64년 제1차 UNCTAD 총회에서 구체화되었으며, 1966년에 호주가 최초로 특혜관세제도를 도입하였다. 1970년 UNCTAD의 무역개발위원회에서 특혜관세 실시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GSP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는데, 1971년에 EC와 일본이, 1976년에는 미국이 개도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 현재는 13개 공여국이 200여 개의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해 GSP를 부여하고 있다.¹⁹⁾

GSP가 개도국의 무역 증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세계 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도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무역우대 조치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2005년 WTO 홍콩 각료회의에서 선진국들은 2008년까지 최빈국에 무관세 및 무쿼터의 무역특권을 부여하는 조항(선언문 47조)에 합의하였다. 이후 2013년 WTO 발리 각료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원산지 조건 완화, 원산지 제품 우대 등을 재확인하였다.

GSP의 기본 방침은 ‘일반화된(generalized)’, ‘비상호적인(non-reciprocal)’, 그리고 ‘비차별적인(non-discriminatory)’ 관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²⁰⁾ 이는 모든 개도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특혜관세를 제공하되, 역외국에 대한 차별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여국들은 이러한 기본방침을 준수하면서도 각 국가의 경제 사정 및 대상국에 맞게 수혜대상국, 품목, 졸업규정, 원산지 규정, 최빈국 특혜조치 등을 각자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나. 주요국의 GSP 추진현황과 성과

EU의 GSP는 1971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04년까지 10년 단위(1971~1981년, 1981~1991년, 1995~2004년)로 운영되고 있고, 매년 수혜국과 수혜품목, 각종 규정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개정을 하고 있다. 2002년에는 기존의 GSP 일반 협정에 추가하여 근로자 권리보호, 환경보호, 마약생산과 밀매 방지, 최빈국에 대한 ‘Everything but arms(EBA)’ 등의 4개의 특별협정이 체결되었다. 2005년에는 다시 이들 5개 협정을 3개로 축소하여 ① 일반 협정 ② 지속가능

19) UNCTAD(2015a), pp. 3-9 참고. GSP 공여국 및 수혜국 리스트는 <부표 1> 참고.

20) 조미진 외(2011), p. 30 참고.

한 개발과 거버넌스를 지향하는 GSP Plus ③ 최빈국에 대한 EBA를 수립하였다.²¹⁾

이후 2008년에 1차 개정, 2012년 EU 집행위원회의 GSP에 대한 개혁조치(Regulation EU 978/2012) 채택, 2014년 2차 개정을 거치며 수혜국과 품목이 대폭 조정되었다. 특히 2014년에 실시된 2차 개정으로 수혜국이 기존 177개국에서 89개의 개도국으로 줄어들었다. EBA의 수혜국은 49개 최빈국으로 한정시켰으며, GSP와 GSP Plus의 수혜국은 소득이 중하위 또는 하위인 44개 국가로 제한시켰다. GSP 자격 국가와 수혜 국가를 구분하여 기존 수혜국 중 33개 국가가 GSP 자격을 상실하였고, 34개 국가는 개정당시에는 자격은 유지되었으나 2014년 이후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²²⁾ 2015년 2월 기준 EU의 GSP, GSP Plus, EBA 수혜국들은 [표 3-1]과 같다.

EU는 GSP Plus와 EBA 등의 특별협정제도를 통해 수혜국에 일반협정보다 더 우호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2014년에 개정된 조항에 따르면 GSP Plus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취약국 정의를²³⁾ 만족하고, 노동권 보호, 환경 보호, 거버넌스 조건 등의 핵심 국제조약이 제시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상기 조건들을 만족시켜 GSP Plus 수혜국으로 선정되면, 일반협정하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감 품목과 비민감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4년 개정으로 기존에 수혜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일부 광물 및 원자재도 GSP Plus제도의 신규 수혜품목으로 추가되었다.²⁴⁾

한편 EBA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조항으로, 무기류(HS 93)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 및 무쿼터를 적용한다. 특히 쇠고기와 유제품과 같이 일반협

21) UNCTAD(2016b), p. 2 참고.

22) UNCTAD(2016b), p. 6 참고.

23) 취약국 조건은 첫째, '다각적인 경제(diversified economy)'가 아닐 것(국가경제가 일부 산업에 의존할 것)과 둘째, 지난 3년 연속 해당국가의 상위 7개 상품군의 수입이 총 GSP 수입액의 75% 이상일 것, 셋째로 해당국가에 EU로 유입되는 GSP 수입이 모든 수혜국가에서 EU로 수입되는 지난 3년간 GSP 수입액의 2% 미만일 것 등이다(UNCTAD 2016b, p. 15).

24) UNCTAD(2016b), p. 16 참고.

표 3-1. EU의 GSP, GSP plus, EBA 수혜국

	국 가 명
EBA* 수혜국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콩고,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 섬, 남수단, 수단, 동티모르, 투발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일반 GSP 수혜국	중국, 콜롬비아, 콩고, 쿡 아일랜드, 온두라스,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카자흐스탄, 몰디브, 마셜섬, 미크로네시아, 나우루,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니우에, 필리핀, 스리랑카, 시리아, 타지키스탄, 대만,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우크라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GSP Plus 수혜국	아르메니아, 볼리비아, 카보베르데,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엘사바도르, 조지아, 과테말라, 몽골, 파키스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주: *EBA(Everything but Arms)는 최빈국에 대해 무기류(HS93)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을 주는 제도임.

자료: UNCTAD(2016b), p. 7 참고.

정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민감한 농산물을 모두 수혜품목으로 포함하고 있다.²⁵⁾ EU의 다른 GSP 협정들은 EU의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협정을 위반했을 경우 일시적인 철회 또는 세이프가드 발동을 통해 중지될 수 있는데, EBA의 수혜국들은 이러한 수혜제한조치를 면제받는다.²⁶⁾

2012~2014년 EU 수입액의 평균값을 살펴보면, 개도국의 수출량이 EU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1조 2천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Countries)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1%이고, 고소득국(High Income Countries)은 약 8%,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Countries)은 약 4%의 비중을 차지한다. 최빈국이 대다수인 저소득국이 EU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EBA에도 불구하고 0.8%로 낮게 나타났다(그림 3-1).

미국의 특혜관세제도는 크게 GSP와 아프리카성장기회법(AGOA: African

25) UNCTAD(2016b), p. 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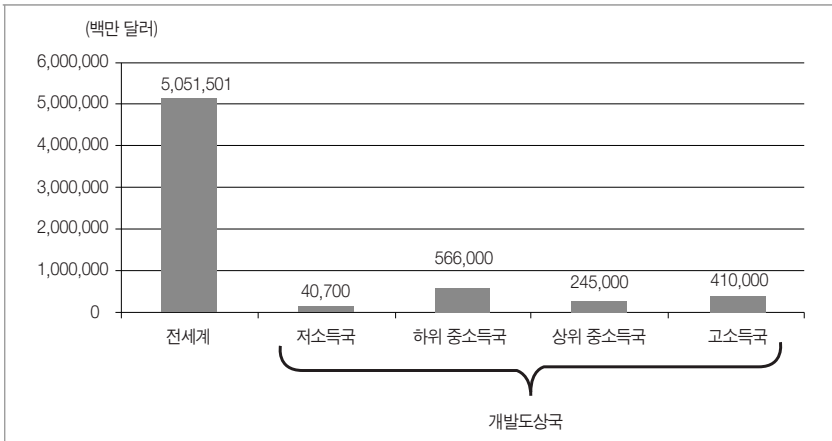
26) UNCTAD(2016b), pp. 18-21 참고.

Growth and Opportunity Act)으로 구분된다. GSP는 1976년 1월 1일 처음 시행된 이후, 주기적으로 연장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2015년 7월 29일에 승인되었고, 이는 지난 주기의 GSP가 끝난 2013년 7월부터 소급 적용되어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 AGOA는 아프리카의 무역 및 투자 증진, 특히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경제성장을 위한 특혜관세제도를 말하는데, 2000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여섯 번의 연장 및 재조정을 거쳤고 현행 제도는 2025년 9월 30일까지 유효하다.

현재 미국의 GSP 관련 정책은 대통령 직속의 무역대표부(USTR)가 관할하고 있고, 수혜국 및 수혜품목, 혜택 범위 등에 대한 실무는 GSP 소위원회가 전담하고 있다. GSP 소위원회는 매년 GSP 연차보고서를 발행하여, 필요시 수혜국 및 수혜품목, 관세율 등에 대한 조정을 건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미국 GSP의 수혜국 수는 현재 131개국으로 EU에 비해 더 많은 수의 국가들이 특혜관세의 혜택을 보고 있지만,²⁷⁾ 품목제한이 거의 없는 EU의 GSP에 비

그림 3-1. EU의 수입현황(2012~14년 평균)



자료: UNCTAD COMTRADE(검색일: 2016. 7. 26).

27) 미국 수입시장에서 GSP 수혜국들로부터의 수입비중은 8%에 불과하다(UNCTAD COMTRADE 바탕으로 저자 계산).

해 미국은 자국의 민감 산업인 섬유와 의류제품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AGOA에서는 섬유를 수혜품목에 포함시켰지만, 여기서도 수입상한을 설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²⁸⁾

미국 GSP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특혜제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제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CNL: Competitive Need Limitation)’이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제품생산 및 무역에 경쟁력을 확보한 수혜국가에 대해서는 해당품목에 대한 특혜관세 수혜자격을 자동으로 박탈시킬 수 있는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GSP 소위원회는 매년 연간 무역 통계를 분석하여 특정 제품 및 국가에 대한 수혜 제한을 결정한다.²⁹⁾

반면에 AGOA는 GSP에 비해 수혜품목의 수가 많고 수혜범위도 더 넓으며, 제한조치가 면제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수혜국에 관대한 관세혜택 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현재 GSP하에서 특혜관세를 받는 약 4,650개 품목에 1,835개 품목을 추가하여 AGOA 수혜품목으로 분류되는데, GSP에 포함되지 않는 의류 및 섬유 제품을 포함한다.³⁰⁾ 특히 미국산 원료를 이용해 사하라 이남에서 제조된 의류제품은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을 받고 있다. 다만 외국산 원료의 가치가 제조된 의류 최대 평가액의 1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외국산 원료의 무게가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만족시켜야 한다.³¹⁾

일본은 1971년 8월 1일에 GSP를 도입하였고 이후 10년마다 갱신하고 있다. 현재의 제도는 2011년에 개정되었고 2021년까지 유효하다. 현재 전 세계 137개국과 14개 지역이 일본 GSP의 혜택을 받고 있다. 수혜품목은 337개의 지정된 농수산물, 3,141개의 지정된 공산품으로 구분된다.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5~100%의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모두 무관세지만, 일부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고

28) 조미진 외(2011), p. 47; UNCTAD(2016c), pp. 40-44 참고.

29) UNCTAD(2016c), pp. 18-20 참고.

30) UNCTAD(2016c), p. 35 참고.

31) UNCTAD(2016c), pp. 35-40 참고.

있다.³²⁾

일본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혜관세를 중지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즉, 특혜관세가 적용된 상품이 일본의 자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 관세혜택을 잠정 중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매년 검토를 통해 일본시장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지난 3년 연속 해당 품목의 수입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고 금액이 15억 엔 이상일 경우)되면 수혜품목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 및 자연 보호에 GSP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수혜가 제한된다.³³⁾

캐나다의 특혜관세(공식명칭은 GPT: General Preference Tariff) 제도는 1974년 7월 1일에 도입되었고, 10년마다 갱신되었다. 현행 제도는 2014년 6월 30일에 승인되어 2024년까지 유효하다. 수혜품목 수는 약 5,700개로 농수산물과 철강, 화학제품 등의 광공업 제품 등이 포함되며, 약 70% 정도의 품목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WTO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보다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설탕, 섬유 및 의류, 신발, 플라스틱, 전자관 등을 제외시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GPT에 의해 캐나다 생산업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캐나다 국제무역재판소(Canadian International Tribunal)에서 조사하고 정부의 판단에 따라 수혜 제한과 쿼터 설정이 가능하다.³⁴⁾

최빈국은 섬유와 의류 제품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제품의 캐나다 시장 진출 시 무관세 및 무쿼터 혜택을 받고 있다. 원산지 규정에서도 최빈국에는 최대 수입 원료 허용치를 가격의 60%(최빈국이 아닌 GPT 수혜자는 40%)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³⁵⁾

최근 캐나다는 2015년 1월부터 브라질, 중국, 인도 등 소득수준이 높은 72

32) UNCTAD(2011), p. 1 참고.

33) UNCTAD(2011), pp. 2-5 참고.

34) UNCTAD(2013), pp. 4-5 참고.

35) UNCTAD(2013), pp. 15-16 참고.

개 국가에 대한 GTP 수혜를 중지하였다.³⁶⁾ 이는 캐나다의 GTP 제도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의 국가가 GTP 제도에서 졸업한 것으로, 캐나다 정부가 더 이상 GTP 혜택이 필요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혜택을 줄임으로써 빈곤국가에 대한 상대적인 혜택을 확보하고, 그동안 피해를 입어온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단행한 것이다.

호주는 1966년에 특혜관세(ASTP: Australian System of Tariff Preferences)를 처음 도입하였다. ASTP의 특징은 특혜관세가 비수혜국의 관세에 비해 5% 낮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비수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5%일 경우에 특혜관세는 무관세로, 비수혜국이 20% 관세를 받을 경우 특혜관세는 15%로 유지되는 것이다. 수혜품목은 개도국으로부터 호주로 수출되는 전 품목을 포함한다.³⁷⁾ 현재 호주의 일반관세가 이미 40% 이상의 품목이 무관세이거나 5%보다 낮은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일반관세 감소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호주의 특혜관세제도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³⁸⁾

36) 졸업국 리스트는 <http://laws-lois.justice.gc.ca/eng/>(검색일: 2016. 7. 26)에서 찾을 수 있다.

37) UNCTAD(2000), pp. 5-6 참고.

38)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6), pp. 4-5 참고.

표 3-2. 주요 공여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공여국	주요내용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국: 89개국 - 수혜품목수: 6,350개 - 특혜율: 민감품목 제외 - 수혜제한조치: 일시적 철회, 세이프가드 - 졸업규정: 국가-품목 졸업과 국가 졸업, 3년 연속 고소득 및 상위소득 국가로 분류 되거나, 특혜시장으로부터 더 나은 관세혜택 받는 경우 -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 최빈국 특혜: 무관세, 무쿼터, 세이프가드 면제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국: 131개국 - 수혜품목수: 4,650개(AGO는 추가로 1,835개) - 특혜율: 무관세 - 수혜제한조치: 공정경쟁을 위한 법률(CNL: Competitive Need Limitation) - 졸업규정: 고소득국가 분류 시 -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 최빈국 특혜: 무관세, 원산지 규정 완화, CNL면제 등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국: 137개국 - 수혜품목수: 농산품 및 수산품 337개, 공산품 3141개 - 특혜율: 농산품 및 수산품은 다양한 관세감축과 무관세, 공산품은 원칙적으로 무관세, 민감제품 예외 - 수혜제한조치: 일본으로의 수출이 50% 이상, 금액이 15억 엔 이상일 때 GSP에서 3년간 제외 - 졸업규정: 매년 검토하여 부분졸업->졸업 - 원산지규정: 직접운송, 누적조항, 공여국 원자재사용분 인정 등 - 최빈국 특혜: 무관세, 무쿼터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국: 167개국 - 수혜품목수: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전품목 - 특혜율: 일반관세보다 5% 낮은 특혜관세 - 수혜제한조치: 없음 - 졸업규정: 고소득국가 - 원산지규정: 최종제조가 수혜국에서 이루어져야 함. 수혜국 원료가 총 제조원가의 50% 이상 - 최빈국 특혜: 무관세 및 무쿼터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혜대상국: 179개국 - 수혜품목수: 5,700개 - 특혜율: 무관세 또는 MFN보다 낮게 - 수혜제한조치: 국제무역재판소에서 조사 - 졸업규정: 특별히 없음 - 최빈국 특혜: 섬유 및 의류 포함 무관세 및 무쿼터

자료: 조미진 외(2011)의 [표 2]를 UNCTAD(2016b), UNCTAD(2016c), UNCTAD(2013)을 참고해서 업데이트.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GSP 도입에 대한 논의만 있을 뿐 본격적으로 GSP가 도입되지는 않았다. 다만 2000년 이후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빈국 특혜관세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특혜품목 및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처음 최빈국 특혜관세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전체 교역품의 1.8% 수준에만 적용되어 실효성이 없는 최빈국 특혜관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5년 홍콩 WTO 각료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무관세 및 무쿼터 조항에 합의한 이후부터 수혜품목 및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12년에는 전체 교역품목의 95%까지 수혜품목이 확대되었다.

이처럼 여러 공여국들이 1960년대부터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GSP를 운영하고 있는 데 반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부에선 GSP로 인해 시장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기본적으로 개도국의 생산능력과 무역역량이 낮아 실질적으로 나타는 효과는 매우 작다고 주장한다. 시장접근성 개선과 함께 개도국의 무역부문에 대한 원조가 함께 이루어져야 그 성과가 클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³⁹⁾ 다음 절에서는 GSP를 중심으로 개도국 시장접근조치와 원조의 수출증진 효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고, 원조와 특혜관세의 동반효과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2. 개도국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원조에 대한 실증분석

가. 선행연구

원조와 특혜관세가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개도국 지원방식으로 여겨지면서, 각각의 지원방식이 수원국의 무역증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39)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

가 다양하게 이루어져왔다.

원조가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Suwa-Eisemann and Verdier(2006)는 원조가 수원국의 무역 흐름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원조는 수원국의 인프라 구축과 무역 비용 감소 등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수출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출 증진이 장기적으로 수원국의 국내 소비, 저축, 투자 증대 등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이 발생한다는 것이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주요 경로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수원국이 원조에 의존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후 물가가 상승하고 환율이 하락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이다. Dalgaard, Hansen, and Tarp(2004)와 Burnside and Dollar(2000)는 수원국의 정책, 소득, 무역개방도, 산업수준 등에 따라 원조의 효과가 음(-) 또는 양(+)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출이 개도국의 경제발전엔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우리나라와 같이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한 사례가 등장하면서,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과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한 연구들도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Rajan and Subramanian(2011)은 원조는 수원국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특히 노동집약형 산업의 수출을 감소시킨다고 밝히고 있다. 이 논문은 원조가 물가를 상승시키고 통화가치를 상승시켜 제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전형적인 네덜란드 병을 야기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으로 보여주었다. Helble *et al.*(2012)과 Nowak-Lehmann(2013)등의 연구들도 원조가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반면 Ferro *et al.*(2010), Pettersson and Johansson(2013) 등은 원조가 수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특히 Pettersson and Johansson(2013)는 긍정적인 수원국과 공여국의 변수를 통제한 고정효과모

형을 이용하여 원조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양자간 수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원조 전체의 효과보다 특정 분야, 특히 무역 분야에 대한 원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Cali and Te Velde(2011)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산업별 수출증대 효과를 분석한 결과, 무역을 위한 원조가 제조업과 광업부문의 수출 증대에는 효과적이지만, 식품 부문의 수출을 증대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한성 외(2015)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를 수원국의 소득수준 및 지역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을 위한 원조는 상위 중소득국가와 하위 중소득국가들의 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반면, 저소득국의 수출에는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김한성 외(2015)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가 저소득국에서 제한적인 이유로 낮은 인프라와 관련 무역 정책의 미비를 제시하였다.

한편 특혜관세와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GSP가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GSP 관련 연구들은 연구방법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가장 널리 쓰인 연구방법은 연산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사용하여 GSP의 무역증진 및 경제성장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Evenett(2009)은 EU의 EBA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EU의 EBA는 최빈국에 약 3억~4억 달러의 후생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GSP 도입 및 유지를 위한 EU 차원의 비용이 약 2억~3억 달러에 달하는 것을 볼 때, EBA의 순후생 창출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을 가정하고 연산일반균형을 사용하여 시나리오별로 GSP의 후생창출 효과를 연구한 국내연구로는 조미진 외(2011)가 있다. 조미진 외(2011)에 따르면, GSP의 경제적 효과는 무역창출(trade creation)과 무역전환(trade diversion)으로 나뉜다. 무역창출 효과는 기존에 비효율적으로 상품을 생산하던 공여국이 특혜관세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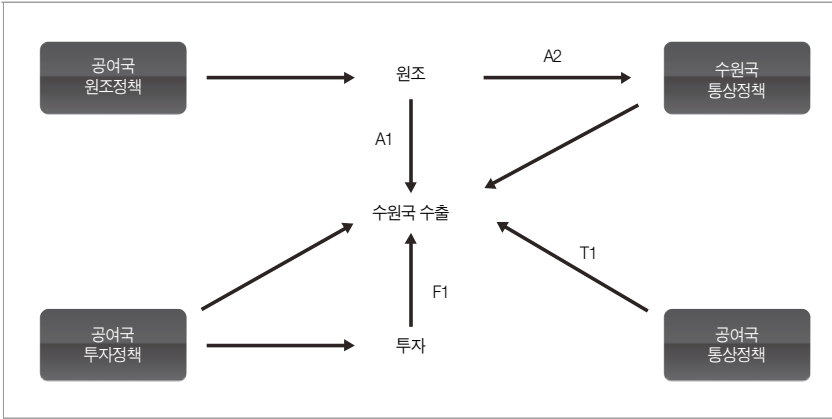
통해 비효율적 국내생산을 줄이고 외국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된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전환 효과는 기존 특혜관세 비수혜국으로부터 수입하던 상품을 특혜관세 적용 이후 수혜국으로부터 기존보다 덜 효율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발생한다.⁴⁰⁾ GSP의 후생창출 효과는 무역창출 효과가 무역전환 효과보다 클 때 발생할 수 있다. 조미진 외(2011)는 실증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가 GSP를 도입할 경우 수혜대상국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GDP와 후생 개선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GSP의 무역증진 효과를 연구하는 또 다른 연구방법은 중력모형을 사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Persson and Wilhemsson(2016)은 1960~2002년 사이에 아프리카, 캐리비안 및 태평양(ACP: 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국가들과 지중해 국가들에 제공하는 EU의 특혜관세제도가 개도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는데, 특혜관세는 이들 국가의 무역을 30% 증진시킨다고 밝혔다. 반면 Verdeja(2006)은 1973~2000년 사이의 개도국 수출에 있어 유럽의 GSP가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데, 이는 특혜관세 이용률(utilization rate)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Suwa-Eisenmann and Verdier(2006)은 수원국의 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공여국 통상정책과 원조정책, 투자정책이 종합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3-2]에서 보여지듯이, 공여국의 개도국 시장 접근성 확대조치(T1)과 함께 원조(A1)와 투자(F1) 확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수원국의 수출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여국의 시장접근 확대조치만으로는 수원국의 무역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0) 김남두(1996); 조미진 외(2011, 재인용).

그림 3-2. 수원국 수출 증진을 위한 공여국의 지원 경로



자료: Suwa-Eisenmann and Verider(2006)의 [그림 1].

상기 논의를 정리해보면 원조와 특혜관세의 수출에 대한 효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원조가 수원국의 무역에 미치는 효과는 인프라, 관련 정책, 산업 경쟁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GSP는 개도국 수입품에 관세상 특혜를 제공하여 개도국의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만, 기존 연구들은 특혜폭, 이용률, 원산지 규정, 수원국의 소득 수준, 환율 및 가격 변화 등의 외부 조건 등에 의해 GSP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밝히고 있다.⁴¹⁾

기존 문헌을 분석해 본 결과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원조와 특혜관세가 각각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존재하지만, 원조와 특혜관세의 효과를 함께 고려한 분석한 논문은 거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Adam and O'Connell(2004)은 원조와 GSP를 비교하여 어떤 정책이 개발효과가 더 큰지에 대해 분석하였지만, 두 가지 정책의 동반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가 EU의 EBA와 원조의 동반효과를 논의한 연구로는 거의 유일하다. 이 논문은 1995~2000년 사

41) Ray(1987); Herz and Wagner(2010).

이의 ACP 국가들의 수출에 EU의 원조와 EBA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EBA가 단독으로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지만, 원조와 EBA의 수혜를 함께 받을 경우 수출 증진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두 번째 한계점은 대부분의 연구가 GSP와 원조가 수원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수원국이 수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1차 산업과 다른 산업의 GSP 이용률이 다르다는 것을 고려할 때, 총수출에 대한 효과분석은 GSP의 효과를 과소 또는 과대평가할 위험이 있다. 세 번째 한계점은 기존 연구의 분석대상이 EU와 미국의 특혜관세제도에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Aiello, Cardamone, and Agostino(2010)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수출과 농업부문 수출에 대한 효과로 나누어 특혜관세제도의 수출증진 효과를 분석하였고, 분석 대상도 유럽과 미국, 호주, 캐나다로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 연구도 원조와 특혜관세의 동반 효과를 고려하지는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Aiello, Cardamone, and Agostino(2010)와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에서 사용된 중력모형을 활용하여, EU 15개국과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주요 공여국에서 특혜관세와 원조가 동시에 시행될 경우에 수원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려 한다.⁴²⁾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을 총수출과 1차 상품 수출, 제조업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또한 특혜관세와 원조의 수출증진 효과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GSP 도입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2) Suwa-Eisenmann and Verider(2006)가 주장하였듯이 원조와 GSP 이외에 투자도 수원국의 수출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원조와 통상정책의 정책일관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고 투자와 수출의 상관관계는 다른 연구에서도 많이 분석되었기 때문에, 본 장의 연구범위는 원조와 GSP의 수출 증진 효과로 한정하였다.

나. 모형설정

본 연구에서는 GSP와 원조가 수원국의 수출 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국가 간 교역량의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중력모형을 사용하였다.

중력모형은 국가 간의 무역량의 크기가 양국 간 경제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간 무역의 설명요인을 분석하는 데 널리 사용되는 모형이다. 중력모형은 Tinbergen(1962)에 의해 처음 고안되었고, 이후 Anderson(1979), Bergstrand(1989), Anderson and van Wincoop(2003) 등이 중력모형이 무역 흐름을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특히 Anderson and van Wincoop(2003)은 이전 연구에서 사용된 중력모형이 무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을 포함한 이질적 국가의 차이(Multilateral resistance)를 고려하지 않아 편의(bias)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제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은 각 국가들의 보이지 않는 특성 문제를 제거하여 편이 문제를 해결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중력연구를 활용하여 무역량을 설명하는 연구에서 널리 쓰였다.

원조와 특혜관세가 각각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도 중력모형이 자주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가 원조와 GSP가 함께 시행되는 경우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활용하였다. 그러나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는 분석 대상을 공여국은 EU 15개국, 수원국은 ACP의 국가들에 한정하고 있고, 수출 분야별 및 소득수준별 분석은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nderson and van Wincoop(2003)과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begin{aligned} \ln Export_{rdt} = & \beta_1 \ln GDP_{rt} + \beta_2 \ln GDP_{dt} + \beta_3 \ln POP_{rt} + \beta_4 \ln POP_{dt} \\ & + \beta_5 \ln Distance_{rd} + \beta_6 Contiguity_{rd} + \beta_7 Colony_{rd} \\ & + \beta_8 Island_r + \beta_8 CPI_{rt} + \beta_{10} \ln ODA_{rd,t-2} + \beta_{11} GSP_{rdt} \\ & + \beta_{13} \ln ODA_{rd,t-2} * GSP_{rdt} + \alpha_r + \gamma_d + \sigma_t + \epsilon_{rdt} \end{aligned}$$

위 추정식에서 r 와 d 는 각각 수원국과 공여국을 가리키고, t 는 시간을 나타낸다. $Export_{rdt}$ 는 수원국 r 이 공여국 d 로 t 시점에 수출한 수출총량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총 수출량과 함께 제조업 수출과 일차상품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GDP_{rt} 는 수원국 r 의 t 시점에서의 GDP를, GDP_{dt} 는 공여국 d 의 t 시점에서의 GDP를 가리키며, POP_{rt} 는 수원국 r 의 t 시점에서 총인구를, POP_{dt} 는 공여국 d 의 t 시점에서의 총인구를 나타낸다. $Distance_{rd}$ 는 공여국과 수원국 수도 사이의 거리를 나타내고, $Contiguity_{rd}$ 는 공여국과 수원국 영토의 접경여부를 더미변수로 나타낸 것이다. $Colony_{rd}$ 는 수원국이 과거 공여국의 식민지였는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고 $ISLAND_r$ 은 수원국이 섬나라인지 여부를 가리키는 더미변수이다. CPI_{rt} 는 수원국의 t 시점에서 물가수준을 나타낸다. 이들 변수들은 원조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기존 연구와 GSP가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에서 유의미하다고 밝혀진 변수들이다.⁴³⁾

본 연구에서 집중적으로 분석할 변수는 $ODA_{rd,t-x}$ 와 GSP_{rdt} 이다. $ODA_{rd,t-x}$ 는 $t-x$ 시점에서 수원국 r 이 공여국 d 로부터 받은 총 원조액을 나타낸다. Cali and te Velde(2011), 김한성 외(2015)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원조가 수원국의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출이 발생한 t 시점이 아닌 $t-x$ 시점에 제공된 원조를 사용하였다. GSP_{rdt} 는 수원국 r 이 공여국 d 로부터 t 시점에 GSP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이다. 원조와 GSP가 함께 수원국의 대공여국 수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43) Nowak-Lehmann *et al.*(2013); 김한성 외(2015);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

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ODA_{rd,t-x} * GSP_{rdt}$ 를 추정식에 포함시켰다.

위의 고정효과모형은 공여국과 수원국, 시간에 대한 각각의 고정효과를 통해 편의를 최소화하였다. 이는 Matyas(1997), Nowak-Lehmann *et al.* (2013) 김한성 외(2015) 등의 기존연구에서 주로 사용된 방법이다. Cheng and Wall(2005)은 관찰 불가능한 변수에 의한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상호(country-pair) 고정효과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 경우 거리, 언어, 식민지 경험 등의 시간불변(time invariant) 변수의 계수는 추정이 불가능하다. 확률효과 모형도 하우스만 검정을 통과하지 못해 본 연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Gradeva and Martinez-Zarzoso (2015)를 포함한 많은 논문들이 하우스만 테일러(Hausman-Taylor) 추정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은 일부 또는 모든 독립변수가 내생성을 가지게 됨에 따라 나타나는 추정의 편의를 통제할 수 있고 시간불변 변수의 계수도 추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도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을 이용하여 원조와 GSP의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수들을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그룹은 내생성을 가지는 변수의 그룹으로, 원조 총량이 여기에 포함된다. 두 번째 그룹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수로, GDP, GSP, GSP와 ODA의 교차항 등이 포함되고, 세 번째 그룹은 시간불변 변수로 거리, 식민지 경험, 언어, 섬나라 여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원조의 수출에 대한 효과 분석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수출자료가 0(zero) 값의 관측치를 포함하거나 결측치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0값은 로그 값으로 변환시킬 경우 결측치로 분류되기 때문에 분석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측치를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표준편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0값을 해결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는 방법인 결측치와 0값에 1을 더하여 로그변환을 하였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사

용할 경우, 전체 무역량의 약 25% 정도가 0의 무역량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표본편중 문제가 여전히 잔재한다. 기존 논문들은 Heckman의 2단계 추정기법을 사용하여 결측치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⁴⁴⁾ 본 연구에서도 이 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Heckman (1979)에서 처음 제안된 Heckman Selection Model의 2단계 추정기법은 1단계에서 먼저 프로빗(Probit) 추정을 통해 양자 간 교역이 발생할 가능성을 분석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계산된 Inverse Mills Ratio를 더하여 OLS로 중력모형을 추정하는데, 이는 1단계에서 프로빗 추정을 통해 양자 간 교역이 발생할 확률을 추정하여 결측치를 가지는 무역량에서 발생하는 표준편의를 제거하는 것이다.

Heckman 2단계 추정법에서 중요한 것은 1단계 ‘무역량 발생단계’에서 사용할 변수를 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조의 무역량에 대한 효과 분석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공통언어 더미변수를 1단계에서 사용하였다.⁴⁵⁾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Heckman 2단계 추정법에서, 1단계 무역량 발생과 관련된 선택함수는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pi_{rdt} = & \gamma_1 \ln GDP_{rt} + \gamma_2 \ln GDP_{dt} + \gamma_3 \ln POP_{rt} + \gamma_4 \ln POP_{dt} \\ & + \gamma_5 \ln Distance_{rd} + \gamma_6 Colony_{rd} + \gamma_7 ISLAND_r + \gamma_8 ComLang_{rd} \\ & + \gamma_9 CPI_{rt} + \gamma_{10} \ln ODA_{rd,t-2} + \gamma_{11} GSP_{rdt} \\ & + \gamma_{12} \ln ODA_{rd,t-2} * GSP_{rdt} + \gamma_t + \mu_{rdt} \end{aligned}$$

44) Di Giovanni(2005); Helpman, Melitz, and Roubinsein(2007);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

45) 기존연구들은 무역량 발생 확률을 추정하는 1단계에서 공통언어, 섬나라 여부 등을 변수로 사용하였다(Gradeva and Martinez-Zarzoso 2015). 본 연구의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의 모형을 기본으로 하는 바, 1단계에서 공통언어 변수를 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강건성 검증을 위해 섬나라 더미도 사용해 보았는데 분석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2단계 증력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ln Export_{r dt} = & \beta_1 \ln GDP_{rt} + \beta_2 \ln GDP_{dt} + \beta_3 \ln POP_{rt} + \beta_4 \ln POP_{dt} \\ & + \beta_5 \ln Distance_{rd} + \beta_6 Colony_{rd} + \beta_7 ISLAND_r \\ & + \beta_8 CPI_{rt} + \beta_9 \ln ODA_{rd,t-2} + \beta_{10} GSP_{r dt} \\ & + \beta_{11} \ln ODA_{rd,t-2} * GSP_{r dt} + \alpha_r + \eta_d + \gamma_t + \epsilon_{r dt} \end{aligned}$$

다. 분석자료

실증분석에서 종속변수는 2002~2014년 동안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연간수출량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총수출에 대한 분석과 함께,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에 따라 수출상품을 제조업 분야 수출과 일차 상품 수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⁴⁶⁾

분석에 사용된 무역데이터는 UNCTAD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하였고, 전체 184개 수원국이 미국, EU 15개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공여국에 수출하는 양자간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수원국 및 공여국 리스트는 [부표-1]에 정리하였다.

원조 자료는 OECD CRS 데이터베이스(Credit Reporting System Database)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모두 합한 원조의 실제 연간 지원액(Disbursement) 데이터를 이용하였다.⁴⁷⁾ 총 원조

46) 일차상품(HS01-24) 수출에는 식품 및 동물, 원자재, 광물 등이 포함되며 제조업 상품(HS25-99) 수출에는 화학 및 관련 제품, 제조제품, 기계 및 운송 장비 등이 포함된다.

47) OECD CRS 데이터 베이스는 원조 약정액(Commitment)과 지원액(Disbursement) 자료를 제공하는데, 약정액의 경우 실제 약정한 모든 원조가 제공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고, 실제 제공되었더라도 당해에 지원되었는지 또는 그 다음해에 지원되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연간 수출액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다. 이에 본문에서는 지원액만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원조가 제공되는 분야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라 원조 분야 중 무역 분야 원조가 수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무역 분야에 제공되는 원조는 다시 세부적으로 ① 무역정책 및 행정(Trade Policy and Administrative management) ② 무역 촉진 ③ 지역무역협정 ④ 다자간 무역협정 ⑤ 무역관련 적응 ⑥ 무역관련 교육 및 훈련 등으로 나뉘는데, 각 세부분야에 제공되는 원조의 규모가 미미한 경우가 많아 본 연구에서는 무역 분야 전체에 제공되는 원조를 주요 독립변수로 사용하였다. 원조 자료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자료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를 기간으로 하였다.

일반특혜관세(GSP) 자료는 UNCTAD에서 발간한 GSP 수혜국과 공여국 리스트를 활용하여 작성하였다.⁴⁸⁾ UNCTAD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 미국, 캐나다, EU, 일본, 아일랜드, 러시아, 스위스, 터키 등 13개 공여국의 전 세계 총 150개 국가를 대상으로 GSP를 운영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UNCTAD에서 발간된 각국의 GSP Handbooks과 각 국가의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졸업국을 발췌하여 데이터를 보완하였다.⁴⁹⁾

GSP와 원조의 수원국들은 대부분 개도국인데, 이 안에서도 소득에 따라 분류가 가능하다. GSP와 원조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원국을 소득수준별로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소득 분류는 세계은행의 분류에 따라 2008년 1인당 GNI 기준을 이용하였다.⁵⁰⁾

본문에서는 원조와 GSP 자료가 잘 구축된 미국, EU 15개국, 호주, 캐나다,

48) <http://unctad.org/en/Pages/DITC/GSP/GSP-List-of-Beneficiary-Countries.aspx> (데이터 접근일: 2016. 5. 15).

49) <http://unctad.org/en/Pages/DITC/GSP/Handbooks-on-the-GSP-schemes.aspx> (Handbooks 데이터 접근일: 2016. 5. 30).

50) 세계은행의 1인당 GNI기준은 매년 바뀌는데, 본 연구의 데이터가 2002~2014년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지점인 2010년 기준을 사용하였다.

일본을 분석대상국으로 정하였다. 다른 GSP 공여국들 중 카자흐스탄, 터키 등은 원조 자료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졸업국의 분류 및 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중력모형에서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인 수원국과 공여국의 GDP와 인구 데이터는 WDI(World Development Indicators)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Cali and Te Velde(2011) 등 기존 연구에서 수원국의 소비자물가지수가 수출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힘에 따라, 수원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도 이용하였다.

이외에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거리, 언어, 접경유무, 식민지경험 여부 등의 자료는 프랑스 경제연구기관인 CEPII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자료에 대한 설명 및 출처는 [표 3-3]에 정리되었으며, 사용된 자료들

표 3-3. 사용변수에 대한 설명 및 출처

구분	자료	설명	출처
종속 변수	총수출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양자간 총수출*	UNCTAD COMTRADE
	일차상품수출	양자간 총수출 중 HS01-HS24	
	제조업수출	양자간 총수출 중 HS25-HS99	
독립 변수	총원조	수원국이 공여국으로부터 받은 양자간 총원조	OECD CRS
	무역분야 원조	총원조 중 무역부문에 대한 원조	
	GDP	수원국과 공여국의 GDP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인구	수원국과 공여국의 총인구	
	CPI	수원국의 물가지수	
	GSP	일반특혜관세(GSP) 수혜여부	UNCTAD 및 각국 관세청 홈페이지
	거리	수원국과 공여국의 수도사이의 거리	CEPII
	언어	공통언어 사용여부	
	접경여부	수원국과 공여국의 접경여부	
식민지 여부	수원국과 공여국의 과거 식민지 경험여부		

주: 데이터의 신뢰성 및 제3국 우회수출 사유로 공여국이 수원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액을 사용함. 기술 및 해석 편의상 수원국의 대공여국 수출로 표기.

자료: 저자 작성.

의 기초통계량은 [표 3-4]에 정리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총수출, 제조업 수출, 1차상품 수출, 원조, GDP, 인구 등은 모두 로그(log)변환을 하였다.

표 3-4. 분석변수의 기초통계량

변수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Ln(총수출)	25,361	16.24	3.912	0	26.71
Ln(1차상품수출)	21,585	14.69	3.598	0	23.70
Ln(제조업수출)	24,377	15.63	4.225	0	26.69
Ln(총ODA)	23,330	0.724	2.784	0	8.517
Ln(무역분야 ODA)	3,421	0.301	2.053	0	6.040
GSP	36,088	0.585	0.493	0	1
접경여부	36,088	0.00180	0.0424	0	1
공통언어 여부	36,088	0.140	0.347	0	1
거리	36,088	7,762	3,761	342.4	18,746
식민지 여부	36,088	0.0505	0.219	0	1
섬나라	36,088	0.274	0.446	0	1
수원국 CPI	30,915	91.72	32.82	7.347	349.0
Ln(수원국 GDP)	36,088	27.41	1.383	23.77	30.52
Ln(공여국 GDP)	36,088	23.24	2.259	16.40	30.02
Ln(수원국 총인구)	36,088	16.77	1.451	13.00	19.59
Ln(공여국 총인구)	36,088	15.37	2.235	9.156	21.04

자료: 저자 작성.

라. 실증분석결과

[표 3-5]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기간 동안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양자 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제(1)열은 원조가 양자 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었고, 제(2)열은 GSP가 양자 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3)열은 원조와 GSP의 교차항을 이용하여 원조와 GSP의 동반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제(4)열부터 (6)

열은 제(1)열에서 (3)열까지의 분석 모델을 하우스만 테일러 추정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표 3-5]의 모든 결과들은 종속변수를 수원국과 공여국 사이의 양자 간 수출에 로그값을 취한 것으로 한다. 주요 설명변수인 원조와 GDP, 인구 등에도 모두 로그값을 취하였기 때문에, 표에 나타난 계수들은 총수출에 대한 탄력성을 보여준다. GSP값은 더미변수이기 때문에 계수값은 해당 변수가 0에서 1로 변화할 때 수출의 변화를 의미한다. [표 3-5]에서 나타나듯이 원조와 일반특혜관세의 각각의 수출증진효과는 고정효과모형에서 양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먼저 제(1)열의 $\ln(\text{ODA}_{t-2})$ 의 계수 값은 0.0504로 이는 t-2기에서 수원국에 대한 공여국의 원조가 10% 증가할 때 t기에서 수원국의 총 수출액은 약 0.5% 증가한다는 것을 말한다. 제(2)열의 GSP에 대한 계수 값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GSP가 있을 경우 약 63%의 수출증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열에서 ODA와 GSP의 교차항에 대한 계수 값은 두 개 정책이 함께 사용될 경우 수출 증진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교차항에 대한 계수 값은 하우스만 테일러 분석모형을 사용할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우스만 테일러 모형에서는 원조와 GSP가 각각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특히 GSP의 수출 증진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ODA와 GSP의 교차항에 대한 계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정책의 실효성을 밝힐 수가 없다.

한편 원조 이외의 설명변수들의 결과를 보면, 거리가 늘어날수록 수출총액이 줄어들고, 공여국과 수원국 사이에 과거 식민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수출액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 논문에서 원조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수원국과 공여국의 GDP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어 중력모형을 사용한 기존 연구들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표 3-5]의 결과들은 그러나 무역량이 결측값이거나 0일 경우 일괄적으로 1을 더해서 로그값을 취했기 때문에 결과가 편중되어 있을 수 있다. 이에

Heckman의 2단계 추정법을 통해 원조와 GSP의 무역량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결과가 [표 3-6]~[표 3-9]에서 제시되었다.

표 3-5.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2002~14년)

Dep: Ln(Total Trade)	Fixed Effect			Hausman-Taylor		
	(1)	(2)	(3)	(4)	(5)	(6)
LN(Donor GDP)	-1.364 (1.469)	-1.312 (1.472)	-1.343 (1.471)	0.664 (1.279)	0.606 (1.266)	0.478 (1.249)
LN(Recipient GDP)	-0.112 (0.302)	-0.110 (0.304)	-0.102 (0.303)	-0.190 (0.286)	0.495* (0.263)	0.547** (0.254)
Ln(Donor Pop.)	23.65** (11.42)	23.22** (11.44)	23.63** (11.45)	1.686 (1.291)	1.290 (1.285)	1.250 (1.286)
Ln(Recipient Pop.)	1.359 (1.037)	1.344 (1.035)	1.360 (1.036)	3.960*** (0.511)	2.186*** (0.407)	2.009*** (0.352)
Distance	-2.189*** (0.151)	-2.263*** (0.152)	-2.251*** (0.152)	-0.540 (0.568)	-0.562 (0.675)	-0.852 (0.590)
Colonial History	1.544*** (0.233)	1.625*** (0.225)	1.530*** (0.231)	0.927 (0.989)	1.394 (1.060)	1.453 (1.080)
Island	6.533 (14,015)	14.64** (6.279)	6.866 (18,035)	6.532*** (0.998)	2.559*** (0.758)	2.367*** (0.733)
Contiguity	0.319 (0.840)	0.378 (0.851)	0.423 (0.829)	4.145 (4.607)	2.628 (4.937)	2.190 (5.044)
CPI	-0.00296 (0.00588)	-0.00302 (0.00597)	-0.00311 (0.00592)	-0.00512 (0.00372)	-0.0111*** (0.00360)	-0.0115*** (0.00356)
Ln(ODA _{t-2})	0.0452** (0.0227)		-0.0133 (0.0309)	0.0424* (0.0217)		0.0348 (0.0345)
GSP		0.494*** (0.163)	0.473*** (0.165)		-2.401*** (0.703)	-2.131*** (0.636)
LnODA _{t-2} *GSP			0.0892** (0.0373)			0.00904 (0.0439)
Observations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R-squared	0.692	0.692	0.692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6]에서 제(2)열과 (4)열, (6)열은 Heckman 2단계 추정법에서 1단계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제(1)열과 (3)열, (5)열은 2단계 분석결과이다. [표 3-5]와의 차이점은 원조와 GSP의 수출증진효과 이외에 1단계 추정법에서 무역발생효과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처음 두 개 열은 원조가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고, 제(3)열과 (4)열은 GSP가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다. 마지막 제(5)열과 (6)열은 원조와 GSP의 교차항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제(1)열에서는 t-2기의 원조가 10% 증가할 때 t기의 수출은 0.4%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원조의 수출 증진 효과는 GSP와의 교차항을 포함하는 제(5)열에서도 긍정적이다. 반면 GSP의 수출 증진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제(3)열과 (5)열에서 보이듯이, GSP의 계수값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데, 이는 관세를 낮추어 수원국의 시장접근성을 확대한다는 GSP의 원래의 목표가 잘 달성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원조와 GSP의 수출 증진 효과는 제(5)열에서 보이듯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지만 양(+)의 값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6)열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조와 특혜관세의 교차항의 계수값은 1단계 무역발생 가능성 추정식에서는 양(+)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왔다. 이는 원조와 GSP가 함께 시행될 경우에는 실제 수출 증대 효과는 거의 없지만, 무역을 발생시킬 가능성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6]에서 원조 이외의 설명변수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수원국과 공여국의 GDP의 계수는 양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수원국과 공여국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수출액이 증가되는 것을 의미하고, 원조의 효과를 중력모형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수원국과 공여국이 접근하고 있는 경우와 식민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무역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리가 멀수록 수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¹⁾

51) 원조와 무역 간의 인과성(Causality)을 해결하는 방법 중 2단계 추정법 이외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System GMM이다. 본 연구에서도 GMM 추정법을 사용하여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검증하였으나,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표 3-6.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Dep:	ODA		GSP		ODA &GSP	
	(1)	(2)	(3)	(4)	(5)	(6)
Ln(Total Trade)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Ln(Donor GDP)	0.937*** (0.0641)	-0.0133 (0.0296)	0.995*** (0.0640)	0.0278 (0.0290)	0.938*** (0.0683)	-0.00998 (0.0296)
Ln(Recipient GDP)	1.019*** (0.0328)	0.314*** (0.00801)	1.005*** (0.0335)	0.284*** (0.00953)	1.007*** (0.0355)	0.292*** (0.00960)
Ln(Donor Pop)	0.0879 (0.0640)	0.188*** (0.0273)	0.0500 (0.0644)	0.165*** (0.0271)	0.0748 (0.0681)	0.187*** (0.0273)
Ln(Recipient Pop)	0.111*** (0.0184)	-0.00418 (0.00862)	0.130*** (0.0217)	0.0337*** (0.00988)	0.105*** (0.0232)	0.0174* (0.0102)
Ln(Distance)	-0.823*** (0.0374)	-0.123*** (0.0180)	-0.838*** (0.0400)	-0.106*** (0.0187)	-0.817*** (0.0417)	-0.104*** (0.0188)
Colony dummy	1.516*** (0.0912)	0.0469 (0.0504)	1.577*** (0.0929)	0.0696 (0.0500)	1.514*** (0.0972)	0.0267 (0.0505)
Island	0.208*** (0.0568)	0.0687** (0.0267)	0.209*** (0.0585)	0.0611** (0.0268)	0.222*** (0.0607)	0.0491* (0.0269)
Contiguity	0.692* (0.410)	0.868* (0.457)	0.713* (0.422)	0.930** (0.457)	0.655 (0.437)	0.915** (0.456)
CPI	-0.0169*** (0.000745)	-0.00348*** (0.000278)	-0.0167*** (0.000766)	-0.00326*** (0.000280)	-0.0167*** (0.000795)	-0.00332*** (0.000282)
Ln(ODA_(t-2))	0.0376*** (0.0107)	0.0283*** (0.00480)			0.0574*** (0.0175)	0.000815 (0.00840)
GSP			0.0369 (0.0562)	-0.116*** (0.0259)	0.0451 (0.0587)	-0.114*** (0.0259)
LnODA(t-2)*GSP					0.0326 (0.0208)	0.0393*** (0.00969)
Common Language		0.120*** (0.0295)		0.135*** (0.0296)		0.129*** (0.0297)
Observations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26,130

주: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다음으로는 원조와 GSP가 미치는 효과를 업종별로 알아보기 위해, 총수출을 1차상품과 제조업 수출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표 3-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조와 GSP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1차상품의 수출과 제조업 상품의 수출 발생효과는 양으로 나타났지만(제 (6)열), 실질적인 수출 증진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 (5)열). 이는 Aiello *et al.*(2010)과 Davies and Nilsson(2013)이 밝혔듯이, GSP의 이용률이 업종별로 다르기 때문인데, 특히 농산물의 경우 GSP의 이용률이 낮기 때문에, 수출에

표 3-7.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공여국에 대한 일차상품 수출과 제조업수출에 미치는 영향

	ODA		GSP		ODA & GSP	
	(1)	(2)	(4)	(5)	(5)	(6)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i>Dep:</i>						
<i>Ln(Agr. Trade)</i>						
Ln(ODA_(t-2))	0.110*** (0.0114)	0.0250*** (0.00464)			0.223*** (0.0172)	-0.00736 (0.00788)
GSP			-0.106* (0.0578)	-0.0363 (0.0247)	-0.0455 (0.0585)	-0.0359 (0.0247)
LnODA(t-2)*GSP					-0.173*** (0.0202)	0.0468*** (0.00920)
<i>Dep:</i>						
<i>Ln(Manu. Trade)</i>						
Ln(ODA_(t-2))	0.0135 (0.0110)	0.0378*** (0.00477)			0.00591 (0.0165)	0.00812 (0.00833)
GSP			-0.0753 (0.0546)	-0.0740*** (0.0257)	-0.0845 (0.0551)	-0.0733*** (0.0257)
LnODA(t-2)*GSP					0.0100 (0.0196)	0.0423*** (0.00963)

주: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과 [표 3-9]는 수원국들을 소득에 따라 저소득국(Low income), 하위 중소득국(Lower middle income), 상위 중소득국(Upper middle income), 고소득국(High income)으로 분류하여 원조와 GSP의 수출 증진 효과를 추정 한 결과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공여국들은 GSP제도를 수원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 원조효과도 수원국의 경제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원조와 GSP가 수출증진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를 세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3-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원조와 GSP의 수출 증진 효과는 Heckman 2단계 추정결과 소득그룹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먼저 원조의 경우에는 하위 중 소득국의 수출 증진에만 긍정적이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준다. 하위 중소득국의 원조가 t-2기에 10% 늘어날 경우, t기의 수출은 0.8% 증진되었다. 그러나 다른 소득그룹에게는 원조의 수출 증진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SP의 수출 증진 효과도 소득그룹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하위 중소득국가의 수출에는 긍정적인 반면, 저소득국가의 수출에는 부정적이었다. 공여국들이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시장접근성 향상을 위해 특혜관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의 무역증진 효과가 그리 크지 않거나 저소득국가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러나 제(1)열에서 볼 수 있듯이, GSP와 원조의 교차항의 계수는 저소득국에서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조를 통한 무역 비용 감소와 GSP를 통한 시장접근성 개선이 동시에 운영될 경우에 수원국의 수출이 증대한다는 기존 연구들과 일치한다. 기초적인 수출 인프라와 정책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저소득국가에서는 GSP만 제공하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사회 인프라와 제도를 발전시켜 수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원조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GSP와 원조의 교차항의 계수는 실질적인 무역증진 효과는 없지만, 상위 중소

득국의 무역 발생에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제 5열).

[표 3-9]는 원조와 GSP의 1차상품 수출과 제조업 수출에 대한 효과를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한 결과이다. 총 수출에 대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게, GSP와 원조가 함께 제공될 경우 저소득국의 1차상품 수출과 제조업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SP와 원조는 상위 중소득국의 1차상품 및 제조업 수출 발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6열).

[표 3-10]은 무역을 위한 원조와 GSP의 무역 증진 효과를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및 산업별로 살펴본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무역을 위한 원조와 GSP가 함께 주어졌을 때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을 위한 원조와 GSP의 교차항의 계수는 상위 중소득국의 1차상품 수출에 대해서만 양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는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일단 저소득국과 하위 중소득국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의 규모가 크지 않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무역을 위한 원조가 대부분 무역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생산역량 구축에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무역 정책 및 규제관련 부문이 전체 무역을 위한 원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⁵²⁾ 저소득국 및 하위 중소득국가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규제 등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비 없이 인프라 등 ‘하드웨어’만 지원될 경우, 설비의 이용률이 낮아 실질적인 무역 촉진 효과를 내기 힘들다.

52) 김한성 외(2015), pp. 31~37 참고.

표 3-8.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그룹별)

Dep:	Low Income		Low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High Income	
	(1)	(2)	(3)	(4)	(5)	(6)	(7)	(8)
Ln(Total Trade)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Ln(Donor GDP)	0.594*** (0.127)	-0.155*** (0.0506)	0.805*** (0.0821)	0.00370 (0.0477)	1.127*** (0.0946)	0.143** (0.0619)	0.964*** (0.198)	-0.0831 (0.0701)
Ln(Recipient GDP)	1.602*** (0.0576)	0.127*** (0.0244)	1.072*** (0.0506)	0.611*** (0.0266)	1.351*** (0.0725)	-0.190*** (0.0453)	0.776*** (0.170)	0.285*** (0.0467)
Ln(Donor Population)	0.477*** (0.132)	0.292*** (0.0463)	0.408*** (0.0801)	0.231*** (0.0438)	0.0676 (0.0897)	0.0933* (0.0564)	0.109 (0.197)	0.212*** (0.0647)
Ln(Recipient Population)	-0.150** (0.0751)	0.179*** (0.0250)	0.182*** (0.0439)	-0.225*** (0.0261)	-0.0489 (0.0859)	0.508*** (0.0465)	0.776*** (0.159)	-0.183*** (0.0493)
Ln (Distance)	-0.739*** (0.0937)	0.000263 (0.0401)	-1.093*** (0.0478)	-0.283*** (0.0303)	-1.007*** (0.0477)	0.00507 (0.0348)	-0.691*** (0.107)	0.0369 (0.0425)
Colony dummy	1.722*** (0.155)	-0.0534 (0.0796)	1.376*** (0.118)	-0.0648 (0.0855)	1.845*** (0.133)	0.184* (0.108)	1.327*** (0.307)	-0.0634 (0.131)
Island	0.412** (0.207)	-0.458*** (0.0511)	0.0579 (0.0780)	0.556*** (0.0485)	-0.0194 (0.121)	-0.467*** (0.0638)	0.179 (0.179)	-0.0390 (0.0673)
Contiguity			1.702*** (0.436)	4.906 (0)	0.244 (0.395)	0.576 (0.495)	-0.878 (1.304)	5.093 (0)
	-0.0386*** (0.00154)	-0.00122** (0.000581)	-0.0160*** (0.000729)	-0.00328*** (0.000358)	-0.0146*** (0.00192)	-0.0101*** (0.00105)	-0.0596*** (0.00829)	0.0219*** (0.00198)
Ln (ODA_(t-2))	-0.00487 (0.0570)	-0.0582** (0.0247)	0.0821*** (0.0190)	0.0259* (0.0148)	0.0242 (0.0191)	-0.0285** (0.0126)	0.109 (0.0689)	-0.0958*** (0.0252)
GSP	-1.266*** (0.163)	-0.251*** (0.0625)	0.152** (0.0669)	-0.449*** (0.0391)	-0.0114 (0.0724)	-0.0408 (0.0546)	0.0997 (0.207)	-0.114 (0.0821)
LnODA(t-2) *GSP	0.221*** (0.0617)	0.115*** (0.0252)	0.0109 (0.0217)	-0.00428 (0.0164)	-0.00564 (0.0263)	0.0642*** (0.0214)	-0.0517 (0.128)	0.0212 (0.0470)
Common Language		0.175*** (0.0471)		-0.0326 (0.0491)		0.265*** (0.0643)		0.618*** (0.101)
Observations	8,433	8,433	11,665	11,665	7,289	7,289	4,831	4,831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자료: 분석결과를 기초로 저자 작성.

표 3-9.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원조와 GSP가 수원국의 일차상품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그룹별)

	Low Income		Low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Higg Income	
	(1)	(2)	(3)	(4)	(5)	(6)	(7)	(8)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Export	Select
<i>Dep:</i>								
<i>Ln(Agr. Trade)</i>								
Ln(ODA _(t-2))	0.182*** (0.0704)	-0.0503** (0.0244)	0.264*** (0.0235)	0.0352*** (0.0128)	0.0733*** (0.0233)	-0.0179 (0.0121)	0.346*** (0.0930)	-0.153*** (0.0220)
GSP	-2.916*** (0.225)	-0.435*** (0.0625)	0.0635 (0.0803)	-0.263*** (0.0355)	0.437*** (0.0901)	0.0239 (0.0506)	-0.0811 (0.271)	0.0751 (0.0750)
LnODA _(t-2) * GSP	0.154** (0.0768)	0.124*** (0.0249)	-0.134*** (0.0267)	0.00475 (0.0146)	-0.0711** (0.0316)	0.0466** (0.0200)	-0.515*** (0.159)	0.0266 (0.0443)
<i>Dep:</i>								
<i>Ln(Man. Trade)</i>								
Ln(ODA _(t-2))	-0.259*** (0.0602)	-0.0608** (0.0249)	0.0222 (0.0204)	0.0256* (0.0143)	0.0165 (0.0210)	-0.0189 (0.0124)	0.181** (0.0755)	-0.0979*** (0.0249)
GSP	-0.213 (0.173)	-0.289*** (0.0632)	-0.0896 (0.0709)	-0.387*** (0.0382)	-0.384*** (0.0821)	0.0927* (0.0526)	0.0595 (0.224)	-0.0962 (0.0818)
LnODA _(t-2) * GSP	0.407*** (0.0636)	0.125*** (0.0253)	0.0361 (0.0233)	0.00120 (0.0160)	0.0104 (0.0287)	0.0551*** (0.0208)	-0.0579 (0.138)	0.0205 (0.0467)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위 실증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추가로 시스템 GMM(System GMM)과 Pseudo-Poisson ML을 이용하여 위 추정식을 다시 분석하였다.

시스템 GMM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상호간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수 없어 발생하는 내생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Arellano and Bover(1995)와 Blundell and Bond(2000)가 제안한 추정방법이다. 시스템 GMM은 수준방정식인 중력방정식과 이를 1차 차분한 차분방정식을 결합

하여 시스템 모형을 추정하는 모형이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신뢰할 수 있는 추정량을 가질 수 있다. 오차항의 독립성은 AR(1)이 0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지는지 확인하고, AR(2)는 0이라는 귀무가설은 채택될 때 검정할 수 있다. [표 3-11]의 제 (1)열과 (2)열,

표 3-10. Heckman 2단계 추정법 결과: AfT와 GSP가 수원국의 일차상품과 제조업 수출에 미치는 효과(소득그룹별)

VARIABLES	Low Income		Low Middle Income		Upper Middle Income		Higg Income	
	(1) Export	(2) Select	(3) Export	(4) Select	(5) Export	(6) Select	(7) Export	(8) Select
<i>Dep: Ln(Total Trade)</i>								
Ln(Aft _{t-2})	0.323* (0.167)	0.0394 (0.0931)	-0.0607 (0.0560)	-0.0514 (0.0659)	-0.0575 (0.0543)	-0.272*** (0.0944)	0.0485 (0.182)	-0.104 (0.0965)
GSP	-1.177*** (0.159)	-0.234*** (0.0636)	0.169** (0.0665)	-0.448*** (0.0392)	0.0230 (0.0746)	-0.0608 (0.0552)	0.143 (0.211)	-0.134 (0.0838)
LnAft(t-2)*GSP	-0.374** (0.171)	-0.0692 (0.0945)	0.0331 (0.0613)	-0.00674 (0.0683)	0.101 (0.0629)	0.240** (0.0990)	0.0183 (0.241)	0.100 (0.117)
<i>Dep: Ln(Agr. Trade)</i>								
Ln(Aft _{t-2})	0.101 (0.205)	0.0185 (0.0983)	-0.172*** (0.0667)	-0.135** (0.0647)	0.169*** (0.0642)	0.245*** (0.0786)	0.164 (0.231)	-0.183* (0.0945)
GSP	-2.778*** (0.211)	-0.408*** (0.0638)	0.00457 (0.0798)	-0.250*** (0.0358)	0.439*** (0.0936)	0.0396 (0.0514)	-0.0708 (0.283)	0.0549 (0.0767)
LnAft(t-2)*GSP	0.260 (0.209)	-0.0455 (0.0995)	0.111 (0.0729)	0.103 (0.0668)	0.165** (0.0757)	0.287*** (0.0825)	-0.378 (0.309)	0.228** (0.112)
<i>Dep: Ln(Manu Trade)</i>								
Ln(Aft _{t-2})	0.509*** (0.170)	0.0500 (0.0941)	-0.0198 (0.0593)	-0.0761 (0.0671)	-0.0532 (0.0587)	-0.337*** (0.0973)	0.0259 (0.189)	-0.110 (0.0960)
GSP	0.0201 (0.167)	-0.272*** (0.0646)	-0.0613 (0.0702)	-0.383*** (0.0384)	-0.347*** (0.0848)	0.0867 (0.0533)	0.116 (0.220)	-0.117 (0.0834)
LnAft(t-2)*GSP	-0.519*** (0.173)	-0.0874 (0.0955)	-0.00335 (0.0650)	0.0269 (0.0694)	0.0813 (0.0684)	0.324*** (0.101)	0.0332 (0.251)	0.103 (0.117)
Observations	8,443	8,443	11,673	11,673	7,300	7,300	4,831	4,831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표 3-11. 강건성 분석표: 전체 국가 대상⁵³⁾

VARIABLES	System GMM			Pseudo Poisson ML		
	(1)	(2)	(3)	(4)	(5)	(6)
	Trade	Agr. Trade	Manu. Trade	Trade	Agr. Trade	Manu. Trade
Lagged trade value	0.315*** (0.0503)	0.271*** (0.0373)	0.300*** (0.0495)			
Ln(Donor GDP)	22.17 (216.8)	-16.73 (73.89)	76.53 (138.6)	0.881*** (0.0784)	0.510*** (0.0768)	0.919*** (0.0802)
Ln(Recipient GDP)	-6.996 (18.37)	1.574 (6.594)	-8.263 (15.86)	1.067*** (0.0236)	1.011*** (0.0232)	1.075*** (0.0245)
Ln(Donor Population)	-27.74 (215.0)	-20.50 (78.40)	-67.17 (124.2)	-0.311*** (0.0739)	-0.0353 (0.0770)	-0.340*** (0.0754)
Ln(Recipient Population)	5.574 (11.47)	4.939 (8.027)	5.682 (11.94)	-0.429*** (0.0250)	-0.420*** (0.0263)	-0.432*** (0.0259)
CPI_o	-0.0564 (0.189)	-0.199 (0.174)	-0.0268 (0.274)	-0.00513*** (0.00130)	-0.00915*** (0.00128)	-0.00468*** (0.00132)
Ln(Distance)	18.49 (73.30)	79.97 (71.54)	9.496 (57.99)			
Colony dummy	-101.4 (383.2)	37.97 (357.0)	41.20 (245.7)			
Island	24.00 (79.12)	-22.89 (64.85)	-11.41 (112.0)			
Contiguity	323.6 (1,000)	-248.8 (1,549)	339.7 (934.3)			
Common Language	-16.08 (105.8)	-94.42 (88.23)	-56.15 (140.7)			
Ln(ODA _(t-2))	10.16** (4.310)	6.931** (3.241)	7.578* (3.940)	0.195*** (0.0349)	0.233*** (0.0207)	0.192*** (0.0367)
GSP	-8.166 (84.99)	-16.25 (32.67)	-24.34 (76.78)	-0.732*** (0.0637)	-0.436*** (0.0570)	-0.767*** (0.0681)
LnODA _(t-2) *GSP	-9.603 (6.856)	6.525* (3.844)	-6.640 (5.430)	0.0195 (0.0365)	0.0152 (0.0233)	0.0237 (0.0385)
AR(1) (p value)	-3.74 (0.000)	-3.45 (0.001)	-3.81 (0.000)			
AR(2) (p value)	1.08 (0.281)	0.28 (0.779)	0.45 (0.440)			

주: () 안의 숫자는 해당 추정치의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 10% 유의수준, **5% 유의수준, ***1% 유의수준.

(3)열은 시스템 GMM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제 (1)열은 개도국의 총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하고, (2)열은 1차상품의 수출량을, 제 (3)열은 제조상품 수출량을 종속변수로 한다. 표의 맨 아래에는 AR(1)과 AR(2) 검정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검정결과 AR(1)은 유의하고 AR(2) 유의하지 않아 오차항이 서로 독립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장에서는 시스템 GMM 이외에도 PPML(Pseudo Poisson Maximum Likelihood)분석을 통해 강건성을 검증하였다. 무역량이 0일 때 발생하는 편의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위에서 적용한 Heckmand 2단계 추정법과 Santos Silva and Tenreiro(2009)가 제안한 PPML이다. [표 3-11]의 제 (4)열과 (5)열, (6)열은 PPML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강건성 분석결과는 Heckman 2단계 추정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조는 총 수출량과 일차상품 수출량, 제조업 수출량에 모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GSP의 효과는 미미하고, GSP와 원조의 교차항의 계수도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본 결과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지만, 위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하다. 저소득국가에서 원조와 GSP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소득국가에서는 제조업의 수출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결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공여국들은 1970년대부터 원조와 함께 특혜관세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증진을 지원해왔다. 지난 30년간 특혜관세의 수혜국가와 품목수가 수차례 조정되었고,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조도

53) 소득그룹별 강건성 분석표는 지면관계상 본장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Heckman 이단계 추정법의 결과와 비슷하다.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특혜관세와 원조가 실제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본 장에서는 공여국의 대표적인 지원방식인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도국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원조와 GSP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성 확대와 개도국의 무역역량 증진을 위한 원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여국들은 GSP가 실질적인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와 GSP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아직 개도국에 대한 GSP를 도입하지 않은 우리나라의 개도국 통상정책에도 정책적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는 수출주도의 경제성장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무역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정책, 특히 통상분야 정책을 중심으로 한 개도국에 대한 정책 컨설팅이 가장 대표적이다. 또한 개도국의 무역증진을 지원하는 무역을 위한 원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난 10년간 무역을 위한 원조 규모를 70% 정도 증가시켜 2013년 기준 약 7억 달러를 지원했다.⁵⁴⁾ 이러한 우리나라의 개도국 무역 증진을 위한 원조정책의 효과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GSP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가 실질적인 수출 발생 및 확대에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은 개발효과성 증진 이외에도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의 의미도 있다. 현재 GSP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선진국으로 경제규모와 무역규모가 큰 OECD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고,⁵⁵⁾ OECD DAC 가입, G-20회의 개최

54) OECD CRS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16. 11. 1).

55) IMF (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검색일: 2016. 8. 1).

등 지난 10여 년간 국제무대에서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GSP 도입을 통해 개도국의 국제무역질서 참여를 돕고 세계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면, 우리나라의 국격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인 요인 외에도 GSP 도입으로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이로 인한 국내 소비자 부담 감소 및 국내 생산경쟁력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GSP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특혜관세 도입으로 인한 수입증대와 국내 산업의 피해 및 관세수입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이다. 개도국에 대한 GSP를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수입증대를 예측해 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간단한 시나리오 분석을 시도해 보았다. 본 분석에서 사용한 수입증대액(ΔM)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된다.

$$\Delta M = m^* e^* M = m^* \frac{t_1 - t_0}{1 + t_0} * M$$

여기서 e 는 GSP 도입 시 예상되는 관세변화율이고, m 은 수입수요탄력성, M 은 현재의 수입액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관세무역진흥원에서 제공하는 2012~2014년 평균 우리나라의 HS코드 10단위 품목별 수입량과 관세율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품목별 탄력성은 WITS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시나리오 분석은 GSP의 수혜국가와 수혜품목, 관세인하율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수혜 국가를 점차 늘리는 시나리오를 분석해 본다. 수혜품목은 민감품목인 쌀, 곡물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철폐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 관세 인하율은 보수적으로 20% 인하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다.⁵⁶⁾

56) 관세 인하율은 조미진 외(2011)에서 분석한 대로, 다른 협정의 양허안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또한 GSP 도입 시 전면적인 무관세보다는 단계적인 도입이 현실적이므로, 관세 인하율을 보수적으로 20%로 설정하였다.

표 3-12. 시나리오 1: 저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2~2014 평균 수입액	수입 증가액	관세율
1	4107120000	그레인스플릿	359.2	252.5	0.05
2	6107999000	기타의류	25.3	109.8	0.13
3	1207400000	참깨	1,244.1	75.1	0.4
4	4107110000	풀그레인	105.2	73.8	0.05
5	6210401000	합성섬유제품	1,091.7	63.5	0.13
		총	12,971.3	433.3	

자료: 저자 작성.

먼저 최빈국 및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GSP를 도입하는 시나리오 분석 결과이다. 현재 최빈국 특혜관세제도하의 무관세 제품을 제외하고 관세부과 제품에 대한 관세 20% 삭감에 따른 수입 증대 효과를 살펴보았다. 최빈국과 저소득국으로부터의 수입의 경우에는 농산품과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와 농산품의 수입증가액이 전체 수입액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약 90%나 되지만, 수입증대액의 규모가 약 4억 달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0.08%에 불과하고 전체 최빈국 및 저소득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약 3% 정도이다. 따라서 최빈국과 저소득국을 대상으로 한 특혜확대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GSP의 수혜 대상국을 중하위 개도국으로 확장할 경우에도 국내수입 증대로 인한 부작용은 크지 않다. [표 3-13]에서 보이듯이, GSP를 도입할 경우 담배 등 농산품과 일부 전자기기, 석유 등 조제품의 수입증가가 예상된다. 그러나 전체 수입증대액은 약 30억 달러 규모로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약 0.65%정도이다.

표 3-13. 시나리오 2: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단위: 백만 달러)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2~2014 평균 수입액	수입 증가액	관세율
1	2403199000	기타담배	242.3	2,808.9	0.4
2	8471300000	휴대용자동자료처리기계	99,279.1	1,468.6	0.08
3	4107920000	그레인스플릿(grainsplit)	1,317.9	1,005.9	0.05
4	8537109000	기타 전자기기	67,977.9	954.2	0.08
5	8543709020	디텍터(광센서 포함)	19,907.7	903.3	0.08
		총	128,084.9	3,432.0	

자료: 저자 작성.

표 3-14. 시나리오 3: 저소득 및 중하위 소득, 중상위 소득 개도국 대상 GSP 도입에 따른 수입증대 효과

순위	HS코드	품목명	2012~2014 평균 수입액	수입 증가액	관세율
1	8703321010	신차	887.3	4,529.5	0.1
2	2403199000	담배	313.7	3,635.5	0.4
3	4107920000	그레인스플릿	1,786.9	1,363.8	0.05
4	6107999000	기타 의류	169.0	739.4	0.13
5	2709001090	기타 광물성 연료	121,073.4	730.6	0.03
		총	155,945	4,371	

자료: 저자 작성.

GSP의 수혜국을 중상위 소득 개도국으로 확장할 경우에는 광물성 연료와 신차, 그리고 농산물과 섬유제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수입 증가액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바, 향후 중하위 소득 국가로의 GSP 도입 시에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국가로만 특혜수혜국을 한정할 경우에는 수입액 증가분이 크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지만, 수혜국의 범위를 하위 및 상위 중소득국가로 확장할 경우 농업과 섬유 부문의 피해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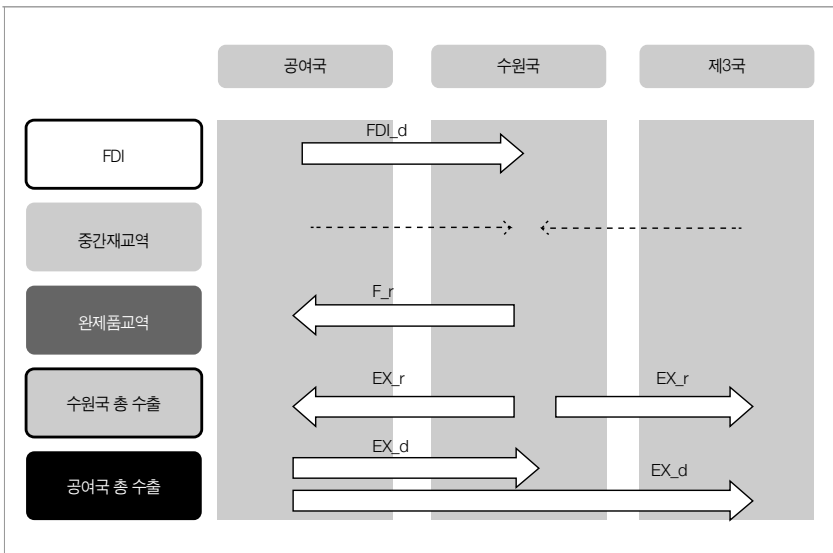
하지만 농업과 섬유 부문은 개도국의 중점 수출 분야이기 때문에 이들 부문에 특혜관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개도국의 수출증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일본 등 다른 공여국들은 GSP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제한조치와 원산지 규정 등을 엄격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과 섬유 부문의 수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개도국의 수입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큰 피해는 예상되지 않는다. 그러나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우리나라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진국과 같이 자국 산업 보호 조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WTO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 개도국을 경제규모별로 세분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개방수준에 따라 단계적인 GSP를 도입하는 것도 현실적인 GSP 도입 방법일 것이다.

개도국과의 협력에서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개도국의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협력 전략을 도입하는 것이다. GSP는 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수출증진과 경제성장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본 장에서 실시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원조와 특혜관세를 함께 지원할 경우 개발효과성이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원의 개발효과성을 증진하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GSP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에 대한 GSP 도입은 개도국의 경제성장 외에도 우리나라의 개도국과의 경제협력기회 확대로도 이어질 수 있다. Suwa-Eisenmann and Verdier

(2006)에 따르면, GSP로 인해 개도국의 시장접근성이 확대될 경우, 공여국에서 이 부문에 대한 투자(FDI_d)가 늘어날 수 있다(그림 3-1). 특혜관세제도를 활용해 수출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기업들의 진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수출 확대(F_r , E_r)와 공여국의 수출확대(E_d)로까지 확대될 수 있어 공여국과 수원국의 교역이 모두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그림 3-3. FDI와 무역의 흐름



자료: Suwa-Eisenmann and Verdier(2006)의 [그림 2].

제4장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2. 주요 이슈 분석
3. 소결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은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시스템에 대한 영향이 가지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산되어 왔다.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열여섯 번의 해 중 열다섯 번을 이번 세기에 경험했으며, 빙하가 사라지고, 극심한 기상이변, 가뭄과 사막화 등은 기후변화로부터 기인한 현상이다. 세계은행은 향후 15년간 기후변화로 인해 1억 명의 인구가 빈곤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했다.⁵⁷⁾ 이 장에서는 파리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향후 부각될 개도국 협력 이슈를 검토한다.

1.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결과

가.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과 의의

지난 2015년 말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는 모든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내용의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다. 더반 당사국총회(COP17)에서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 도출을 결정한 이래 4년 만의 결과로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된 이래 가장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파리협정의 가장 큰 의의는 전 세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이 탄소배출량 상승을 저지하고 각국의 경제시스템을 화석연료 기반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합의했다는 점이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55% 이상을 차지하는 최소 55개 당사국이 비준 등 국내적 승인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데, 2016년 11월 4일 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57) Hallegatte *et al.*(2016), Ch. 6. A Window of Opportunity: Climate-Informed Development and Pro-Poor Climate Policies.

따라 현재 협정은 발효된 상태이다.

파리협정은 제2조에서 협정의 목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이행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의 맥락에서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 지구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으로 명시한다. 파리협정은 유엔기후변화협약보다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지구 온도 상승을 2°C 미만으로 제한하되, 궁극적으로는 1.5°C 이하 상승으로 노력하고, 특히 기후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적응, 저배출 및 복원력 있는 개발 경로 지원을 위한 재원 제공에 대한 사항을 목표에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글상자 4-1. 파리협정의 목표

Articl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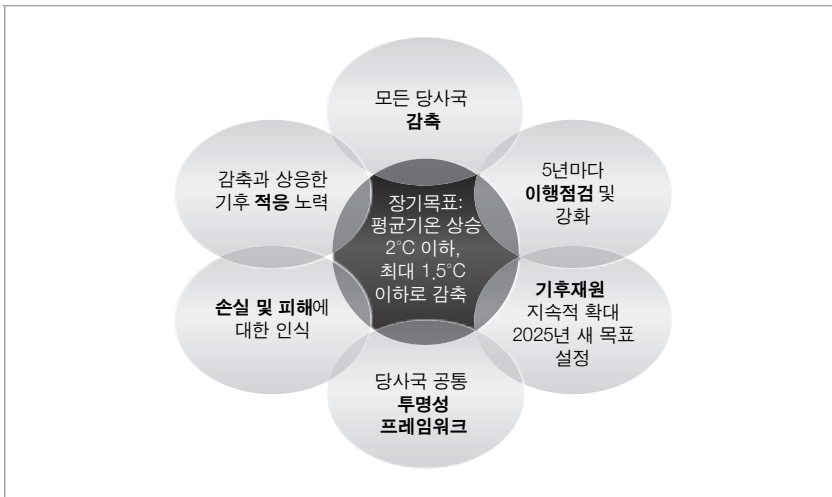
1. This Agreement, in enhanc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ncluding its objective, aims to strengthen the global response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fforts to eradicate poverty, including by:
 - (a) Holding the increase in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to well below 2°C above pre-industrial levels and pursuing efforts to limit the temperature increase to 1.5°C above pre-industrial levels, recognizing that this would significantly reduce the risks and impacts of climate change;
 - (b) Increasing the ability to adapt to the adverse impacts of climate change and foster climate resilience and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development, in a manner that does not threaten food production; and
 - (c) Making finance flows consistent with a pathway towards low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2. This Agreement will be implemented to reflect equity and the principle of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and respective capabilities, in the light of different national circumstances.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는 [그림 4-1]과 같다. 지구 온도 상승에 관한 장기 목표하에 모든 당사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mitigation), 감축과 동등한 수준의 적응(adaptation),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 고려, 기후재원(climate finance) 확대, 모든 당사국에 적용되는 투명성체계(transparency framework), 5년마다 전 지구 차원의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이다. 당사국들은 ‘자국이 정한 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따라 감축목표를 각국의 상황(national circumstances)에 맞춰 이행하고, 이는 5년마다 검토되고 강화된다. 파리협정은 글로벌 목표 즉, 2°C 이상 상승 제한, 글로벌 적응 목표, 기후재원 확대 목표하에 개별 국가가 NDC를 제시하고(“pledge”) 이를 검토(“review”)하는 상향식 방식이 특징인데, 이러한 접근법은 교토의정서와는 다른 방식이며, 전 세계가 파리협정 채택을 지지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⁵⁸⁾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선진국이 공공 및 민간 출처를 활용

그림 4-1. 파리협정의 주요 요소



자료: Corfee-Morlot and Morgado(2016).

58) Corfee-Morlot and Morgado(2016).

하여 조성하기로 한 기후재원에 대한 공약은 파리협정에서 재확인되었다. 이에 더하여 2025년 이후 기후재원 규모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향후 수립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재원의 규모가 새롭게 제시된 것은 아니지만, 기존 유엔기후변

글상자 4-2. 기후재원 관련 파리협정 및 당사국총회 결정문 조항

Paris Agreement

Article 4 (감축)

5. Support shall be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y Par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Articl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9, 10 and 11, recognizing that enhanced support for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ll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actions.

Article 9 (재원)

1.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provide financial resource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with respect to both mitigation and adaptation in continuation of their existing obligations under the Convention.
2. Other Parties are encouraged to provide or continue to provide such support voluntarily.
3. As part of a global effort,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o take the lead in mobilizing climate finance from a wide variety of sources, instruments and channels, noting the significant role of public funds, through a variety of actions, including supporting country-driven strategies, and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uch mobilization of climate finance should represent a progression beyond previous efforts.

당사국총회 결정문(1/CP.21)

53. Also decides that,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3, of the Agreement, developed countries intend to continue their existing collective mobilization goal through 2025 in the context of meaningful mitigation actions and transparency on implementation; prior to 2025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aris Agreement shall set a new collective quantified goal from a floor of USD 100 billion per year, taking into account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eveloping countries: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화협약과 달리 감축 및 적응 목표와 같은 수준으로 제2조에 재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은 파리 당사국총회의 주요 성과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기후재원 조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이 파리협정이 아닌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포함됨으로써 법적 효력은 상이할 수 있으나, 향후 당사국총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⁵⁹⁾ Zahar(2016)은 파리협정 제9조의 선진국의 의무가 'shall'이 아닌 'should'로 표현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2010년 칸쿤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2020년 1,000억 달러 목표(ceiling)가 파리 당사국총회에서는 하한(floor)으로 제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한편 선진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기후재원 조성에 참여하고 기후재원의 흐름을 보고하도록 하였는데,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다른 당사국을 지원의 주체로서 표현한 조항은 기술이전에 관한 내용으로⁶⁰⁾ 재정지원의 제공자로서 다른 당사국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열세 번째 목표는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협상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가장 중요한 포럼이라는 점을 함께 밝히고 있다. 파리협정은 목표에서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하 개별 조항에서도 이에 대한 방향성은 지속적으로 드러나며, 기후변화 관련 목표인 SDG13뿐만 아니라 타 목표와의 연관성이 나타나기도 한다.

파리협정 제5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수단으로서 산림의 역할에 관한 내용으로 SDG15, 산림을 비롯한 토지 및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제시한 목표와 연관된다.

59) Espagne(2016).

60) 유엔기후변화협약 4.5조는 다른 당사국이 기술이전을 지원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서술함: "Other Parties and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do so may also assist in facilitating the transfer of such technologies."

Paris Agreement, Article 5

1. Parties should take action to conserve and enhance, as appropriate, sinks and reservoirs of greenhouse gases ..., including forests.
2. Parties are encouraged to take action to implement and support, including through results-based payments, the existing framework ...: policy approaches and positive incentives for activities relating to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and alternative policy approaches, such as joint mitigation and adaptation approaches for the integral and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while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incentivizing, as appropriate, non-carbon benefits associated with such approaches.

SDG15

Protect, restore and promote sustainable use of terrestrial ecosystems, sustainably manage forests, combat desertification, and halt and reverse land degradation and halt biodiversity loss

15.2 By 2020, promote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of all types of forests, halt deforestation, restore degraded forests and substantially increase afforestation and reforestation globally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United Nations(2015a).

파리 당사국총회를 통해 적응에 관한 글로벌 목표가 제시된 것은 성과 중의 하나이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합의를 통해 전 지구 온도 상승 추이가 제한될 것이나,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적응하기 위한 수단은 여전히 필요하다.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은 기후변화가 삶을 위협하는 지속적인 위협요소이다. 파리협정 제7조는 적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연관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Article 7

1. Parties hereby establish the global goal on adaptation of enhancing adaptive capacity, strengthening resilience and reducing vulnerability to climate change,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ing an adequate adaptation response in the context of the temperature goal referred to in Article 2.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한편 파리협정에서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는 적응과 분리되어 다뤄진다. 당사국들은 인간과 거주공간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의 심각성을 제기하기 위해 손실과 피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조기경보 및 기후 리스크 평가에 관한 모범사례를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손실과 피해가 금전적 보상(compensation)과 연계되는 것을 경계, 별도의 의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반대했던 주요 쟁점사항이다. 이에 따라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 제8조가 보상과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내용을 당사국총회 결정문(1/CP.21)에 포함시켰다. 이와 관련, Sindico(2016)은 지속가능한 도시에 관한 SDG11과 손실과 피해 사항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 갑작스러운 재해에 의해 손실과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인간 및 거주지의 복원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Paris Agreement, Article 8

1. Partie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verting, minimizing and addressing loss and damage associated with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including extreme weather events and slow onset events, and the role of sustainable development in reducing the risk of loss and damage.

파리 당사국총회 결정문(Decision 1/CP.21)

51. Agrees that Article 8 of the Agreement does not involve or provide a basis for any liability or compensation

SDG11

Make cities and human settlements inclusive, safe, resilient and sustainable

11.5

By 2030, significantly reduce the number of deaths and the number of people affected and substantially decrease the direct economic losses relative to global gross domestic product caused by disasters, including water-related disasters, with a focus on protecting the poor and people in vulnerable situations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United Nations(2015a).

나. 우리나라의 공약사항

우리나라는 2015년 6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 business as usual, 850.6백만tCO₂e) 대비 37%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이는 과거 2009년에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평가된다. 37% 목표에는 국제시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 11.3%p가 포함되어 있는데, 국내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의 하나로서 국제 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해외감축 수단을 활용하기로 한 것이다. 해외 감축은 대부분 개도국에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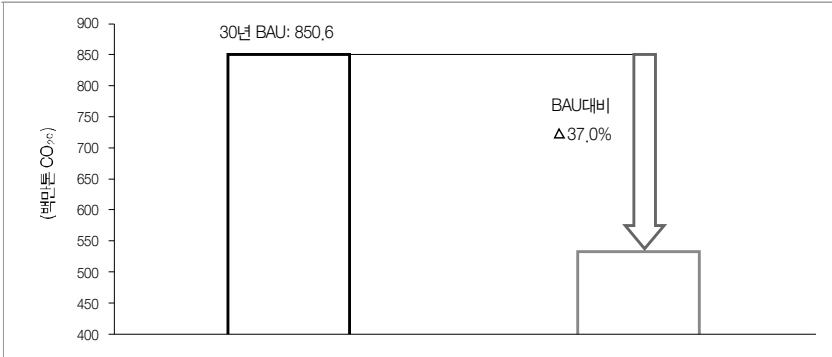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해외 감축사업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재원),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감축목표 달성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지원하는 개발협력 정책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 4-1. 우리나라의 국가가 정한 기여(NDC)

배출전망치 Baseline	(단위 : 백만 tCO ₂ e)			
	연도	2020	2025	2030
	BAU	782.5	809.7	850.6
	○ 인구, GDP, 산업구조, 유가 등 주요 경제변수 전망을 토대로 KEEI-EGMS 모형을 운용하여 배출전망치 도출			
감축공약목표	○ 2030년 BAU 대비 37% 감축			
대상부문	○ 국가 전 부문이 대상			
섹터	○ 부문별로 에너지, 산업공정, 농업, 폐기물 포함 ○ 토지부문(LULUCF: land use, land-use change and forestry) 배출량 및 흡수량을 포함할지 여부와 방식은 추후 결정			
대상가스	○ 이산화탄소(CO ₂), 메탄(CH ₄), 아산화질소(N ₂ O), (HFCs), (PFCs), 육불화황(SF ₆)			
온난화지수	○ 1995년 IPCC 제2차 평가보고서의 지구온난화지수(GWP) 적용하여 CO ₂ 환산톤 계산			
배출량 산정방식 Inventory methodology	○ 2014년 12월 제출한 '격년갱신보고서'와 동일한 산정방법론을 적용 ○ IPCC 1996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을 산정하였으며, 일부 부분은 - 농업분야 벼 재배(4C), 폐기물 분야 기타(6D) - IPCC 2006 가이드라인 사용			
국제탄소시장	○ 대한민국은 2030년 감축목표를 이행함에 있어,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을 부분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5. 6. 29).

그림 4-2.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료: 환경부 보도자료(2015.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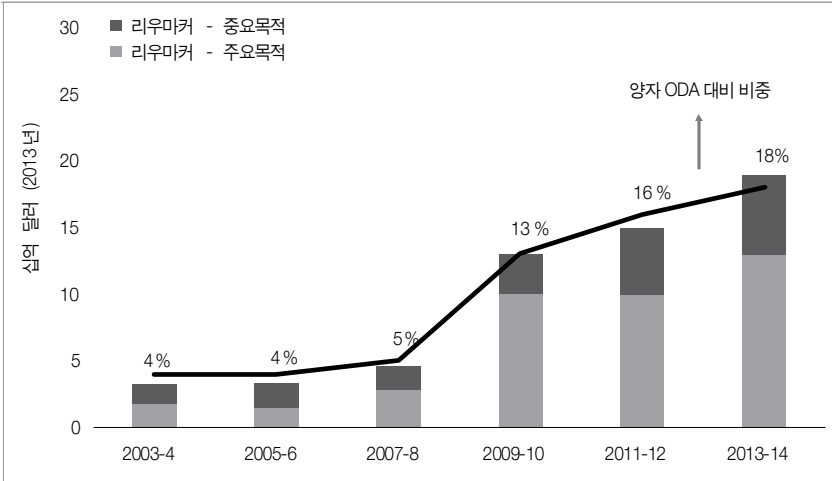
2. 주요 이슈 분석

Corfee-Morlot and Morgado(2016)는 파리협정 이행에 있어 개발협력은 핵심임을 강조했다. 공여국들은 재원을 제공함과 동시에 수원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이를 이해하고 인식을 제고하며 미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또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수단 마련과 관련 공여국 자국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가. 기후변화 ODA 현황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015)에 따르면, 기후변화 마커로 측정된 2013~14년 사이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규모는 연간 약 256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DAC 회원국 전체 양자 ODA의 18% 수준이다.

그림 4-3.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관련 지원 추이



자료: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2015).

같은 기간 다자개발은행(MDB)의 기후변화 관련 사업 규모는 약 188억 달러에 달하며,⁶¹⁾ GCF, GEF 등 기후변화 관련 기금 규모는 25억 달러 수준이다.

기후변화 관련 개발재원(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⁶²⁾ 중 75%가 감축사업을, 37%는 적응사업을 지원했다(12%는 감축 및 적응 공통 사업). 감축사업의 68%가 양허성을 가진 반면, 적응사업의 경우 90%가 양허성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으로 살펴보면, 감축사업의 80%는 중소득국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 20%는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서 발생하였다. 적응사업의 경우, 이 비율은 61:39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는 에너지 발전 및 공급(27%), 운송 및 저장(19%), 일반환경보호(11%), 농림수산 분야(10%), 물 공급 및 위생(8%) 등이다.

2016년 5월에 개최된 G7 회의에서 정상들은 파리협정의 모멘텀을 지속하

61) MDB 공동 보고서의 수치를 DAC이 취합한 규모임.

62) 이하 서술은 DAC이 기후변화 마커 데이터와 MDB 공동보고서를 활용하여 취합한 2013~14년 평균 수치에 따른 것임.

표 4-2. OECD DAC 회원국의 기후변화 ODA 현황(2014년)

(단위: 백만 달러)

	감축	적응	공통	Total	총 양자 ODA	%
	a	b	c	a+b-c		
Australia	255.2	338.4	236.6	357.1	3,498.3	10
Austria	47.8	33.6	17.2	64.2	672.5	10
Belgium	204.6	253.0	150.4	307.2	1,460.0	21
Canada	84.8	131.0	81.5	134.3	3,527.7	4
Czech Republic	1.7	3.9	0.1	5.4	63.2	9
Denmark	482.0	370.7	370.7	482.0	2,070.2	23
EU Institutions	1,381.7	1,236.0	811.8	1,805.9	11,859.5	15
Finland	79.3	66.2	18.2	127.3	813.7	16
France	2,165.5	1,173.3	523.0	2,815.9	9,070.6	31
Germany	5,688.2	2,790.3	1,163.7	7,314.8	17,960.3	41
Greece	0.2	0.3	0.2	0.3	46.1	1
Iceland	5.6	9.6	5.2	10.0	30.9	32
Ireland	49.5	86.1	49.2	86.3	519.6	17
Italy	92.5	57.4	50.0	100.0	1,532.7	7
Japan	4,786.7	2,328.6	295.3	6,820.0	16,236.0	42
Korea	34.3	56.0	21.0	69.3	2,378.3	3
Luxemburg	32.4	31.5	25.7	38.2	300.4	13
Netherlands	118.9	337.8	26.5	430.1	3,963.0	11
New Zealand	58.5	60.6	28.1	91.0	568.4	16
Norway	903.1	341.2	256.4	987.9	4,241.5	23
Poland	2.7	3.2	2.3	3.5	301.9	1
Portugal	11.7	3.4	2.1	13.0	278.9	5
Slovak Rep	0.2	0.1	0.1	0.2	17.4	1
Slovenia	1.0	0.8	0.2	1.6	21.0	8
Spain	58.0	149.4	51.3	156.0	882.6	18
Sweden	702.4	776.2	538.3	940.4	4,383.7	21
Switzerland	224.7	342.2	100.4	466.5	3,253.6	14
UK	535.7	476.6	273.4	738.9	8,565.5	9
US	817.7	904.6	-	1,722.3	28,362.3	6
Total DAC	18,826.7	12,361.9	5,099.2	26,089.5	126,879.7	21

주: 기후변화 마커 주목적(principal) 및 중요목적(significant) 합산 금액. commitments 기준.
 자료: OECD.Stat(검색일: 2016. 7. 21).

고 파리협정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각국이 제출한 NDC의 투명한 이행과 지속적인 기여의 확대, 2020년 이전 장기 감축전략 수립, 5년마다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에 활발한 참여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기로 기후재원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재원 동원을 위해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무엇보다 2025년까지 철폐하기로 한 화석연료 보조금에 대한 공약을 다시 확인하였다.

지구환경금융(GEF: Global Environment Facility)은 2016년 6월 개최된 제50차 이사회(Council)에서 새로운 신탁기금인 ‘투명성을 위한 역량구축 이니셔티브(CBIT: Capacity Building Initiative for Transparency)’를 승인했다.⁶³⁾ CBIT는 개도국이 파리협정을 투명하게 이행하도록 제도적, 기술적 역량구축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대다수의 개도국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부족하고, 자국의 NDC 이행 상황을 추적하는 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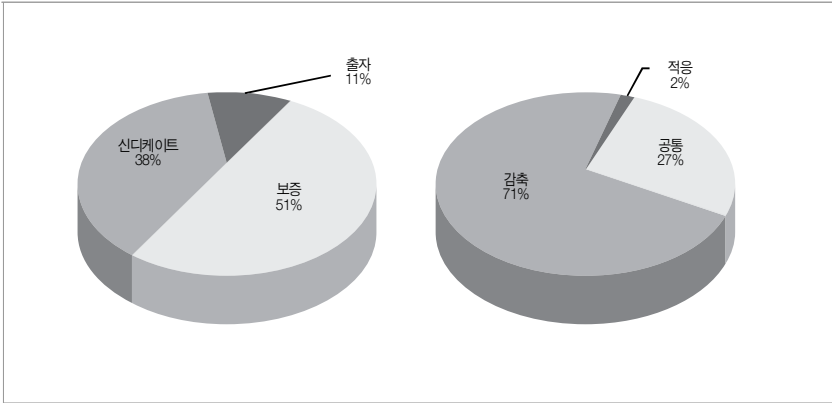
나. 민간재원 동원과 공공재원의 역할

DAC은 2013년부터 개발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보증, 신디케이트(syndicated loans), 출자의 세 가지 유형을 포함한다. 2015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14년 평균 보증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는 72억 달러이며, 이 중 24%인 17억 달러가 기후변화 분야에 활용되었다.⁶⁴⁾ 이 수치는 2009년 2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다.

63) GEF CBIT 공여국: 미국 1,500만 달러, 영국 1,000만 파운드, 캐나다 5백만 캐나다 달러.

64) Benn *et al.*(2016).

그림 4-4. 기후변화 관련 민간재원: 유형별, 분야별 비중



자료: Benn *et al.*(2016).

Buchner(2015)에 따르면, 공공재원에 의해 동원된 민간재원 규모는 2013년 127억 달러에서 2014년 167억 달러로 상승하여 평균 147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보고서에서 저자는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공공재원 수단, 역량지원, 적절한 정책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현재 공공재원 유형별 민간재원 동원 규모에 관한 데이터에 관한 분석은 매우 초기 단계이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량지원 및 정책 효과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 4-3]은 공공재원 유형별 민간재원 동원 규모 데이터의 질적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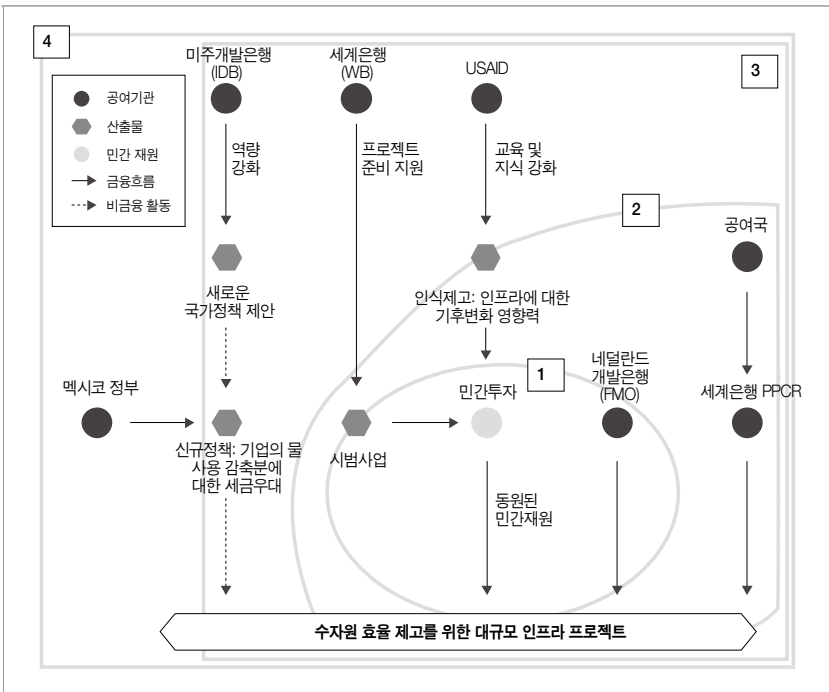
Brown *et al.*(2015)은 민간부문이 참여하는 프로젝트에서 공공부문의 다양한 개입 상황을 가정하고, 공공재원 투입 및 공공부문의 개입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투입된 민간재원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사례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그림 4-5). 이 연구를 통해서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 목표에서 민간재원의 비중을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기후재원 추적 방식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4-3. 공공재원의 유형별 민간재원 동원 규모 데이터 현황

유형	양자	다자
증여	부분적	부분적
양허성 차관	다소 포괄적	다소 포괄적
비양허성 차관	부분적	다소 포괄적
크레딧라인	부분적	존재하지 않음
출자	불충분	불충분
기금 수준 출자	부분적	불충분
보증	다소 포괄적	다소 포괄적

주: 데이터 현황은 완전함-다소 포괄적-부분적-불충분-존재하지 않음으로 구분.
 자료: Buchner(2015)의 Figure 8을 재구성.

그림 4-5. 민간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활용된 공공재원 고려 범위



자료: Brown et al.(2015), Figure 6 재구성.

다. 기후변화의 주류화

2016년 G20 Climate Finance Study Group(CFSG) 보고서는 개발협력 프로그램에 기후변화 주류화(mainstreaming)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의 공동혜택(co-benefit)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의 제2조 목표에 명시되어 있는 ‘저배출, 기후변화로부터 회복력을 지닌 개발 경로를 위한 기후재원의 흐름’과 제9조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가능한 국가의 재원 제공’ 사항을 특히 강조하면서, 개도국들이 자국의 발전과 빈곤해소를 추구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이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하며, 이를 원조기관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에 DAC이 발표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 기후적응 개발협력의 통합 등에 관한 지침들은⁶⁵⁾ 개발협력 사업 추진시 수원국 국가개발전략과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고, 기후렌즈를 활용한 사업 설계 등이 제시되었다. G20 CFSG 보고서는 유사한 방향으로 볼 수 있으나, 공여국의 자금 지원 단계에서의 주류화를 특히 강조한다.

G20 CFSG는 파리협정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국가주도 접근에 기초한다는 것이며,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통해 한 국가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파리협정의 국가주도 접근방식은 NDC, 국가가 정한 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 국가적응행동프로그램(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 of Action) 등을 통해 추진된다. 모든 개발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은 수원국이 개발한 국가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계획과 개발수요에 근거함으로써 수원국의 주인의식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GCF 등 국제 기금에 대한 직접적 접근(direct access)

65)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환경과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방식을 강조한 지침들은 ‘Strateg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actical Guidance for Development Cooperation(2001)’, ‘Integrating the Rio Conventions into Development Cooperation(2002)’, ‘Guidance on Integration Climate Change Adaptation into Development Cooperation(2009)’ 등이 있음. 자세한 내용은 권을 외(2009), pp. 68~93 참고.

의 중요성을 다시 환기시킨다.

G20 CFSG 보고서에서는 증여 또는 양허성 자금의 역할이 부각되었는데, 기술 개발 및 이전, 수원국의 자기혁신 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양허적 성격의 공공재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술개발과 같은 고위험 분야에 있어 공공재원의 투입은 민간의 투자 결정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제공한다. 그러나 민간투자를 유인하는 수준 이상의 위험을 공공부문이 보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민간투자를 구축할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양허적 지원은 지속가능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 두 목적을 동시에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가능한 사업에 제공되어야 하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제시되었다.

- 경제성장과 동시에 공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 고용 창출과 신산업 구축 효과
- 복원력 제고를 위한 토지 사용 프로젝트 → 안정적 식량공급과 생물다양성 보존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
- 지속가능한 수송 시스템 구축 → 이동 시간과 연료 비용 절약을 통해 접근성 및 이동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공기오염 및 건강위험 인자 감소

한편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개발금융기관들이⁶⁶⁾ 발표한 ‘기후 주류화(Mainstreaming Climate Action)를 위한 다섯 가지 자발적 원칙(Five Voluntary Principles)’이⁶⁷⁾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후 전략 공약(commit to climate strategies): 고위급 관리의 리더십, 기후변화 대응을 전략적 우선순위로 명시, 정책 공약 및 목표

66) 다자개발은행들을 비롯한 국제개발금융클럽(IDFC: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e Club) 회원을 포함함.

67)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document/Climate/5Principles.pdf> (검색일: 2016. 9. 24).

2. 기후 위험 관리(manage climate risks): 기후 위험에 대한 이해 및 적극적 관리, 포트폴리오, 파이프라인, 새로운 투자를 기후변화 관점에서 평가
3. 기후 스마트한 목표 촉진(promote climate smart objectives): 저탄소 및 복원력 있는 투자 촉진을 위한 장애요인 극복 방안 개발, 녹색채권 또는 혼합 금융을 통한 위험부담 메커니즘 발굴, 신용평가회사 및 회계기업과 공동 협의
4. 기후 성과 개선(improve climate performance): 성과 개선을 위한 운영 수단 도입(예: 온실가스 보고, 녹색투자를 지원한 차관 및 자문 규모, 기후변화 관련 자산 배분, 기관 자체의 기후 발자국 관련 지표 개발)
5. 기후행동에 대한 책임(account for climate action): 성과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발표

그림 4-6. 기후 주류화를 위한 다섯 가지 자발적 원칙 참여 기관



자료: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document/Climate/5Principles.pdf>(검색일: 2016. 9. 24).

라.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

파리협정 제10조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기후변화에 대한 복원력을 갖추기 위해 기술 개발 및 이전의 중요성에 관한 장기비전을 공유하며, 이를 위해 당사국간 협력적 행동을 강화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미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 메커니즘(Technology Mechanism) 이행기구 성격을 지닌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TCN: Climate Technology Centre and Network)는 개도국에 대한 기술지원, 기후 기술 관련 지식에 대한 접근 강화, 기후 기술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를 목표로 운영 중이나, 개도국들은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선진국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선진국들은 자국 기업의 수출과 동시에 개도국으로의 기술이전이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개발 중인데, 특히 독일의 ‘재생에너지 수출 이니셔티브(renewables - Made in Germany)’는 눈여겨볼 만하다.⁶⁸⁾ 이미 2002년부터 시작된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의 글로벌 확산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경제에너지부(BMWi)의 재정지원으로 독일 중소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협력을 촉진한다. 독일 내 협력기관은 독일에너지기구(dena), 상공회의소(DIHK), 수출조정연방기구(BAFA), GIZ 등이며, 산업협회도 포함된다.

독일 정부의 재생에너지 수출 이니셔티브는 네트워킹 및 사업 기회를 논의할 수 있는 전시회 또는 박람회, 재생에너지 솔루션 프로그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그램(PDP)으로 구성된다. 재생에너지 솔루션 프로그램은 독일 재생에너지 기술 및 노하우의 현지화에 초점을 두는데, 독일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와 독일 기업들의 해외시장에 대한 관심을 접목시킨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 프로그램의 이행기관은 GIZ이다. 이 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전통적인 발전시설을 재생에너지 기술로 대체를 촉진

68) renewables - Made in Germany 웹사이트, <http://www.renewables-made-in-germany.com/en/>(검색일: 2016. 10. 4) 참고.

Article 10

1. Parties share a long-term vision on the importance of fully realizing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in order to improve resilience to climate change and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2. Parties, noting the importance of technology for the implementation of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recognizing existing technology deployment and dissemination efforts, shall strengthen cooperative action on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하는데, 개도국 현지 기업의 정보수집을 위한 독일 출장, 독일 기업의 개도국 현지의 프로젝트 발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시장분석, 기술 훈련 및 워크숍,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정책자문 등을 지원한다. 독일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업플랫폼(www.RenewablesB2B.com)은 공급사슬 전반의 사업절차 간소화에 기여하고자 구축되었다. 온라인 플랫폼은 해외시장에 대한 유용한 정보와 특정 분야의 정보에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개인 특화된 광고도 소개할 수 있다. 또한 재생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차원의 기업 디렉터리도 관리한다.

일본은 개도국에 저탄소기술을 보급하는 동시에 자국의 감축목표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크레딧메커니즘(JCM: Joint Crediting Mechanism)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JCM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하에서 교토 메커니즘을 잇는 파리협정 제6조 협력적 접근방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도 자주 소개된다. 2016년 10월 기준 16개 개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며, 현재까지 등록된 15건의 사업 중 4건의 사업에서 탄소크레딧이 발생하였다.⁶⁹⁾ 환경성

69) 일본 JCM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문진영 외(2016), 제3장 2절 참고.

뿐만 아니라 경제산업성이 참여하며, ADB에 출연한 신탁기금을⁷⁰⁾ 활용하기도 한다. 일본은 JCM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천만~1억 CO₂톤(tCO₂te) 감축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⁷¹⁾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세계 정상들은 글로벌 청정에너지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이니셔티브는 저렴한 청정에너지를 제공하고 청정에너지 분야의 상업적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미국, 중국,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21개 참여국들은 향후 5년간 각국의 청정에너지 연구개발을 두 배 증가하기로 약속했다. 이 국가들은 전기로부터 발생하는 CO₂ 배출의 75%의 책임이 있는 국가들이며, 공약대로 연구개발을 늘릴 경우, 이는 전 세계 청정에너지 R&D 투자의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청정에너지 기술의 대규모 확산 노력은 28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Breakthrough Energy Coalition의⁷²⁾ 참여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미션이노베이션 위원회를 발족하였고, 2016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제1차 미션이노베이션 장관회의에서 2016년 5,600억 수준인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2016년 1.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미션이노베이션 회원국의 투자규모는 현재 150억 달러 수준에서 5년 내 300억 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⁷³⁾

70) 2014년에 출연한 신탁기금으로 정식 명칭은 Japan Fund for the Joint Crediting Mechanism임. ADB 사업에 고급 저탄소기술을 적용하게 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JCM을 활용하는 ADB 사업에 증여 및 기술지원을 제공함. 일본의 누적 출연금액은 2015년 6월 기준 약 3,200만 달러임.

71) Government of Japan(2015), p. 7.

72) 빌게이츠재단 주도로 아마존, 버진그룹, 알리바바, SAP, 소프트뱅크, 소로스 펀드매니지먼트, HP, Tata그룹, University of California 등이 참여함.

73) 산업통상자원부·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2016. 6. 3).

마. 탄소시장 확대

파리협정은 제6조를 통해 지구 온도 상승을 2°C, 더 나아가 1.5°C 이내로 제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서 탄소가격(carbon pricing)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기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탄소가격제도는 탄소 배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함으로써 시장에 대해 시그널을 제공하며, 감축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창출을 도모한다.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도로써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들 수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된 188개국의 NDC 중 90개가 자국의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탄소시장 활용을 포함하고 있다.⁷⁴⁾ 여기에는 교토의정서의 유연성 메커니즘인 CDM을 비롯하여 신시장메커니즘(NMM), REDD+, 국제탄소시장 연계 등이 포함된다. 탄소시장은 기후재원의 주요한 출처로서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매년 2조(\$2.1trillion) 가량의 수입을 거두는 20개 분야 29개 민간기업의 대표들이 'CEO Climate Leadership Group'을 조직하고, 세계 정상들에게 탄소가격에 대한 정책을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⁷⁵⁾ 이는 민간부문에서는 이미 기후변화를 수익창출의 사업모델에서 주요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용 절감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준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74) Walker and Swartz(2016).

75) Open letter from CEOs to world leaders urging climate action(2015), <https://www.weforum.org/agenda/2015/11/open-letter-from-ceos-to-world-leaders-urging-climate-action/>(검색일: 2016. 8. 5).

Paris Agreement, Article 6

1. Parties recognize that some Parties choose to pursue voluntary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ir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to allow for higher ambition in their mitigation and adaptation actions and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integrity.
2. Parties shall, where engaging on a voluntary basis in cooperative approaches that involve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ward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ensure environmental integrity and transparency, including in governance, and shall apply robust accounting to ensure, inter alia, the avoidance of double counting, consistent with guidance adopted by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3. The use of 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to achiev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voluntary and authorized by participating Parties.
4. A mechanism to contribute to the mitigation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s hereby established under the authority and guidance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for use by Parties on a voluntary basis. It shall be supervised by a body
 - (c) To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mission levels in the host Party, which will benefit from mitigation activities resulting in emission reductions that can also be used by another Party to fulfil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5. Emission reductions resulting from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shall not be used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the host Party'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if used by another Party to demonstrate achievement of it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6.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shall ensure that a share of the proceeds from activities under the mechanism referred to in paragraph 4 of this Article is used to cover administrative expenses as well as to assist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adverse effects of climate change to meet the costs of adaptation.

당사국총회 결정문(1/CP.21)

108. *Recognizes* the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of voluntary mitigation actions and their co-benefits for adaptation,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36. Also *recognizes* the important role of providing incentives for emission reduction activities, including tools such as domestic policies and carbon pricing;

자료: UNFCCC Secretariat(2015).

배출권 거래제도는 EU ETS를 비롯하여 미국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캘리포니아-퀘벡 탄소시장, 브리티시 콜럼비아 등 주 정부 차원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협력 유형으로 진화 중이다. 현재 파일럿 형태로 추진되는 중국의 탄소거래시스템은 2017년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190여 개 참가국들은 시장기반 수단 도입에 관해 합의한 상태다.

40개국 23개 도시에서 진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도 규모는 약 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2%에 해당되는 수준이다. 2016년 4월 Carbon Pricing Panel은⁷⁶⁾ 2020년까지 탄소가격이 적용되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5%까지 확대하고 향후 10년 내에 이를 50% 수준으로 달성하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세계은행은 지난 15년 동안 개도국의 탄소시장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가격 수단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역량구축사업을 지원해왔다.⁷⁷⁾ 그동안 150여 개의 감축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 혁신적이면서 결과에 기반을 둔 탄소가격 수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PMR) 프로그램은 칠레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탄소가격 도입과 중국과 카자흐스탄의 국가 배출권거래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Carbon Initiative for Development는 결과기반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각각 저탄소 성장을 위한 감축 사업과 아프리카 소외 지역의 에너지 접근성 제고 사업을 지원한다. 산림분야의 감축 지원사업인 Forest Carbon Partnership Facility와 Bio Carbon Fund Initiative는 14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지원 프로그램이다.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세계은행은 감축사업을 통해 발생된 탄소 크

76) Carbon Pricing Panel: 캐나다(Justin Trudeau), 칠레(Michelle Bachelet), 에티오피아(Hailemariam Dessalegn), 프랑스(Francois Hollande), 독일(Angela Merkel), 멕시코(Enrique Pena Nieto), 세계은행(Jim Yong Kim), IMF(Christine Lagarde), 캘리포니아(Edmund G. Brown Jr.), 리우데자네이루(Eduardo Paes), OECD(Angel Guerria).

77) Roome(2016).

그림 4-7. 주요 탄소거래제도의 분야 및 국제거래 여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석탄 광산 메탄	폐기물 처리	농업 비료	이산화질소 N2O 감축	기타 산업 가스	에너지 효율	오존층 파괴 물질 및 HFC, PFC, SF6 감축	신규 조림 및 재조림	기존 산림 관리	국제적 제도
CDM											
Ji Track 1											
AU CFI											
CA COP											
CCER											
Que bec											
CH OP											
JCM											
CAR											
GS											
VCS											

주: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 = Joint Implementation, AU CFI = Australia Carbon Farming Initiative, CA COP = California's Compliance Offset Program, CCER = China CER, Quebec = Quebec's Offset Program, CH OP = Switzerland's Offset Program, JCM = Joint Crediting Mechanism, CAR = Climate Action Reserve, GS = Gold Standard, VCS = Verified Carbon Standard.

자료: Kollmuss and Fussler(2015), Figure 3.

레딧을 금전화하여 기후재원으로 활용하는 Transformative Carbon Asset Facility 설립을 발표했다. 이상의 지원 프로그램들은 탄소가격 제도의 본격적인 도래에 대비, 역량구축 및 기반 마련을 통해 개도국의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3. 소결

이 절에서는 SDGs 채택과 같은 해 도출된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개발협력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을 제기하고 분석했다. SDGs에서 기후변화 대응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정부간 협상을 주축으로 이뤄져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라는 글로벌 개발 도전과제에 맞서 2020년 이후 전 세계가 지속가능한 개발에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할 선진국, 개도국 모두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동계획이다. 파리협정과 더불어 각국이 제출한 자국이 정한 기여(NDC)의 목표시한은 대부분 2030년으로 정해져 있다. 이는 SDGs의 달성시한과 일치한다. 2030년 SDGs를 잇는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 채택 시점에 기후변화가 여전히 개발의 도전과제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충분히 관리가능한 개발인자가 될지는 앞으로의 이행과정에 달려 있다.

이 연구는 SDGs 달성에 있어 기후변화와 관련된 주요 이슈로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기후변화 ODA의 확대이다. 현재 DAC 회원국 양자 ODA의 약 18%를 차지하는 기후변화 관련 지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야 하는데, 한정된 ODA 예산을 SDGs의 다른 여러 가지 세부목표를 고려하면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다. 둘째, ODA와 같은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민간재원을 동원하는 문제이다.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조성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할 기후재원의 주요 출처는 결국 민간부문이라는 공감대는 널리 형성되어 있다. 공여국 정부의 예산 제약하에서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는 논의는 개발협력에서 새로운 주제는 아니다. 다른 개발의제와 달리, 민간부문은 기후변화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한다는 차원을 넘어 새로운 사업모델의 주요소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참여유인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공재원을 활용한 민간재원 동원 이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을 비롯한 국제 논의에서 활발한 것은 이 때문이다. 셋째,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주류화이다. 개발협력사업에서 기후변화 주류화는 DAC이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한 사항이다. G20는 재정적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발전시키는 상황으로 의사결정 구조 전반,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기후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 이슈는 기후 기술에 관한 것이다. 공여국의 수원국으로 기술이전은 개발협력의 주요 유형 중의 하나이다. 파리협정은

기술에 관한 장기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의하는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해질 것이다. 선진국들은 민간부문이 기술을 개도국으로 이전 결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으로 수세적이였다. 하지만 일본의 JCM이나 주요국의 미션이노베이션(Mission Innovation) 이니셔티브와 같은 최근의 움직임은 혁신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으며, 해외로 기술이전은 새로운 시장 창출기회라는 사고의 전환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본격적으로 도래할 탄소가격의 시대를 이슈로 제기했다. 파리협정은 국제 탄소시장을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수단으로 명시하였으며, 이후 해당 조항을 근거로 세계 각국은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고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고 이를 거래가능한 재화로 간주하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탄소시장의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탄소 고배출 개도국의 참여는 필수적으로 제도적 기반 및 역량 구축이 시급하며, 신기후체제 하 개발협력은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제5장

K

PM

결론

1. 요약 및 시사점

2. 향후 과제



1.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는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특혜무역관세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개도국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새롭게 채택된 글로벌 개발목표에 부합할 수 있는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를 통합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역무역협정이 확대되면서 개도국 통상정책과 ODA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신기후체제 합의 이후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글로벌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확립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우선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확대되면서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가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의 시장접근 확대를 위한 특혜관세조치 도입에 대한 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원조예산의 급격한 증대가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특혜관세(GSP) 조치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개도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DAC에 가입하면서 2015년까지 ODA 예산을 GNI 대비 0.25%를 늘리겠다고 국제적으로 공약한 바 있으나, 재정제약 요인 때문에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고, 2020년까지 0.2%, 2030년까지 0.3%로 목표를 수정하였는데, 단기간 원조규모 확대가 어렵다면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파리협정 도출에 앞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을 유치한 국가로서 신기후체제하에서 더욱 능동적으로 글로벌 도전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나, ODA 예산 제약에 따라 공공재원을 활용,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민간기업이 개도

국 감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이는 신기후체제하에서 활성화될 국제 시장메커니즘에 참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중장기적 접근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가. SDGs 이행과 정책일관성 강화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선정하고, 경제개발과 사회발전,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괄하는 통합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있다. SDGs는 2030년까지 빈곤을 종식시키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사회·환경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하면서 목표간 연계성을 강조한다.⁷⁸⁾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협상과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SDGs의 이행수단과 협력분야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 간 일관성 제고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존의 MDGs를 넘어선 새로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공동으로 새롭게 합의한 SDG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적인 ODA 추진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신뢰받는 중견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국제사회 공헌과 리더십 강화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⁷⁹⁾ 주요 공여기관들은 SDGs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틀을 수립하고 있어, 한국도 SDGs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을 위한 정책 일관성 확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ODA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2장에서는 ODA 정책의 일관성과 관련된 주요 쟁점과 이슈를

78) 권을 · 이상미 · 송지혜 · 유애라(2015). p. 3.

79) 권을 · 이상미 · 송지혜 · 유애라(2015). p. 18.

분석하였다. 한국의 경우 개발원조, 무역, 기후변화 등 다양한 국제협약과 글로벌 어젠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입장과 역할이 달라 국제적 리더십과 개발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 개발원조 분야에서는 선진 DAC 회원국인 공여국으로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감축 의무를 수행하는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개발공헌지수(CDI)에서 나타나듯이 환경이나 무역 분야에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기존의 국제협약을 바탕으로 세부목표가 수립된 SDG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2년 시행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동료검토에서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별도의 장인 ‘원조를 넘어선 개발(development beyond aid)’에서 한국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의제를 수립하고, 관련 정책 간 일관성을 강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2017년 제2차 DAC 동료검토를 앞두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SDGs 이행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정책일관성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발효과성 차원에서 ODA 정책과 개도국에 대한 무역정책, 기후변화 정책의 일관성, 관련 SDGs 목표 간의 상호연관성, 범부처 및 공공-민간주체와 재원수단 간의 연계성에 대한 논의가 시급하다. 예를 들어, 원조 차원에서는 개도국의 무역인프라와 역량강화를 위한 무역원조(Aid for Trade)를 지원하고 있으나 개도국의 우리나라 시장접근성 확대를 위한 일반특혜관세(GSP)는 도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즉 SDG8인 지속적/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무역원조(세부목표 8.a)는 강조하지만 SDG17 이행수단의 일환인 무역정책 측면에서 개도국의 시장접근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은 활용하지 않고 있다. 즉, SDG8과 SDG17 간의 잠재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부재한 상황이다. 즉 개도국에 대한 원조정책과 시

장접근 조치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은 범부처별 협의와 조정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다.

나. 개도국 일반특혜관세(GSP)의 경제적 효과

유럽과 미국 등 선진 공여국들은 1970년대부터 원조와 함께 GSP 제도를 통해 개도국의 수출증진을 지원해왔다. 지난 30년간 GSP의 수혜국가와 품목수가 수차례 조정되었고, 개도국의 무역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조도 양적 및 질적으로 성장해왔다. 그러나 GSP와 원조가 실제로 수원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3장에서는 공여국의 대표적인 지원방식인 GSP와 원조가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업종별 및 수원국의 소득수준별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DA와 GSP가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수원국의 소득 수준과 수출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원조와 특혜관세가 함께 지원될 때 저소득국의 수출 특히 농업 부문의 수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조와 GSP의 각각의 효과를 살펴보면 원조는 대체로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반면 GSP의 수출 증진 효과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GSP가 개도국의 수출에 부정적이라는 결과도 도출되었다. 이는 공여국의 개도국 시장접근성 제고 노력이 그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Gamberoni(2007)와 Gradeva and Martinez-Zarzoso(2015) 등 기존 문헌에서 개도국에 대한 GSP의 도입 이후에도 개도국의 수출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분석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분석결과에 따르면, 개도국의 수출증진을 도모하고 원조와 GSP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장접근성 확대와 개도국의 무역역량증진을 위한 원조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GSP 제도를 도입한 국가 및 경제권은 미국, EU, 일본 등 13개에 달한다. 그러나 GSP의 실질적인 무역증진 효과가 미미한데, 이는 선진국의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행정절차 등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실제 GSP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개도국의 열악한 생산시설과 낮은 기술력 등도 시장접근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공여국들은 GSP가 실질적인 개도국의 수출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고 개발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원조와 GSP를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 신기후체제 합의와 개도국 협력

2015년 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에 따라 2020년부터는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기반의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이 지속가능한 발전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는데, SDG13에서 기후변화 및 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조속히 행동해야 하며,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향후 신기후체제로 이행하기 위해 개발협력은 개도국의 보다 적극적이고 의미있는 참여를 촉진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은 재원과 기술을 제공하고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선진국은 이미 2010년에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목적의 기후재원을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조성할 것임을 공약한 바 있다. 2025년에는 기후재원 조성 목표가 새롭게 제시될 예정이다.

2013~14년 평균 선진국(DAC 회원국) 양자 ODA에서 기후변화 관련 지원

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8% 정도이다. 이는 10여 년 전보다 4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선진국들은 기후변화 관련 양자 ODA를 확대하고 전보다 다자기구 및 기금에 대한 지원도 늘리고 있으나,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 기후재원 조성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재원 동원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최근 논의는 기후변화 ODA 확대보다는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공공재원의 역할, 특히 개발금융기관의 다양한 금융수단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개발금융기관들의 전략과 목표, 사업방향에 기후변화를 주류화하려는 자발적인 노력을 소개하였다.

이 연구는 일본의 JCM, 미션이노베이션 이니셔티브를 살펴보고 기후 기술 개발 및 이전을 통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을 검토하였다. 기후변화를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 경쟁력 확보를 통한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노력이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리협정은 감축목표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의 시장 메커니즘 활용을 허용하였는데, 이에 따라 향후 전 세계적으로 배출권 거래 및 탄소 크레딧 상쇄 제도가 활발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용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감축 수단으로서의 탄소시장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2. 향후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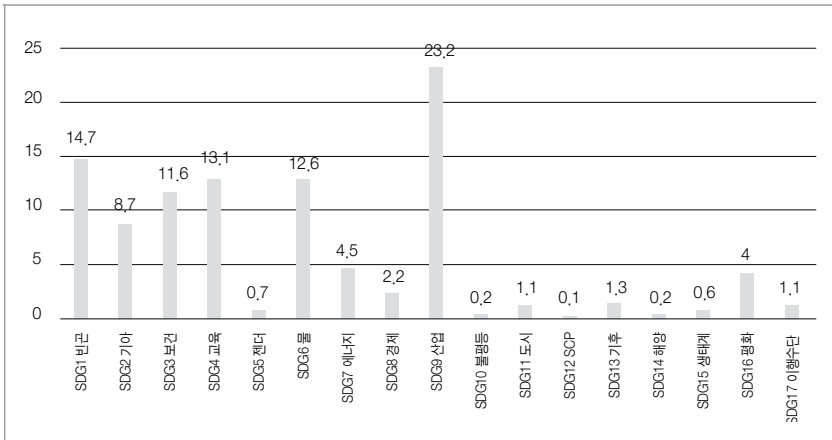
가. SDGs 이행계획과 정책조정 메커니즘 수립

SDGs 채택 이후 주요국들은 국가차원의 정책일관성 거버넌스 구축을 당면 과제로 국가개발계획을 통합하고 있다. 즉, 핀란드는 총리실 산하에 지속가능발전조정국을 운영 중이고, 일본의 경우 범정부 간 태스크포스로 지속가능개발

목표 추진본부를 설치하였다. 한국의 경우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이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의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환경부 소속 자문위원회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SDGs의 국내적 이행은 환경부가 맡고 있고, 국제적 이행은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다. SDGs 이행을 위해서 국무조정실, 외교부, 환경부 등이 관련되어 있지만, SDGs 총괄부처와 범부처 차원의 이행체계 수립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산하 녹색성장위원회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5개년 계획을 작성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있는데 개발협력 관련 중기전략으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연간계획으로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외교부는 다자외교 차원에서 SDGs 관련 유엔차원의 논의와 OECD 차원의 정책일관성 논의에 참여한다.⁸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무상원조 주관기

그림 5-1.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상 SDGs 목표별 17년 예산(안) 비중

(단위: %)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80) 정부 차원의 정책일관성 관련 논의는 국제개발의제 인지도 제고 차원의 세미나(2014. 11. 14. 국무조정실 주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인지도 제고” 세미나) 개최 외에 정책반영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노력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관으로서 SDGs의 대외적 이행도 담당한다. 환경부는 산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한다.⁸¹⁾

국내차원의 SDGs 이행계획으로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이 최근 마련되어 환경-사회-경제분야 간 통합성 제고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북아 환경협력, 남북환경공동체에 대한 내용 외에 대외정책에 대한 연관성이나 초국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다. 한편 원조 측면에서는 2016~2020년에 대한 중기원조전략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는 비전과 기본방향에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에 기여'라는 거시적 목표를 위해 'SDGs 이행목표 달성 기여'를 중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개별 ODA사업과 SDGs 간의 연계, 개발경험에 따른 비교우위 부문과 국제사회 기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ODA 적극 추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제26-1호 의결안건으로 채택된 '20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에는 국제사회의 SDGs 이행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SDGs 목표 중 "우리나라의 비교우위분야인 산업화, 빈곤퇴치, 교육, 물과 위생, 보건위주로 집중 지원"⁸²⁾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5-1).

하지만 이는 자원 배분 측면에서 개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만큼의 자원을 배분한다는 측면이며,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각각의 목표 간 상호연관성이나 잠재적 시너지/상충효과에 대한 검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행수단에 대한 목표인 SDG7에 대한 자원배분도 2017년 예산의 1.1% 수준으로 극히 제한적이다. 앞서 PCSD 검토도구의 제도프레임워크 체크리스트에서는 SDGs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목표를 조화하고 국가차원의 우선순위 조정, 정책적 통합성이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프레임워크 차원에서도 정책 간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 특정 SDGs 달성을 위한 조치가 다른 SDGs 달성에

81) 외교부(2016).

82)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16), p. 7.

어떻게 기여 혹은 저해하는지를 파악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현재 우리나라의 2017년 종합시행계획상의 계획과 예산에 적용해보면, 현재내용에는 각각의 목표별 예산투입계획 외에 SDGs 목표 간 우선순위의 조정과 통합성, 잠재적 연관관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즉 정책일관성에 대해서는 원조정책 차원에서 추상적인 방향성 차원의 간략한 언급이 있는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찾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UN, OECD 논의에 참여하는 개별 부처가 관련 워크숍이나 회의 등에서 정책일관성 주제에 대한 논의를 제한적으로 추진하여 왔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PCD나 PCSD를 명시한 정치적 공약과 통합된 정책은 아직 부재하다. 범부처 간 분야별, SDGs 목표별, 이슈별 상충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나 모니터링, 분석/보고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다.

PCSD에 따른 정책별, SDGs 목표별, 그리고 다양한 자원과 주체별 연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범정부 차원에서 PCSD에 노력하겠다는 공약 수립과 함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등 관련법에 PCSD를 위한 범부처 파트너십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정책조정 및 실행 메커니즘 차원에서는 1차적으로는 동료평가수검대책반, G20 작업반(working group)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하여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정책과 SDGs 목표 간 일관성/비일관성 사례를 발굴하고 공동의 과제를 발굴한 후 부처 간 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산하 PCD분과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범정부차원의 상위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가능하다. 아울러 모니터링/분석/보고체계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와 국책연구기관 등의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여 PCSD 분석을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소위 등을 통해 범정부차원 PCSD 이행 및 메커니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⁸³⁾

이를 토대로 SDGs 주류화(mainstream)를 위해 효과적인 SDGs 이행체계를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목표를 주류화하기 위해 범부처 간 공동

83) 손혁상 외(2012), pp. 45~47 참고.

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조정 및 범정부차원의 정책일관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채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SDGs 이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분야의 다수의 관련부처와 기관이 참여해야 하는 특성상 정책일관성 확보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범부처 차원의 SDGs 이행위원회(가칭)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SDGs 이행위원회는 부처 간의 전략적 통합체계 수립과 국내외 이행분야의 정책일관성에 중점을 두고, 관련 부처로 부터 전문성을 갖춘 적정규모의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 확대

우리나라의 개도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995년 30%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 이후 50% 수준을 넘어서고, 2015년 현재 55.2%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빈국에 대한 교역비중은 1~1.5%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무관세조치를 확대하고 있음에도 큰 변화는 없는 실정이다.

최빈국에 대한 특혜제도는 한국의 경우 2000년에 처음 시행하였고, 2006년 6월 홍콩 각료회의의 합의를 계기로 최빈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품목을 확대한 바 있으나, 최빈국 교역비중은 1%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⁸⁴⁾ 2007년 말 HS 6단위 기준으로 관세품목의 75% 수준의 무관세 품목을 확대하여 2008년부터 시행한 바 있고, 홍콩 각료회의의 목표치인 97% 수준을 맞추기 위해 이후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최빈국 교역규모는 2000년 43억 달러에서 2015년 112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최빈국으로부터의 수입규모도 18억 달러에서 38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교역에서 최빈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한국의 최빈국 시장접근조치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최빈국 특

84) 권을 외(2012), pp. 168~170 참고.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기준과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도국 목록은 [부표 4]와 [부표 5]를 참고.

혜관세 적용품목을 살펴보면, 최빈국의 수출경쟁력이 높은 1차산품 혹은 가공 1차산품, 의류와 직물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으로 무 관세 적용품목은 HS 6단위로 4,866개이다(표 5-3 참고). 1차산품과 가공품목 (HS 01~24)은 각각 314개, 258개이고, 의류·직물(HS 50~67)은 842개이다.

표 5-1.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비중 변화추이(1995~2015년)

(단위: %)

	개도국	(최빈국)
1995	29.56	1.02
1996	33.17	0.92
1997	36.25	1.43
1998	35.45	1.40
1999	34.74	1.42
2000	36.19	1.31
2001	39.10	1.40
2002	39.35	1.16
2003	41.42	1.02
2004	42.96	1.25
2005	46.70	1.13
2006	49.35	1.26
2007	51.67	0.96
2008	55.33	1.02
2009	53.19	1.46
2010	54.53	1.38
2011	56.36	1.43
2012	56.99	1.18
2013	57.81	1.26
2014	57.18	1.39
2015	55.24	1.17

주: 개도국 분류는 총 148개국을 대상으로 최빈개도국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2. 한국의 대개도국 교역규모(1995~2015년)

(단위: 백만 달러)

연도	개도국			최빈국		
	수출	수입	교역량	수출	수입	교역량
1995	40,025	36,874	76,899	1,969	685	2,654
1996	49,093	43,798	92,891	1,941	634	2,575
1997	52,597	49,173	101,770	2,967	1,044	4,011
1998	48,384	31,587	79,971	2,609	539	3,148
1999	49,278	42,237	91,515	2,374	1,355	3,729
2000	57,555	62,853	120,408	2,519	1,825	4,344
2001	55,502	58,490	113,992	3,098	996	4,094
2002	62,522	61,263	123,785	2,654	987	3,641
2003	80,023	74,338	154,361	2,890	897	3,787
2004	108,063	97,408	205,471	4,922	1,044	5,966
2005	131,133	123,700	254,833	5,001	1,147	6,148
2006	154,731	158,555	313,286	6,105	1,881	7,986
2007	190,226	186,088	376,314	4,916	2,072	6,988
2008	227,589	246,704	474,293	6,964	1,806	8,770
2009	196,089	169,107	365,196	8,332	1,712	10,044
2010	259,855	226,304	486,159	9,863	2,463	12,326
2011	310,223	298,246	608,469	12,113	3,284	15,397
2012	309,997	298,319	608,316	9,195	3,355	12,550
2013	323,712	297,917	621,629	9,234	4,349	13,583
2014	325,294	302,643	627,937	9,386	5,830	15,216
2015	295,040	237,042	532,082	7,408	3,826	11,234

주: 개도국 분류는 총 148개국을 대상으로 최빈개도국 포함.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5-3.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품목 현황(2015년)

(단위: 품목 수)

구분	HS 분류	무관세 적용
1차산품	01~10	314
가공1차산품	11~24	258
가공광물	25~28	308
고무/화학	29~40	829
가죽제품	41~43	69
종이/목재	44~49	233
의류/직물	50~67	842
비금속광물	68~71	195
금속제품	72~83	563
일반기계	84	507
전기기계	85	264
운송기기	87	74
기타운송기기	86, 88-89	56
정밀기계	90-91	194
기타제조품	92-97	160
총합계	-	4,512

주: HS 6단위 기준.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3조. <별표 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 참고.

최빈국 특혜관세 혜택을 받은 국가들의 관세유형별 수입액은 다음 [표 5-4]와 같다. 48개 최빈국 중 26개 국가가 최빈국 특혜관세를 받았고, 그 외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기타 협정이 우선하는 경우 관세유형별 수입액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수입액 중 최빈국 특혜관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말라위(98.2%), 예멘(96.7%), 콩고민주공화국(95.6%), 마다가스카르(94.6%), 우간다(87.6%), 모리타니(82.8%), 에티오피아(54.9%) 순이다. 최빈국 특혜관세 활용총액의 규모가 큰 국가는 적도기니, 예멘, 잠비아, 콩고(DR), 방글라데시 등이다.

최빈국 특혜관세제도를 통한 시장접근 확대조치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실정 이지만, 최근 개도국과의 FTA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최빈국을 포함한 개도국에 대한 GSP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도국과의 FTA

표 5-4. 최빈국 관세유형별 수입액 현황(2015년)

(단위: 만 달러)

국가명	기준세율	WTO 협정세율	FTA 특혜관세	할당관세	최빈국 특혜관세	농림축산물 양허관세	기타	총합계
앙골라	5,256	143	-	8,669	21	-	166	14,254
방글라데시	4,547	224	-	653	27,912	12	179	33,526
부룬디	10	-	-	-	4	-	-	14
베냉	1,033	0	-	4	41	0	-	1,078
콩고(DR)	1,308	1	-	-	28,847	-	-	30,156
지부티	0	0	-	-	9	-	-	9
에티오피아	586	0	-	-	3,045	7	1,906	5,543
감비아	3	1	-	-	7	-	17	29
적도기니	32,767	-	-	28,333	44,515	-	-	105,615
캄보디아	5,956	449	10,386	-	4,843	2	17	21,653
라오스	1,483	92	710	-	556	0	1	2,842
마다가스카르	465	1	-	-	8,093	0	-	8,559
미얀마	4,735	1,208	40,859	-	3,387	0	379	50,568
모리타니	563	0	-	-	3,303	-	120	3,987
말라위	25	0	-	-	1,441	2	-	1,468
모잠비크	908	3	-	-	265	0	0	1,176
네팔	109	18	-	-	63	0	0	191
르완다	38	11	-	3	24	-	0	75
수단	1,446	124	-	-	27	0	185	1,782
세네갈	5,727	10	-	-	92	0	439	6,267
토고	4,205	11	-	19	18	0	-	4,253
동티모르	19	1	-	-	32	-	-	53
탄자니아	1,626	6	-	-	3,342	0	110	5,083
우간다	157	8	-	-	1,177	3	-	1,344
예멘	859	344	-	-	34,931	0	-	36,134
잠비아	5,018	0	-	-	29,666	-	-	34,684
합계	78,849	2,654	51,956	37,681	195,658	27	3,520	370,344

주: 만 달러 이하는 '0'으로 표시, 해당 금액이 없는 경우 '-' 표시.
 자료: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 데이터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가 호혜적인 관세인하조치라고 하면 GSP 도입은 시혜적인 특혜관세 조치이므로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함으로써 개발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성이 높기 때문이다. 주요 선진공여국의 경우 원조 확대와 함께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 확대조치를 통해 FDI를 기반으로 현지생산기반을 강화하고 현지 고용유발효과와 무역확대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조예산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에 대한 시장접근조치로서 GSP를 활용하여 현지의 고용 및 투자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개도국과의 동반성장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주요 협력수단으로서 GSP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개도국에 GSP를 부여할 경우 농업 및 섬유, 광물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왔지만, 한·ASEAN FTA와 같이 개도국과의 호혜적인 무역협정이 확대되고 있어서 수혜국 범위를 적정하게 조정한다면, GSP를 도입할 경우 경제적 부담요인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

다. 신기후체제에 대비한 중장기 국가정책 수립

우리나라는 지난 정부에서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면서 국제사회의 신기후체제 합의 이전에 이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제시하고 개도국의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ODA 확대 계획을 수립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였다. 당시 설정된 여러 가지 목표의 수립 근거와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있었으나, 기후변화를 전 지구적 지속가능한 개발의 도전과제이자 새로운 기회로 여긴 정책방향은 선도적이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제성장의 둔화와 이에 따른 정치사회적 갈등 등 대내 문제로 인한 대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전보다 약화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OECD 가입 20주년 세미나에서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 역시 녹색성장정책이 더 진화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한 국가가 SDGs의 17가지 세부목표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힘들다는 점에 동의한다. 각국이 처한 상황과 강점을 고려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 주력해야 할 목표와 국제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가 상이할 수 있으며, 다만 추진과정에서 두 방향성의 조화와 연계가 중요하다. 제2장에서 소개한 OECD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논의에 참여하여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수정하고 강화하는 일이 필요하다.

목표(SDGs)의 선택과 집중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는 국내외적으로 동시에 주력 가능한 이슈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 배출 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노력은 지속적으로 진전을 보여야 한다. 감축부담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는 감축목표의 약 1/3은 국제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기업들은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해외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민간부문, 특히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과 다양한 제안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 지원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해외 시장진출을 위한 세미나, 초기 진출과 관련된 비용 등의 지원도 중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의 기술개발을 장려하여 해외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안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국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시급한 때에 이를 개발협력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일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국내적인 감축과 개도국 사업을 연계하는 것을 ODA 백서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탄소가격 기반 경제 시스템에 대비하여 개도국의 역량지원 및 파일럿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행해왔다. 국제 탄소 시장메커니즘은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기대감이 높다. 무엇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은 탄소가격수단을 자체적으로 도입하면서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확대를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해외 감축사업으로부터 발생한 크레딧을 국내 감축목표에 인정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ODA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말 그대로 개발협력 재원의 활용 차원이며, 저탄소 패러다임 속에서 개도국의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개발협력의 기본방향에 담겨야 할 것이다. ODA를 사용하여 감축 크레딧을 확보하는 것은 특정 개발협력 사업을 통해 일거양득을 취한 한 사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 주요국 및 개발협력기관의 전략적 변화를 이니셔티브로 지나쳐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는 개발협력 의사결정 구조 전반에 반영되어야 하며, 모든 개발협력 활동이 개도국의 저탄소 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경로로 이행을 지원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진출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국문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 3조 <별표2> 특혜대상 물품 및 세율.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16. 「'17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제 2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안건(제 26-1호).
- 권 울, 김영혜, 박수경, 이태주, 이현주, 정유아, 정지선, 정지원, 정혜선, 조미진, 최성호, 한재광. 2009. 『OECD/DAC 주요 규범과 ODA 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서 09-11.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권 울, 이상미, 송지혜, 유애라. 2015. 『Post-2015 개발어젠다의 주요 특징과 이행과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오늘의 세계경제. Vol.15. No. 27.
- 권 울, 정지원, 정지선, 이주영. 2012. 『최빈개도국 개발과제와 한국의 ODA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2-14.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지현. 2016. 「SDGs 지표 체계와 모니터링: 불평등성 완화 논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2016 No. 2. 한국국제협력단.
- 김한성, 이홍식, 강문성, 송백훈. 2015.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 뉴시스. 2016. 「韓, 세계 41번째 개도국 특혜관세 '공여국' 되나」. 신문 기사(2016. 6. 6).
- 문진영, 정지원, 이성희, 송지혜. 2016.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연구보고서(발간예정).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산업자원통상부, 미래창조과학부. 2016. 「정부, 향후 5년 내 청정에너지 연구개발 공공투자 두 배로 늘린다」. 보도자료(2016. 6. 3).
- 손혁상, 김소위, 서진희, 이윤미. 2012. 「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PCD)과 대(對)개도국 무역정책: OECD DAC와 주요 선진공여국 사례를 중심으로」. 『동서연구』,

- 제 24권 3호, pp.137~170.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 외교부. 2016. 「한국정부의 SDGs 국내외 이행전략」. 국제개발협력학회/ 한국개발정책학회 세미나(2016. 5. 12).
- 조미진, 김영귀, 박지현, 강준하. 2011. 『한국의 일반특혜관세제도 도입 추진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11.
- 한국관세무역연구원, 한국무역통계진흥원(2016). 「2015년 수출통계 1월-12월(월간) 최종확정치」.
- 환경부. 2015. 「2030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으로 확정」. 환경부 보도자료(2015. 6. 29).

[영문자료]

- Adam, Christopher S. and Stephen A. O'Connell. 2004. "Aid Versus Trade Revisited: Donor and Recipient Policies in the Presence of Learning-by-Doing." *The Economic Journal*, Vol. 114, No. 492, pp. 150-173.
- Aiello, Francesco, Paola Cardamone, and Maria Rosaria Agostino. 2010. "Evaluating the Impact of Nonreciprocal Trade Preferences using Gravity Models." *Applied Economics*, Vol. 42, No. 29, pp. 3745- 3760.
- Anderson, J. E. 1979.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the gravity equat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9, No. 1, pp. 106-116.
- Anderson, J. E. and Eric van Wincoop. 2003. "Gravity with Gravitas: A Solution to the Border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pp. 170-192.
- Arellano, M. & O. Bover. 1995. "Another look at the instrumental variable estimation of error-components mode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8 No. 1, pp. 29-51.
- Australian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2016), "Review of the Australian System of Tariff Preference(ASTP)."
- Bergstrand, J. H. 1989. "The generalized gravity equation, monopolistic competition, and the factor-proportions theory in international trad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pp. 143-153.
- Benn, J., C. Sangare, T. Hos, and G.M. Semeraro. 2016. "Amounts

- Mobilised from the Private Sector by Official Development Finance Interventions.”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Working Paper 26.
- Brown, J., M. Stadelmann, D. Wang, L. Boni, R. Jachnik, and T. Kato. 2015. *Estimating Mobilized Private Finance for Adaptation: Exploring Data and Methodology*. Climate Policy Initiative Report in collaboration with the OECD.
- Buchner, B. 2015. *Climate Finance in 2013-14 and the USD 100 Billion Goal*. Report by the OECD in collaboration with Climate Policy Initiative.
- Burnside, Craig and David Dollar. 2000. “Aid, Policies, and Growth.”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0, No. 4, pp. 847-868.
- Blundell, R. & S. Bond. 2000. “GMM estimation with persistent panel data: an application to production functions.” *Econometric reviews*, 19(3), 321-340.
- Cali, Massimiliano and Dirk Willem Te Velde. 2011. “Does Aid for Trade really Improve Trade Performance?” *World Development*, Vol. 39, No. 5, pp. 725-740.
- Carbon Pricing Panel. 2016. “Setting a Transformational Vision for 2020 and beyond.” Vision Statement by the Carbon Pricing Panel.
- Corfee-Morlot, J. and N. C. Morgado. 2016. “The Paris Agreement and What it Means for Development.” OECD DACnews January 2016.
- Cheng, I. H. & H. J. Wall. 2005. “Controlling for heterogeneity in gravity models of trade and integration.”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 Review*, (Jan), pp. 49-63.
- Dalgaard, C. J., H. Hansen. & F. Tarp. 2004. “On the empirics of foreign aid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4. No. 496, 191-216.
- Davies, E. & L. Nilsson. 2013. “A Comparative Analysis of EU and US Trade Preferences for the LDCs and the AGOA Beneficiaries.” *EU Commission, Trade-Chief Economist Note*, (1).
- Di Giovanni, Julian. 2005. “What Drives Capital Flows? the Case of Cross-Border M&A Activity and Financial Deepening.” *Journal of*

- International Economics*, Vol. 65, No. 1, pp. 127-149.
- Dohlman, Ebba. 2014. "From PCD to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new framework for adapting to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CD Focal Points Meeting Presentation, 17-18 December.
- European Commission. 2015.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2015 EU Report."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Brussels, 2. 3. 2015. SWD(2015) 159 final.
- Espagne, E. 2016. "Climate Finance at COP21 and After: Lessons Learnt." CEPII Policy Brief, No. 9.
- Evenett, S. 2009. *The European Union's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 An Assessment of the Empirical Evidence*. Centre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London.
- Ferro, Esteban, Alberto PORTUGAL-PÉREZ, and John S. Wilson. 2011. "Aid for Trade and Export Performance: The Case of Aid in Services." *Where to Spend the Next Million?*
- Gamberoni, Elisa. 2007. "Do unilateral trade preferences help export diversification?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of European unilateral trade preferences on the extensive and intensive margin of trade." *HEI Working Paper 2007*, No. 17.
- Government of Japan. 2015. *Submission of Japan'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G20 Climate Finance Study Group. 2016. *G20 Outlook on Mainstreaming Climate Change Considerations into Development Assistance and Climate Finance Programs*.
- Gradeva, Katerina and Inmaculada Martínez-Zarzoso. 2015. "Are Trade Preferences More Effective than Aid in Supporting Exports? Evidence from the 'Everything but Arms' Preference Scheme." *The World Economy*.
- Hallegatte, S., M. Bangalore, L. Bonzanigo, M. Fay, T. Kane, U. Narloch, J. Rozenberg, D. Treguer, and A. Vogt-Schilb. 2016. "Shock Waves:

- Manag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Poverty.” Climate Change and Development Series. Washington, DC: World Bank.
- Heckman, James J. 1979. “Sample Selection Bias as a Specification Error.” *Econometrica: Journal of the Econometric Society*, pp. 153-161.
- Helble, Matthias, Catherine L. Mann, and John S. Wilson. 2012. “Aid-for-Trade Facilitation.”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8, No. 2, pp. 357-376.
- Helpman, E., M. Melitz. & Y. Rubinstein. 2007. *Estimating trade flows: Trading partners and trading volumes* (No. w12927).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Herz, Bernhard, and Marco Wagner. 2010. "Multilateralism versus Regionalism!?" *University of Bayreuth Discussion Paper 1*.
- Kollmuss, A. and J. Füssler. 2015. “Overview of Carbon Offset Program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Partnership for Market Readiness (PMR) Technical Note, 6. World Bank.
- Mátyás, L. 1997. “Proper econometric specification of the gravity model.” *The world economy*, 20(3), 363-368.
- Nicita, A. and V. Rollo. 2013. *Tariff Preferences As A Determinant For Exports From Sub-Saharan Africa* (No. 60).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 Nowak-Lehmann, Felicitas, Inmaculada Martínez-Zarzoso, Dierk Herzer, Stephan Klasen, and Adriana Cardozo. 2013. “Does Foreign Aid Promote Recipient Exports to Donor Countries?” *Review of World Economics*, Vol. 149, No. 3, pp. 505-535.
- OECD. 2002.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1*. Paris.: OECD.
- _____. 2005. *The Development Dimension: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romoting Institutional Good Practice. OECD: Paris.
- _____. 2008.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 Lessons Learned.” Policy Brief. December.2.
- _____. 2011.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Recommendations for Policy Coherence*. Paris: OECD.

- _____. 2015. *Better Policies for Development 2015: Policy Coherence and Green Growth*. Paris: OECD Publishing.
- _____. 2016a. *Better Polici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6: A New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Paris: OECD.
- _____. 2016b. “The Framework for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G/CD(2016)1, 04-May-2016.
- Pettersson, Jan and Lars Johansson. 2013. “Aid, Aid for Trade, and Bilateral Trade: An Empirical Study.”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Economic Development*, Vol. 22, No. 6, pp. 866-894.
- Picciotto, R. 2005. “The evaluation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Evaluation*, 11(3), 311-330.
- Rajan, Raghuram G. and Arvind Subramanian. 2011. “Aid, Dutch Disease, and manufacturing growth.”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Vol. 94, pp. 106-118.
- Ray, E. J. 1987. “The impact of special interests on preferential tariff concessions by the United Stat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87-193.
- Roome, J. A. 2016. *Carbon Fina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015 Annual Report*. Washington, D.C.: World Bank Group.
- Silva, J. S. & S. Tenreyro. 2009. *Trading partners and trading volumes: Implementing the helpman-melitz-rubinstein model empirically*. Centre for Economic Performanc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 Sindico, F. 2016. “Paris, Climate Chan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limate Law*, 6: 130-141.
- Suwa-Eisenmann, Akiko and Thierry Verdier. 2006. “The Coherence of Trade Flows and Trade Policies with Aid and Investment Flows.”
- Tinbergen, Jan. 1962. “Shaping the World Economy; Suggestions for an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Books (Jan Tinbergen)*.
-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2016. “Report of the Inter-Agency and Expert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 Indicators.” Statistical Commission. Forty-seventy session. 8-11 March 2016.
- United Nations. 1992.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for Climate Change*.
- United Nations. 2015a.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RES/70/1.
- _____. 2015b. “Addis Ababa Action Agenda of the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27 July 2015.
- _____. 2016.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Report 2016*. New York: United Nations.
- UNCTAD. 2000. *GSP Handbook on the Scheme of Australia*.
- _____. 2011. *GSP Handbook on the Scheme of Japan 2011*.
- _____. 2013. *GSP Handbook on the Scheme of Canada*.
- _____. 2015a. *List of Beneficiary Countries and Territories*.
- _____. 2015c. *UNCTAD Key Statistics and Trends in Trade Policy 2015*.
- _____. 2016a. *Trading into Sustainable Development: Trade, Market Acces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Developing Countries in International Trade Studies.
- _____. 2016b. *GSP Handbook on the Scheme of the European Union*.
- _____. 2016c. *GSP-Handbook on the Schem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UNFCCC Secretariat. 2015. Adoption of the Agreement (Decision 1/CP.21). FCCC/CP/2015/10/Add. 1).
- Verdeja, L. 2006. “EU’s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revisited.” *Unpublished, University of Nottingham, School of Economics*.
- Walker, D. and J. Swartz. 2016. “Carbon Pricing: The Paris Agreement’s Key Ingredient.” Joint Paper by the Environmental Defense Fund and the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
- WTO. 2015. “Market Access for Products and Services of Export Interest to Least Developed Countries.”

Zahar, A. 2016. "The Paris Agreement and the Gradual Development of a Law on Climate Finance." *Climate Law*, 6: 75-90.

[온라인 자료]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http://www.cgdev.org/publication/ft/commitment-development-index-2015> (검색일: 2016. 10. 5).

Five Voluntary Principles to Mainstream Climate Action within Financial Institutions. <http://www.worldbank.org/content/dam/Worldbank/document/Climate/5Principles.pdf> (검색일: 2016. 9. 24).

IMF (2016).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검색일: 2016. 8. 1).

OECD CRS 데이터베이스 (검색일: 2016. 11. 1).

OECD. Stat. <http://stats.oecd.org> (검색일: 2016. 7. 21).

Open letter from CEOs to world leaders urging climate action. 2015. <https://www.weforum.org/agenda/2015/11/open-letter-from-ceos-to-world-leaders-urging-climate-action/> (검색일: 2016. 8. 5).

Renewables - Made in Germany. <http://www.renewables-made-in-germany.com/en/> (검색일: 2016. 10. 4).

UN Statistics SDG Indicators Metadata. SDG 13. indicator 13.1.1. metadata repository. <http://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3-01-02.pdf>(검색일: 2016. 8. 17). <http://unstats.un.org/sdgs/metadata/files/Metadata-13-01-01.pdf>(검색일: 2016. 8. 17). SDG 17. indicator metadata repository. <http://unstats.un.org/sdgs/files/metadata-compilation/Metadata-Goal-17.pdf> (검색일: 2016. 10. 29).

SDG Indicators Global Database. <http://unstats.un.org/sdgs/indicators/database/?indicator=17.11.1> (검색일: 2016. 8. 17).

UN Sustainable Development Knowledge Platform,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sdgs> (검색일: 2016. 8. 17).

UNCTAD COMTRADE Database. <http://comtrade.un.org> (검색일: 2016. 6. 27).

지속가능발전포털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페이지. http://ncsd.go.kr/app/sub02/20_tab2.do (검색일: 2016. 8. 15).

<http://laws-lois.justice.gc.ca/eng/> (검색일: 2016. 7. 26).

<http://unctad.org/en/Pages/DITC/GSP/GSP-List-of-Beneficiary-Countries.aspx> (데이터 접근일: 2016. 5. 15).

<http://unctad.org/en/Pages/DITC/GSP/Handbooks-on-the-GSP-schemes.aspx> (Handbooks 데이터 접근일: 2016. 5. 30).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6/02/weodata/index.aspx>

[관련자료 목록]

IMF. 2014. *Macroeconomic Developments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2014 report*.

_____. 2015. *Macroeconomic Developments and Prospects in Low-income Developing Countries: 2015*.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2015. *Climate-related development finance in 2013-14*.

Persson, Maria and Fredrik Wilhelmsson. 2016. "EU Trade Preferences and Export Diversification." *The World Economy*, Vol. 39, No. 1, pp. 16-53.

UNCTAD. 2015b.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Report 2015*.



부 록



부표 1. 정책일관성 관련 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세부목표 분류	세부목표 내용
Goal 17.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17.5. 개발재원	17.1. 국내재원 동원
	17.2. 선진국 ODA 공약 이행(ODA/GNI 개도국 0.7%, 최빈국 0.15~0.20%)
	17.3. 개도국을 위한 추가 재원동원
	17.4. 개도국의 장기적 채무 지속가능성 지원
	17.5. 최빈국을 위한 투자활성화 제도 도입 및 이행
17.6. 기술	17.6. 과학기술을 위한 개도국-선진국 협력, 남남·삼각협력 강화, 접근성 개선 및 지식공유
	17.7.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 이전 및 보급 활성화 [지표] 환경상품에 대한 평균관세율
	17.8. 2017년까지 최빈국을 위한 기술뱅크, 과학기술 역량개발 메커니즘의 운용 활성화, ICT 활용 개선
17.9. 역량개발	17.9. 개도국-선진국 협력, 남남·삼각협력을 통해 개도국의 SDGs 이행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역량개발 지원
17.10.~17.12. 무역	17.10. WTO 체제하 보편적이고, 규범에 근거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이고, 공평한 다자무역시스템 활성화 [지표 17.10.1] 전세계 가중평균 관세율
	17.11. 2020년까지 최빈국의 국제무역 참여비중 배증 등 개도국 무역확대 [지표 17.11.1] 최빈국/개도국/소도서국 국제무역 대비 비중
	17.12. WTO 결의안에 따라 모든 최빈국의 무관세, 무쿼터 시장접근의 시의적절한 이행(최빈국 수입품에 대한 시혜적 원산지 규정 적용의 투명화/간소화 포함) [지표 17.12.1] 개도국 및 최빈국 주요분야별 평균관세
17.13.~17.15. 정책일관성	17.13. 정책일관성 및 조정을 통한 국제거시경제 안정성 강화
	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일관성 제고
	17.15. 빈곤퇴치/지속가능개발 관련 정책수립 및 이행을 위한 개별국가별 자율권 존중
17.16.~17.17. 파트너십	17.16. 다양한 이해관계자별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17.17. 공공, 민간, 시민사회 파트너십의 활성화
17.16.~17.17. 데이터, 모니터링, 책무성	17.18. 2020년까지 최빈국, 소도서국을 포함한 개도국의 개발관련 데이터 역량강화
	17.19. 2030년까지 SDGs 이행 촉진을 위한 기존 이니셔티브 강화 및 개도국의 통계 역량개발 지원

부표 2. GSP 주요 수혜국 및 공여국 리스트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아프카니스탄	LDC	X	X	X	X		X	X
알바니아		X					X	X
알제리		X	X				X	X
미국령 사모아		X	X				X	
앙골라	LDC	X	X	X	X		X	X
앙골라		X	X				X	X
앤티가바부다		X	X				X	
앤티리스(네덜란드)		X	X					
아르헨티나		X	X				X	
아르메니아			X	X		X	X	X
아루바								
아제르바이잔			X				X	X
바하마		X	X					
바레인		X	X					
방글라데시	LDC	X	X	X	X	X	X	X
바베이도스		X	X					
벨로루시							X	
벨리즈		X	X				X	X
베냉	LDC	X	X	X	X	X	X	X
버뮤다		X	X					
부탄	LDC	X	X	X	X	X	X	X
볼리비아		X	X	X		X	X	X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X	X				X	X
보츠와나		X	X				X	X
부베 섬								
브라질		X	X				X	X
영국령 남극 지역								
영국령 인도양 식민지		X	X					X
브루나이 다루살람		X	X					
부르키나 파소	LDC	X	X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부룬디	LDC	X	X	X	X		X	X
감보디아	LDC	X	X	X	X		X	X
카메룬		X	X				X	X
카나리아 섬							X	
카보베르데		X	X	X		X	X	X
케이맨 섬		X	X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LDC	X	X	X	X		X	X
세우타-멜릴라							X	
차드	LDC	X	X	X	X		X	X
칠레		X	X				X	
중국		X	X	X			X	
홍콩		X	X					
마카오		X	X					
대만		X						
크리스마스 섬			X					X
코코스 섬			X					
콜롬비아		X	X	X			X	
코모로	LDC	X	X	X	X		X	X
콩고		X	X	X		X	X	X
쿡제도		X	X	X		X	X	X
코스타리카		X	X	X		X	X	
코트디부아르	LDC	X	X				X	X
크로아티아		X	X				X	
쿠바		X	X				X	
키프로스		X						
북한		X						
콩고민주공화국	LDC	X	X	X	X		X	X
지부티	LDC	X	X	X	X		X	X
도미니카		X	X				X	X
도미니카공화국		X	X				X	X
에콰도르		X	X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이집트		X	X				X	X
엘살바도르		X	X	X		X	X	
적도기니	LDC	X	X	X	X		X	X
에리트레아	LDC	X	X	X	X		X	X
에티오피아	LDC	X	X	X	X		X	X
폴란드 섬(말비나스)		X	X				X	X
피지		X	X				X	X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지역			X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X	X					
가봉		X	X				X	X
감비아	LDC	X	X	X	X		X	X
조지아			X	X		X	X	X
가나		X	X				X	X
지브롤더		X	X				X	X
그린란드								
그레나다		X	X				X	X
괌		X	X					
과테말라		X	X	X		X	X	
기니	LDC	X	X	X	X		X	X
기니비사우	LDC	X	X	X	X		X	X
가이아나		X	X				X	X
아이티	LDC	X	X	X	X		X	X
허드 맥도널드 제도								X
온두라스		X	X	X		X	X	
인도		X	X	X			X	X
인도네시아		X	X	X			X	X
이란		X	X				X	
이라크		X	X	X		X	X	X
이스라엘		X	X					
자메이카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요르단	X	X				X	X
카자흐스탄		X				X	X
케냐	X	X				X	X
키리바시	LDC	X	X	X	X	X	X
코소보							X
쿠웨이트	X	X					
키르기스		X	X		X	X	X
라오스	LDC	X	X	X	X	X	
레바논		X	X			X	X
레소토	LDC	X	X	X	X	X	X
라이베리아	LDC	X	X	X	X	X	X
리비아인민아랍국		X				X	
마다가스카르	LDC	X	X	X	X	X	X
말라위	LDC	X	X	X	X	X	X
말레이시아		X	X			X	
몰디브		X	X			X	
말리	LDC	X	X	X	X	X	X
마셜제도		X	X	X		X	
모리타니	LDC	X	X	X	X	X	X
모리셔스		X	X			X	X
마요트 섬							
멕시코		X	X			X	
미크로네시아		X	X	X		X	
미드웨이 제도		X					
몰도바			X			X	X
몽골		X	X	X		X	X
몬테네그로						X	X
몬트세랫		X	X			X	X
모로코		X	X			X	
모잠비크	LDC	X	X	X	X	X	X
미얀마	LDC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나미비아		X	X				X	X
나우루		X	X	X		X		
네팔	LDC	X	X	X	X		X	X
뉴칼레도니아		X	X					
니카라과		X	X	X		X	X	
니제르	LDC	X	X	X	X		X	X
나이지리아		X	X	X		X	X	X
니우에		X	X	X		X	X	X
노퍽 섬			X					X
북마리아나제도		X	X					
팔레스타인 점령지		X					X	X
오만		X	X					
태평양제도								
파키스탄		X	X	X		X	X	X
팔라우		X	X				X	
파나마		X	X	X		X	X	
파푸아뉴기니		X	X				X	X
파라과이		X	X	X		X	X	X
페루		X	X	X		X	X	
필리핀		X	X	X		X	X	X
핏케언 섬		X	X					X
카타르		X	X					
대한민국		X	X					
르완다	LDC	X	X	X	X		X	X
세인트헬레나-부속제도		X	X				X	X
세인트키츠네비스		X	X				X	X
세인트루시아		X					X	X
생피에르 미클롱		X	X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X	X				X	X
사모아		X	X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상투메 프린시페	LDC	X		X	X		X	X
사우디아라비아		X	X					
세네갈	LDC	X		X	X		X	X
세르비아			X				X	X
세이셸		X	X				X	X
시에라리온	LDC	X	X	X	X		X	X
싱가포르		X	X					
솔로몬 섬	LDC	X	X	X	X		X	X
소말리아	LDC	X	X	X	X		X	X
남아프리카공화국			X				X	X
남수단	LDC		X	X	X			X
샌드위치제도								
스리랑카		X	X	X		X	X	X
수단	LDC	X	X	X	X		X	
수리남		X	X				X	X
스와질란드		X	X				X	X
시리아		X	X	X		X	X	
타지키스탄			X	X		X	X	
탄자니아	LDC	X	X	X	X		X	X
타이		X	X	X			X	X
마케도니아		X	X				X	X
동티모르	LDC	X	X	X	X		X	X
토고	LDC	X	X	X	X		X	X
토켈라우		X	X				X	X
통가		X	X	X		X	X	X
트리니다드토바고		X	X					
튀니지		X	X				X	X
터키		X	X				X	X
투르크메니스탄			X	X		X	X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X	X				X	X
투발루	LDC	X	X	X	X		X	X

부표 2. 계속

GSP 수혜국		GSP 공여국						
		호주	캐나다	EU			일본	미국
				GSP	GSP -LDCs (EBA)	GSP+		
우간다	LDC	X	X	X	X		X	X
우크라이나			X	X			X	X
아랍에미리트		X	X					
미국령 군소 제도								
우루과이		X	X				X	X
우즈베키스탄			X	X		X	X	X
바누아투	LDC	X	X	X	X		X	X
베네수엘라		X	X				X	X
베트남		X	X	X			X	
버진아일랜드(영국령)		X	X				X	X
버진아일랜드(미국령)		X	X					
월리스 푸투나 제도		X						X
서사하라								X
요르단강서안-가자지구								X
예멘	LDC	X	X	X	X		X	X
잠비아	LDC	X	X	X	X		X	X
짐바브웨		X	X				X	X

부표 3. OECD 소득그룹별 국가구분

DAC List of ODA Recipients
Effective for reporting on 2014, 2015 and 2016 flows

Least Developed Countries	Other Low Income Countries (per capita GNI ≤ \$1 045 in 2013)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1 046–\$4 125 in 2013)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and Territories (per capita GNI \$4 126–\$12 745 in 2013)
Afghanistan Angola	Democratic People's	Armenia Bolivia Cabo Verde	Albania
Bangladesh Benin	Republic of Korea	Cameroon	Algeria
Bhutan	Kenya Tajikistan	Congo	Antigua and Barbuda ²
Burkina Faso Burundi	Zimbabwe	Côte d'Ivoire	Argentina Azerbaijan
Cambodia		Egypt	Belarus Belize
Central African Republic		El Salvador Georgia Ghana	Bosnia and Herzegovina
Chad		Guatemala	Botswana Brazil Chile ²
Comoros		Guyana	China (People's Republic of)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Honduras India Indonesia	Colombia
Djibouti		Kosovo	Cook Islands Costa Rica
Equatorial Guinea ¹		Kyrgyzstan	Cuba Dominica
Eritrea Ethiopia Gambia		Micronesia Moldova	Dominican Republic
Guinea		Mongolia Morocco	Ecuador
Guinea-Bissau		Nicaragua Nigeria Pakistan	Fiji
Haiti		Papua New Guinea	Former 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Kiribati		Paraguay Philippines	Gabon Grenada Iran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Samoa	Iraq Jamaica Jordan
Lesotho Liberia		Sri Lanka	Kazakhstan Lebanon Libya
Madagascar Malawi		Swaziland	Malaysia Maldives
Mali Mauritania		Syrian Arab Republic	Marshall Islands Mauritius
Mozambique Myanmar		Tokelau Ukraine Uzbekistan	Mexico Montenegro
Nepal		Viet Nam	Montserrat Namibia
Niger		West Bank and Gaza Strip	Nauru Niue Palau Panama
Rwanda			Peru
Sao Tome and Principe			Saint Helena
Senegal Sierra Leone			Saint Lucia
Solomon Islands Somalia			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South Sudan Sudan			Serbia Seychelles South Africa
Tanzania Timor-Leste			Suriname Thailand
Togo			Tonga Tunisia Turkey
Tuvalu Uganda Vanuatu ¹			Turkmenistan
Yemen			Uruguay ²
Zambia			Venezuela
			Wallis and Futuna

(1)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solution 68/L.20 adopted on 4 December 2013 decided that Equatorial Guinea will graduate from the least developed country category three and a half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and that Vanuatu will graduate four years after the adoption of the resolution.

(2) Antigua and Barbuda, Chile and Uruguay exceeded the high income country threshold in 2012 and 2013. In accordance with the DAC rules for revision of this List, all three will graduate from the List in 2017 if they remain high income countries until 2016.

부표 4. 최빈국 특혜관세 적용 기준

1. 최빈개도국의 수출품 중 대한민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른 특혜 품목이어야 함.
2. 대한민국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에 따른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운송되는 각 물품은 각각 원산지가 증명되어야 함.
3.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함.
 - 1) 지리적 또는 운송상의 이유로 비원산지를 단순 경유하는 경우 또는 비원산지의 보세구역에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 2) 박람회·전시회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비원산지로 수출되었다가 행사종료 후 대한민국으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5조, 별지서식 참고

부표 5.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도국

지역	국가
아시아 (13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부탄, 키리바시, 라오스, 네팔, 투발루,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예멘, 동티모르
아프리카 (34개국)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지부티, 적도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수단, 탄자니아, 토고,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잠비아, 세네갈, 남수단
아메리카 (1개국)	아이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제2조, 별표 1.

A Study on Korea's Cooperation Strategy alo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cusing on the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y Coherence

KWON Yul, JUNG Jione, HUR Yoon Sun, JEONG Jisun, and LEE Ju Young

In September 2015, the United Nation's member states agreed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as part of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on its 70th session. Building on the achievement of the Millenium Development Goals and seeking to address emerging challenges, the SDGs are a set of comprehensive and ambitious development goals for the next 15 years and a universal call to end poverty, protect the planet and ensure all people enjoy peace and prosperity. The 17 SDGs and 169 targets are integrated, inter-connected and balance the three dimensions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e implementation of 17 integrated goals and 169 targets requires whole-of-government approaches, enhanced coordination among divergent actors. The SDG target 17.14 specifically calls on all countries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CSD)" as an integral part of the means of implementation. In

the context of SDGs, it is emphasized to capitalize on synergies between goals, targets and different sectoral policies. The PCSD is highlighted as a policy tool to manage inconsistencies among policy areas such as aid, trade and climate change and subsequently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enable the environmen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der the circumstances, it is important for donor countries to understand the potential impact of “beyond-aid” schemes in trade and climate change, in particular. While it is widely agreed that trade is crucial for economic grow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 large number of low income countries,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in particular, remain marginalized in global trade. Tariff and non-tariff barriers to developing countries create negative spill-over effects on the livelihood of poor farmers in developing countries. Another policy area of particular importance is climate change. The Paris Agreement at COP21 marks a decisive turning point in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 the new climate regime, it is imperative for donor countries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 their climate resilience and adaptive capacity while attempting to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South Korea, as an emerging donor, has made a continuous effort to enhance its aid effectiveness by improving the linkage between technical and financial cooperation and engaging the private sector in development in priority countries. Nevertheless, there has been a lack of policy coherence in terms of aid,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ies, which can have a significant potential

synergy and sometimes negative effects on the developing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study attempts to explore possible ways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policy coherence in the area of aid, trade and climate chang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udy begins by briefly introducing the SDGs and moves on to analyze the goals, targets and indicators that are specifically related to trade and market access as well as climate change. This is followed by an illustration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policy coherence in the context of MDGs and then the SDGs. The Commitment to Development Index by the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is depicted as a tool to measure and compare the performance of 27 rich countries in policy coherence in the areas of aid, trade, finance, migration, environment, security and technology. The transition from PCD to PCSD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s discussed, followed by an overview of the PCSD analytical framework proposed by the OECD.

The next chapter attempts to reveal the joint effect of aid and Generalized Scheme of Preferences (GSP) on the export from recipient countries. The results of a gravity model show that the joint effects of aid and GSP on exports vary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of the recipient country and the industry. Especially, it was found that aid and GSP have positive joint effects on the agricultural export of low income countries. The result is consistent with former literatures indicating that GSP does not work alone but has a positive effect on trade when provided together with aid. This paper conducted a scenario analysis for Korea's introduction

of the GSP. The results of a partial equilibrium analysis indicate that the introduction of Korea's GSP will increase imports in agriculture, textiles and mineral products. However, damage to the domestic industry would be limited since the volume of increased import from developing countries is relatively small. There are also provision tools such as rule of origins and import restriction that are widely adopted by other donor countries to protect their domestic industries.

The following chapter analyzes the key issues in the Paris Agreement adopted in the same year as the SDGs and identifies five priority areas to pay particular attention in order to achieve the SDGs, as follows: first, increase the volume of climate-related aid; second, mobilize private resources with public resources and public sector intervention using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third, mainstream climate change into decision-making processes; fourth, promote climate-related technology transfer; fifth, prepare for international carbon pricing scheme and way of cooperate with developing countries.

Finally, the paper concludes by suggesting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Korean government to enhanc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aid,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y. Firstly, it is argued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enhance policy coherence by aligning its national strategies with the SDGs and applying integrated policy approaches. Since the adoption of the SDGs, an increasing number of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nationalize” the 2030 agenda and acclimate it to their national context and priorities. In order to promote

policy coherenc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he government needs to set up an institutional setting and co-ordination mechanism for SDG implementation. However in South Korea, there is an absence of an oversight unit for SDG implementation, which is crucial to ensure a whole-of-government approach and coordinated planning. The recently adopted Mid-term ODA Policy for 2016-2020 briefly mentions the importance of policy coherence in the SDG context without providing a detailed implementation plan. There should be clearly stated high-level commitment to PCSD supported by time-bound action plans with shared objectives across the whole government. There must also be clear mandates for relevant ministries and agencies to balance and coordinate divergent and sometimes conflicting policy interests. Most of all, the policy coherence across policy areas such as aid, trade and climate change must be integrated into the national legal framework, namely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ct and the Framework Act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ensure the compliance of the relevant actors. To implement the PCSD agenda, the inter-linkages and potential trade-offs between various policies, goals and targets should be analyzed and identified through whole-of government approaches. Based on the analysis, the common area for action must be determined and implemented by an inter-ministerial committee.

In order to track progress on PCSD, a set of indicators aligned with Korea's national context must be developed by modifying standard PCSD indicators by the OECD into a form that can incorporate the expertise of government think tanks and the civil

society. Using the existing mechanism, the Sub-Committee for Evaluation under the Committee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could play a key role in developing and coordinating the PCSD monitoring and reporting 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promote an integrated approach to mainstream SDGs in various policy areas, the government could consider setting up an inter-ministerial committe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SDGs.

Secondly, the study argues that the introduction of GSP should be considered to enhance development effectiveness. As was revealed in the empirical analysis, aid and GSP have a positive joint effect on the exports from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GSP could be considered as another supporting mechanism along with aid to expand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ing countries. As we reviewed in this study, other donors have been diversifying their support tools for developing countries. Along with aid, FDI and GSP strengthen the local production and export facil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Given the constraints of the aid budget in Korea, GSP could be effective for the expansion of trade and investment with developing countries by improving the local production facilities. Such measures would help to enhance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nd ultimatel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development effectiveness and mutual growth with developing countries. The expected damage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GSP to the Korean domestic industry will be limited according to our scenario analysis. If any, provision tools such as rule of origins and import restriction could be established together with the GSP to protect domestic industries.

Also, the recent increase of reciprocal trade agreements with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e Korea-ASEAN FTA, is expected to curb any damages from the GSP to domestic industries.

Thirdly, the linkage between climate change policies and aid policies must be enhanced. In the context of a paradigm shift toward low-carbon societies, climate change must be mainstreamed throughout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development policy and at the implementation level. Finally, all development activities need to help developing countries to prepare a low-emission and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path while meeting the needs and priorities of domestic actors.

KIEP 연구보고서 발간자료 목록

- 2016년
 - 16-01 뉴노멀 시대 중소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과 대만을 중심으로 / 이승신 · 이현태 · 나수엽 · 조고운 · 오윤미 · 이준구
 - 16-02 수출기업의 금융구조와 수출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 김정훈 · 최혜린 · 강은정
 - 16-03 고령화시대 주요국 금융시장 구조변화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 윤덕룡 · 이동은
 - 16-04 글로벌 통상환경의 변화와 포스트 나이로비 다자통상정책 방향 / 서진교 · 이효영 · 박지현 · 이준원 · 김도희
 - 16-05 서비스분야 규제완화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STRI를 중심으로 / 김종덕 · 조문희 · 엄준현 · 정민철
 - 16-06 한국의 수입구조 결정요인과 기업분포에 미치는 영향 / 김영귀 · 박혜리 · 금혜윤 · 이승래
 - 16-07 남북한 CEPA 체결의 중장기 효과분석 및 추진 방안 연구 / 임수호 · 최장호 · 이효영 · 최지영 · 최유정
 - 16-08 북한 주변국의 대북제재와 무역대체 효과 / 최장호 · 임수호 · 이정균 · 임소정
 - 16-09 중국 주도의 신금융질서 태동과 한국의 대응방향 / 임호열 · 이현태 · 김홍원 · 김준영 · 오윤미 · 최필수
 - 16-10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이행 성과와 과제 / 김규판 · 이형근 · 김승현 · 이정은
 - 16-11 한 · 아세안 기업간 지역생산 네트워크 구축전략 /곽성일 · 정재완 · 김계국 · 신민이 · 라미령
 - 16-12 인도의 산업정책과 기업특성 분석: 기업 규모, 이윤, 비용, 생산성을 중심으로 / 이 용 · 배찬권 · 이정미 · 신세린 · 김신주
 - 16-13 SDGs 도입 이후 개도국 협력전략과 대응과제: 무역과 기후변화의 정책 일관성을 중심으로 / 권 율 · 정지원 · 허윤선 · 정지선 · 이주영

■ 2015년

- 16-14 신기후체제하에서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방안 /
문진영 · 정지원 · 송지혜 · 이성희
- 16-15 디지털경제의 진전과 산업혁신정책의 과제: 주요국 사례를 중심으로 /
김정곤 · 나승권 · 장중문 · 이성희 · 노수연
- 16-16 미국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성장 지속가능성 점검 및 시사점 /
김원기 · 윤여준 · 천소라 · 김종혁 · 권혁주
- 16-17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한국의 대응전략 / 김홍종 외
- 16-18 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
김홍종 · 이철원 · 이현진 · 양효은 · 강유덕
- 16-19 중앙아 주요국의 경제발전 전략과 경험 확대방안 /
박정호 · 강부균 · 민지영 · 윤지현 · 권가원 · 예브게니 흥
- 16-20 민간협력사업(PPP)을 활용한 중남미 인프라 · 플랜트시장 진출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6-21 국제유가 하락과 한·중동 협력방안: GCC 산유국을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장윤희 · 유광호
- 16-22 아프리카 도시화 특성 분석과 인프라 협력방안 /
박영호 · 방호경 · 정재완 · 김예진 · 이보안
- 15-01 북한무역의 변동요인과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
임호열 · 최장호 · 방호경 · 임소정 · 김준영 · 주셴핑 · 진화림 ·
정은이
- 15-02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거시건전성정책 연구 /
강태수 · 임태훈 · 서현덕 · 강은정
- 15-03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내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
최혜린 · 한민수 · 황운중 · 김수빈
- 15-04 주요국의 위안화 허브전략 분석 및 한국의 대응방안 /
한민수 · 서봉규 · 임태훈 · 강은정 · 김영선
- 15-05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수출부가가치의 결정요인 분석과 정책 시사점 /
최낙균 · 박순찬
- 15-06 주요국의 서비스 개방수준 차이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
김종덕 · 성한경
- 15-07 국내 제조업 생산성의 결정요인과 수출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
배찬권 · 김영귀 · 금혜윤

- 15-08 외국인직접투자의 유형별 결정요인 분석 /
이승래 · 강준구 · 김혁황 · 박지현 · 이준원 · 이주미
- 15-09 중국 서비스시장 개방전략의 변화와 시사점: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 노수연 · 오종혁 · 박진희 · 이한나
- 15-10 중국의 소비 주도형 성장전략 평가 /
이장규 · 김부용 · 최필수 · 나수엽 · 김영선 · 조고운 · 이효진
- 15-11 중국 환경시장의 분야별 특징 및 지역별 협력방안 /
정지현 · 김홍원 · 이승은 · 최지원
- 15-12 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 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 최보영 · 방호경 · 이보람 · 유재별
- 15-13 북·중 분업체계 분석과 대북 경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
최장호 · 김준영 · 임소정 · 최유정
- 15-14 저성장시대 일본 정부의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김규판 · 이형근 · 이신애
- 15-15 인도 모디(Modí)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 한·인도 협력방안 /
조충제 · 송영철 · 이정미
- 15-1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
정지원 · 문진영 · 권 울 · 이주영 · 송지혜
- 15-17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
곽성일 · 이창수 · 정재완 · 이재호 · 김제국
- 15-18 국제 디지털 상거래의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응방안 /
김정곤 · 나승권 · 장종문 · 이성희 · 이민영
- 15-19 동남아 도시화에 따른 한·동남아 경제협력 전망 /
오윤아 · 나희량 · 이재호 · 신민금 · 신민이
- 15-20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
박영호 · 정지선 · 박현주 · 김예진
- 15-21 저성장시대의 고용확대 정책: 유럽 주요국의 사례 및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 강유덕 · 이철원 · 오탉현 · 이현진 · 김준엽
- 15-22 남미 주요국의 신산업정책과 한국의 산업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5-23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출구전략 효과 및 시사점 /
윤여준 · 이 용 · 문성만 · 권혁주

- 15-24 GCC 국가들의 물류허브 구축전략과 한국의 협력방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장윤희
- 15-25 러시아의 '경제현대화' 정책과 한·러 협력방안 / 제성훈 · 강부균 · 민지영
전략지역심층연구 15-01
- 15-26 아세안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내 금융회사의 아세안 진출전략 / 서은숙 · 반기범
전략지역심층연구 15-02
- 15-27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에 대한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 동향과 효과 분석 / 김한성 · 이홍식 · 강문성 · 송백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03
- 15-28 인도의 산업구조와 내수시장의 경쟁구도 변화 / 이순철 · 김완중
전략지역심층연구 15-04
- 15-29 중남미지역 공공조달시장 진출전략 연구: 칠레와 페루를 중심으로 / 이미정 · 조희문 · 권정인 · 김혜민
전략지역심층연구 15-05
- 15-30 한·유라시아 주요국 산업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방안 연구 / 한홍열 · 윤성욱 · 변현섭 · 박지원
전략지역심층연구 15-06
- 15-31 21세기 한·쿠바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정치, 경제, 문화 부문을 중심으로 / 정경원 · 조구호 · 신정환 · 김원호 · 문남권 · 정기웅 · 하상섭
전략지역심층연구 15-07
- 15-32 국제운송회랑의 새로운 지정학: 유라시아 실크로드 구축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 / 원동욱 · 성원용 · 김재관 · 백준기
전략지역심층연구 15-08
- 15-33 이집트 산업정책 및 산업구조 분석과 한·이집트 산업협력 전략 / 박복영 · 김용복 · 박철형 · Shaimaa Hussien
전략지역심층연구 15-09
- 15-34 브라질의 아프리카(포아권 국가) 진출전략과 시사점 / 윤택동 · 이성준 · 이재훈
전략지역심층연구 15-10
- 15-35 아프리카 모바일금융시장 현황과 한국의 협력방안: 가나와 우간다를 중심으로 / 황규득 · 장용규 · 서상현 · 허서희 · 육숙희 · 최두영

- 15-36 중국 · 베트남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함의 /
임호열 · 김영찬 · 방호경 · 김준영 · 최필수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2
- 15-37 북한의 경제 특구 · 개발구 지원방안 / 양문수 · 이석기 · 김석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3
- 15-38 남북통일과정에서의 해외자원 조달: 주요 이슈와 정책방안 /
장형수 · 박해식 · 박춘원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4
- 15-39 중국과 베트남의 금융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Financial Reform
in China and Vietnam: Potential Lessons for DPRK) /
David Dollar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5
- 15-40 중 · 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경제발전 전망(中朝經濟與合作朝鮮變革發
展展望) / 찌저 · 쉬원지 · 위즈샨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6
- 15-41 통일 한국에서의 인프라 정비와 일본의 역할(統一韓國におけるイ
ンフラ整備と日本の役割) / 이누이 토모히코 · 권혁욱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5-07
- 15-42 러시아 경제체제 전환 과정의 주요 특징과 문제점: 북한에 대한 정치적
시사점과 교훈(Основные черты и проблем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переходного процесса в России: политические выводы и урок
и дл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Vasily Mikheev and Vitaly Shvydko
- 2014년
- 14-01 체제전환국의 경제성장 요인 분석: 북한 경제개혁에 대한 함의 /
정형곤 · 이재완 · 방호경 · 홍이경 · 김병연
- 14-02 글로벌 불균형의 조정 전망과 세계경제적 함의 /
조종화 · 양다영 · 김수빈 · 이동은
- 14-03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자금흐름 분석과 시사점 /
임태훈 · 이동은 · 편주현
- 14-04 주요 통화대비 원화 환율 변동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윤덕룡 · 김수빈 · 강삼모
- 14-05 한국의 FTA 10년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
김영귀 · 금혜윤 · 유새별 · 김양희 · 김한성
- 14-06 포스트 발리 DDA 협상의 전개방향 분석과 한국의 협상대책 /
서진교 · 김민성 · 송백훈 · 이창수

- 14-07 TPP 주요국 투자 및 서비스 장벽 분석: 기체결 협정문 및 양허 분석을 중심으로 / 김종덕 · 강준구 · 엄준현 · 이주미
- 14-08 국내 R&D 투자가 수출 및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생산성 변화를 중심으로 / 이승래 · 김혁황 · 이준원 · 박지현
- 14-09 무역구제조치가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반덤핑조치를 중심으로 / 이승래 · 박혜리 · 엄준현 · 선주연
- 14-10 해외 곡물 확보를 위한 한국의 대응방안 / 문진영 · 김윤옥 · 이민영 · 이성희
- 14-11 주요국의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과 시사점 / 김정곤 · 최보영 · 이보람 · 이민영
- 14-12 Post-2015 개발자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 정지원 · 권 율 · 정지선 · 이주영 · 송지혜 · 유애라
- 14-13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김규판 · 이형근 · 김은지 · 이신애
- 14-14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 문익준 · 최필수 · 나수엽 · 이효진 · 이장규 · 박민숙
- 14-15 중국 신흥도시의 소비시장 특성과 기업의 진출전략 / 김부용 · 박진희 · 김홍원 · 이형근 · 최지원 · 張博
- 14-16 중국의 문화 콘텐츠 발전현황과 지역별 협력방안 / 노수연 · 정지현 · 강준구 · 오종혁 · 김홍원 · 이한나
- 14-17 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 오운아 · 이 용 · 김유미 · 박나리 · 신민금
- 14-18 동남아 주요국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우리나라의 대응전략 / 광성일 · 배찬권 · 정재완 · 이재호 · 신민이
- 14-19 인도의 FTA 확대가 한 · 인도 교역에 미치는 영향 / 이 용 · 조충제 · 최윤정 · 송영철 · 이정미
- 14-20 멕시코 경제환경 변화와 한 · 멕시코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진오 · 박미숙 · 이시은
- 14-21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정책과 정책 시사점 / 김보민 · 한민수 · 김종혁 · 이성희 · 고희재
- 14-22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 강유덕 · 이철원 · 오태현 · 이현진 · 김준엽
- 14-23 러시아의 극동 · 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 제성훈 · 민지영 · 강부균 · Sergey Lukonin

- 14-24 중동지역 산업 및 금융환경의 변화와 한·중동 금융협력 방안 / 이권형 · 손성현 · 박재은
- 14-25 적정기술 활용을 통한 대(對)아프리카 개발협력 효율화방안 / 박영호 · 김예진 · 장종문 · 권유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1
- 14-26 한반도 통일이 미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A Study to Analyze Cost-Benefits of the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the United States) /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2
- 14-27 한반도 통일이 중국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朝鮮半島統一與中國的國家利益) / 진징이(金景一) · 진창이(金強一) · 피야오인썸(林恩哲)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3
- 14-28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韓國統一と日本經濟) / 후카오 요지(深尾京司) · 이누이 토모히코(乾友彦) · 권혁욱(權赫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4
- 14-29 한반도 통일이 러시아에 미칠 편익비용 분석(Анализ атраивыгоддл яРоссиивоссоединенияКорейскогополуострова) / 알렉산더 제빈(ЖЕБИН Александр Захарович) · 스페틀라나 수슬리나(СУСЛИНА СветланаСерафимовн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5
- 14-30 남북한 경제통합의 효과 / 성한경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6
- 14-31 점진적 통일과정에서의 동북아 경제협력과 남북한 경제통합 방안 / 강문성 · 김형주 · 박순찬 · 이만중 · 이영훈 · 이종화 · 이홍식 · 편주현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7
- 14-32 통일의 외교안보 편익 분석 및 대주변국 통일외교 전략 / 전재성 · 김성배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4-08
- 14-33 GTI 회원국의 무역원활화 현황 및 역내협력방안 / 최보영 · 선주연 · 방호경 · 나승권 · 이보람 · 최유정

권 울(權 栗)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하와이 East West Center(EWC) 방문학자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대학원(SAIS)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장
(現, E-mail: ykwon@kiep.go.kr)

저서 및 논문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공저, 20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공저, 2015) 외

정지원(鄭智元)

미국 University of Florida 식품자원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연구위원
(現, E-mail: jj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Post-2015 개발재원 확대 논의와 한국의 대응방안』 (공저, 2014)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공저, 2015) 외

허윤선(許允鮮)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서울대학교-프랑스 ESSEC 국제학 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응용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부연구위원
(現, E-mail: yshur@kiep.go.kr)

저서 및 논문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공저, 2009)
Access to Credit and Quality of Education in Vietnam (2016) 외

정지선(鄭至善)

영국 University of Manchester 국제개발학 석사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 박사
영국 King's College London 국제개발연구소(IDI)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sjeong@kiep.go.kr)

저서 및 논문

『ODA 국별 성과관리체제 및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공저, 2013)
『아프리카 민간부문(PSD) 현황 및 한국의 지원방안』 (공저, 2015) 외

이주영(李珠榮)

이화여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 경영학과 학사
이화여자대학교 국제학 석사(국제개발협력 전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개발협력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y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체제 비교 연구』 (공저, 2015)
『OECD DAC 각료급회의(HLM) 개최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공저, 2016) 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8만원		4만원
A	East Asian Economic Review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물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학술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44) 414-1179 FAX: 044) 414-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S	A
기 관 회 원 <input type="checkbox"/>	발간물일체	계간지
개 인 회 원 <input type="checkbox"/>		
연 구 자 회 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A Study on Korea's Cooperation Strategy along with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ocusing on the Trade and Climate Change Policy Coherence

KWON Yul, JUNG Jione, HUR Yoon Sun,
JEONG Jisun, and LEE Ju Young

본 연구는 SDGs 채택 이후 개발협력정책의 방향성, 설정된 세부목표와 이행지표를 검토하고, 무역과 개발,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주요 이슈와 쟁점을 분석하였다. 글로벌 개발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향 도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빈국 특혜관세조치와 ODA의 연계성,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개도국과의 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 신기후체제하에서 기후변화와 ODA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ISBN 978-89-322-1628-7
978-89-322-1072-8(세트)

정가 7,000원